제349회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7년2월14일(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4.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6.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민건강관리에 관한 법률안
2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3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3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3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3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0.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5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5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5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5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5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6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6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6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6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6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6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6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7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7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7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7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7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6.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7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8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8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8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6.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8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9.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1.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안
9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93.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4. 중증장애인의 재산보호를 위한 장애인 특별수요신탁제도 활성화에 관한 청원
95. 원주 C형 간염 피해 보상에 관한 청원
96.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지원에 관한 청원
97.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지원에 관한 청원
98.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지원에 관한 청원
99. 학습시간 줄이기 및 자유시간 보장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에 관한 청원
100. 업무보고
    가. 보건복지부
    나. 질병관리본부

상정된 안건

1.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 ····· 9
2.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이완영·김종석·유기준·임이자·정용기·김상훈·조경태·전희경·김학용 의원 발의) ····· 9
3.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윤소하·홍영표·전혜숙·김상희·정춘숙·김해영·남인순·김영진·설훈 의원 발의) ····· 9
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전혜숙·이찬열·양승조·김상훈·황희·윤호중·한정애·나경원·전현희 의원 발의) ····· 9
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김도읍·황영철·김규환·김성찬·송석준·이철우·조훈현·김명연·함진규 의원 발의) ····· 9
6.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중로·손금주·김해영·인재근·전혜숙·김상희·권석창·김종회·장정숙·정인화·남인순·김광수 의원 발의) ····· 9
7.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이찬열·안규백·황주홍·박재호·설훈·서영교·박남춘·박광온·이석현·인재근·이원욱 의원 발의) ····· 9
8.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

백혜련·조정식·유은혜·박남춘·황주홍·변재일·박홍근·박정·윤관석 의원 발의) ····· 9
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박재호·서영교·박정·박남춘·이찬열·신창현·박주민·남인순·김영춘 의원 발의) ····· 9
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이용호·김수민·김관영·조배숙·최도자·장정숙·유성엽·김종회·정동영 의원 발의) ····· 9
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김철민·박남춘·전혜숙·주승용·송영길·이춘석·이원욱·기동민·금태섭 의원 발의) ····· 9
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강훈식·민홍철·박홍근·박정·박재호·정재호·양승조·김병욱·안민석·신창현·설훈·박주민 의원 발의) ····· 9
1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철민·인재근·윤소하·박찬대·김정우·송영길·김영진·이재정·이찬열 의원 발의) ····· 9
1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홍익표·강창일·윤관석·전현희·민병두·신경민·황희·김영진·조정식 의원 발의) ····· 9
1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김명연·홍철호·김정훈·엄용수·신보라·조훈현·임이자·송희경·박명재 의원 발의) ····· 9
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김병욱·김정우·윤소하·안규백·서영교·김수민·박주민·이정미·윤관석·소병훈 의원 발의) ····· 9
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박순자·유재중·이헌승·함진규·박성중·장제원·김상훈·박인숙·송석준 의원 발의) ····· 9
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강창일·정성호·인재근·김정우·윤관석·김해영·김현미·남인순·김영호 의원 발의) ····· 9
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이학영·박영선·추혜선·이원욱·소병훈·김종훈·박용진·김영주·박주민·민병두·한정애·박남춘·신창현·유은혜 의원 발의) ····· 9
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이용호·김수민·김관영·김종회·조배숙·최도자·장정숙·정동영·유성엽 의원 발의) ····· 10
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박덕흠·강석호·김석기·이완영·곽대훈·유민봉·조훈현·경대수·장석춘 의원 발의) ····· 10
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안호영·이원욱·김관영·추혜선·민병두·정인화·임종성·이철희·김동철·박주민·김경진·안철수·황주홍·최명길·이학영 의원 발의) ····· 10
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인재근·전혜숙·윤호중·김상희·이원욱·우원식·정춘숙·박광온·정인화·최인호·전재수·정재호·조승래·기동민·김해영·김종민·이학영·양승조·임종성·한정애·이언주·남인순 의원 발의) ····· 10
24.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심상정·김정우·인재근·임종성·박용진·장정숙·전혜숙·황주홍·양승조 의원 발의) ····· 10
2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김성식·김광수·최도자·정성호·장정숙·김관영·윤영일·정인화·김수민·박주선 의원 발의) ····· 10
26.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민건강관리에 관한 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박선숙·김삼화·김수민·장정숙·황주홍·박주현·정인화·권은희·신용현 의원 발의) ····· 10
2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윤소하·최도자·김정우·전혜숙·최인호·이학영·이언주·조정식·강훈식 의원 발의) ····· 10
2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장정숙·김경진·정인화·최도자·황주홍·정동영·강창일·김삼화·이용호·김관영·윤영일 의원 발의) ····· 10

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강훈식・이용주・소병훈・민홍철・이용호・박주민・김현권・박남춘・최인호・정성호 의원 발의) ····· 10
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정태옥・송희경・정병국・이우현・이현재・유재중・박맹우・박완수・추경호 의원 발의) ····· 10
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박주민・윤소하・윤관석・장정숙・한정애・김상희・이학영・신창현・이찬열 의원 발의) ····· 10
3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고용진・도종환・박홍근・이재정・신동근・김경협・김상희・황주홍・김종대・이철희・전혜숙・인재근・윤소하・정춘숙・소병훈・안규백・남인순・양승조・권미혁 의원 발의) ····· 10
3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강훈식・문미옥・김해영・민홍철・박홍근・안규백・박정・정재호・양승조・안민석・신창현・설훈・박주민 의원 발의) 10
3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한정애・송옥주・김삼화・전혜숙・백혜련・양승조・서형수・남인순・박주민 의원 발의) ····· 10
3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소병훈・유은혜・기동민・박남춘・김영진・우원식・윤소하・이인영・윤관석・신경민・문미옥・이철희 의원 발의) ····· 10
3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윤호중・이동섭・이찬열・신경민・윤종오・우원식・권칠승・박광온・김수민・전재수・박홍근 의원 발의) ····· 10
3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백혜련・조정식・유은혜・박남춘・위성곤・황주홍・변재일・박홍근・박정・윤관석 의원 발의) ····· 10
3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윤영석・최교일・장석춘・강석진・김종민・엄용수・윤호중・이현재・박광온 의원 발의) ····· 10
39.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안규백・황주홍・이찬열・송옥주・조정식・서영교・설훈・노웅래・김상희・강병원 의원 발의) ····· 10
40.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문미옥・양승조・박주민・전혜숙・서영교・우원식・남인순・강훈식・권미혁 의원 발의) ····· 11
4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김철민・김정우・강병원・어기구・김종민・김태년・유승희・손혜원・김병욱・김해영・송옥주・전해철 의원 발의) ····· 11
4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기동민・김상희・조배숙・최도자・장정숙・박남춘・김정우・정춘숙 의원 발의) ····· 11
4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심상정・박용진・장정숙・김영춘・전혜숙・황주홍・양승조 의원 발의) ····· 11
4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김학용・송희경・정성호・김상훈・박준영・윤종필・박인숙・김순례・추경호・김승희・윤소하 의원 발의) ····· 11
45.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
4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문미옥・설훈・양승조・박주민・전혜숙・서영교・강훈식・우원식・남인순 의원 발의) ····· 11
4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이완영・김성태・김성원・김세연・송희경・이군현・이철우・이현재・이명수 의원 발의) ····· 11
4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정우・윤소하・정춘숙・홍영표・전혜숙・김상희・김해영・김영진・설훈 의원 발의) ····· 11
4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정성호・황주홍・김정우・박남춘・전혜숙・이동섭・남인순・임종성・위성곤 의원 발의) ····· 11

5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조배숙・김삼화・소병훈・박찬대・김종대・안규백・서영교・금태섭・김정우・전혜숙・박남춘・박홍근 의원 발의) ····· 11
5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김수민・김종회・박주현・유성엽・이용호・장병완・장정숙・정동영・채이배・최도자 의원 발의) ····· 11
5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정인화・조배숙・김종회・장정숙・권은희・정동영・이동섭・황주홍・김삼화 의원 발의) ····· 11
5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김영진・안민석・이용득・양승조・위성곤・전혜숙・조승래・이찬열・소병훈・심재권・박홍근・김경협 의원 발의) ····· 11
5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정우・윤소하・전혜숙・김상희・김해영・김영진・설훈・강훈식・이개호・이찬열 의원 발의) ····· 11
5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
5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송희경・서청원・이명수・원유철・정우택・조훈현・김종태・백승주・金成泰・윤재옥 의원 발의) ····· 11
5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홍익표・안규백・강창일・어기구・윤관석・전현희・김정우・유은혜・민병두・신경민 의원 발의) ····· 11
5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민병두・김종회・박선숙・정동영・김삼화・이태규・김광수・박용진・서영교・황주홍 의원 발의) ····· 11
5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서영교・정인화・김정우・안규백・유성엽・윤소하・권미혁・이춘석・황주홍・조배숙・김경진・김종회・김삼화・김중로・정동영・신용현・홍문표・이동섭・이용호・이용주・장정숙・손금주・오세정・김수민・인재근 의원 발의) ····· 11
6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정병국・신상진・이명수・김성원・김석기・김세연・배덕광・이군현・주호영 의원 발의) ····· 11
6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염동열・이양수・김도읍・김규환・김정재・이명수・박명재・민경욱・홍철호・임이자・이우현・윤종필・김기선 의원 발의) ····· 12
6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김철민・김종회・신창현・심재권・윤한홍・정성호・강창일・서영교・전혜숙 의원 발의) ····· 12
6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김경협・김상희・노웅래・박남춘・신경민・안민석・우원식・윤관석・이춘석・조승래 의원 발의) ····· 12
6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이동섭・정유섭・성일종・김정재・정태옥・안상수・박남춘・이우현・유기준・홍일표 의원 발의) ····· 12
6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주승용・백재현・김종회・정인화・김관영・권은희・유성엽・이양수 의원 발의) ····· 12
6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이완영・김종석・유기준・김정훈・정용기・김상훈・金成泰・조경태・전희경 의원 발의) ····· 12
6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소병훈・유은혜・기동민・박남춘・김영진・우원식・윤소하・이인영・윤관석・신경민・문미옥・이철희 의원 발의) ····· 12
6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신상진・이태규・이현재・황주홍・이명수・박명재・정우택・김성원・김석기・김세연 의원 발의) ····· 12
6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안규백・김종대・서형수・박남춘・전혜숙・이학영・위성곤・장정숙・윤후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4331) ····· 12
7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김영진・안민석・이용득・양승조・위성곤・전혜숙・조승래・이찬열・소병훈・심재권・박홍근・김경협 의원 발의) ····· 12

7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박정·윤소하·강창일·김상희·최도자·정춘숙·장정숙·오제세·기동민·인재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4961) ····· 12
7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정춘숙·최도자·서영교·김상희·한정애·안규백·신창현·송옥주·홍영표·전혜숙·이철희·양승조·인재근 의원 발의) ····· 12
7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강창일·정성호·김철민·전해철·김정우·인재근·이종걸·박남춘·전혜숙·김영진 의원 발의) ····· 12
7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전혜숙·서영교·김정우·김수민·소병훈·추혜선·김현권·박선숙·인재근·장정숙 의원 발의) 12
7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김상훈·신상진·김도읍·이양수·이명수·강길부·송희경·김성찬·김성원 의원 발의) ····· 12
76.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신창현·윤소하·김정우·양승조·김해영·인재근·남인순·전혜숙·기동민 의원 발의) ····· 12
7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서영교·위성곤·박정·김해영·노웅래·백재현·주승용·원혜영·이종걸 의원 발의) ····· 12
7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김종대·김정우·서형수·박남춘·전혜숙·이학영·최도자·표창원·장정숙·황주홍·기동민·설훈 의원 발의) 12
7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권석창·김도읍·김정재·박명재·박인숙·박찬우·윤상현·이우현·이은권·정유섭·정태옥 의원 발의) ····· 12
8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김상훈·신상진·김도읍·이양수·이명수·강길부·송희경·김성찬·김성원 의원 발의) ····· 12
8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박찬대·박재호·황주홍·추혜선·김정우·문미옥·소병훈·김영춘·박주민 의원 발의) ····· 12
8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김영주·김종민·서영교·박경미·황희·박주민·김경진·황주홍·추혜선·윤소하·심상정·이정미·김종대·윤종오·김종훈·정인화 의원 발의) ····· 13
8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박재호·이원욱·박남춘·이찬열·박주민·남인순·김현권·권칠승·김영춘 의원 발의) ····· 13
8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김영주·김종민·서영교·박경미·황희·박주민·김경진·황주홍·추혜선·윤소하·심상정·이정미·김종대·윤종오·김종훈·정인화 의원 발의) ····· 13
8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기동민·김상희·조배숙·전혜숙·최도자·장정숙·박남춘·김정우·정춘숙 의원 발의) ····· 13
86.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권석창·박대출·박맹우·박성중·윤상현·이우현·이채익·최교일·홍철호 의원 발의) ····· 13
8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김병욱·김경진·안민석·윤소하·김민기·정성호·김종훈·신창현·서영교·전재수·김종회·심상정·황주홍·박남춘·김해영·김삼화·전혜숙·권칠승·심재권 의원 발의) ····· 13
8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이명수·민경욱·신상진·김도읍·이은재·김수민·문진국·김성찬·주호영 의원 발의) ····· 13
89.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백재현·정인화·김관영·유성엽·윤영일·윤소하·전혜숙·박준영 의원 발의) ····· 13
9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이찬

열·안규백·황주홍·박재호·설훈·서영교·박남춘·박광온·이석현·인재근·이원욱 의원 발의) ····· 13
91.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이완영·김성태·유승민·박순자·김성찬·김성원·김세연·이군현·이명수 의원 발의) ····· 13
9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안규백·황주홍·이찬열·송옥주·조정식·변재일·박남춘·정재호·윤영일 의원 발의) ····· 13
93.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3
94. 중증장애인의 재산보호를 위한 장애인 특별수요신탁제도 활성화에 관한 청원(김성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 ····· 13
95. 원주 C형 간염 피해 보상에 관한 청원(송기헌 의원의 소개로 제출) ····· 13
96.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지원에 관한 청원(원유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 ····· 13
97.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지원에 관한 청원(김두관 의원의 소개로 제출) ····· 13
98.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지원에 관한 청원(안민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 13
99. 학습시간 줄이기 및 자유시간 보장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에 관한 청원(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 ····· 13
100. 업무보고 ····· 17
가. 보건복지부
나. 질병관리본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양승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근무하게 된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홍형선 전문위원입니다.

송수환 입법조사관입니다.

윤상우 입법조관입니다.

이택균 입법조사관입니다.

조진숙 입법조사관입니다.

김효진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환영하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2017년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정진엽 장관님, 정기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올해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업무에 많은 변화가 필요하고 요청되는 한 해입니다.

국민들의 관심 속에 국민건강보험이 그 부과체계 개편을 통하여 보다 나은 제도로의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직면하여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총체적인 정책 변화에 대한 수요도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관리나 의료서비스, 복지예산 지원 등 현재의 방식으로는 미진한 여러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변화와 혁신의 2017년을 맞이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하는 업무의 추진 방식과 내용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따끔한 고언과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법안 상정과 업무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먼저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바로 이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상정된 법률에 대한 대체토론과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를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
2.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이완영・김종석・유기준・임이자・정용기・김상훈・조경태・전희경・김학용 의원 발의)
3.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윤소하・홍영표・전혜숙・김상희・정춘숙・김해영・남인순・김영진・설훈 의원 발의)
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전혜숙・이찬열・양승조・김상훈・황희・윤호중・한정애・나경원・전현희 의원 발의)
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김도읍・황영철・김규환・김성찬・송석준・이철우・조훈현・김명연・함진규 의원 발의)
6.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중로・손금주・김해영・인재근・전혜숙・김상희・권석창・김종회・장정숙・정인화・남인순・김광수 의원 발의)
7.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이찬열・안규백・황주홍・박재호・설훈・서영교・박남춘・박광온・이석현・인재근・이원욱 의원 발의)
8.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백혜련・조정식・유은혜・박남춘・황주홍・변재일・박홍근・박정・윤관석 의원 발의)
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박재호・서영교・박정・박남춘・이찬열・신창현・박주민・남인순・김영춘 의원 발의)
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이용호・김수민・김관영・조배숙・최도자・장정숙・유성엽・김종회・정동영 의원 발의)
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김철민・박남춘・전혜숙・주승용・송영길・이춘석・이원욱・기동민・금태섭 의원 발의)
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강훈식・민홍철・박홍근・박정・박재호・정재호・양승조・김병욱・안민석・신창현・설훈・박주민 의원 발의)
1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철민・인재근・윤소하・박찬대・김정우・송영길・김영진・이재정・이찬열 의원 발의)
1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홍익표・강창일・윤관석・전현희・민병두・신경민・황희・김영진・조정식 의원 발의)
1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김명연・홍철호・김정훈・엄용수・신보라・조훈현・임이자・송희경・박명재 의원 발의)
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김병욱・김정우・윤소하・안규백・서영교・김수민・박주민・이정미・윤관석・소병훈 의원 발의)
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박순자・유재중・이헌승・함진규・박성중・장제원・김상훈・박인숙・송석준 의원 발의)
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강창일・정성호・인재근・김정우・윤관석・김해영・김현미・남인순・김영호 의원 발의)
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이학영・박영선・추혜선・이원욱・소병훈・김종훈・박용진・김영주・박주민・민병두・한정애・박남춘・신창현・유은혜 의원 발의)

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이용호·김수민·김관영·김종회·조배숙·최도자·장정숙·정동영·유성엽 의원 발의)
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박덕흠·강석호·김석기·이완영·곽대훈·유민봉·조훈현·경대수·장석춘 의원 발의)
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안호영·이원욱·김관영·추혜선·민병두·정인화·임종성·이철희·김동철·박주민·김경진·안철수·황주홍·최명길·이학영 의원 발의)
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인재근·전혜숙·윤호중·김상희·이원욱·우원식·정춘숙·박광온·정인화·최인호·전재수·정재호·조승래·기동민·김해영·김종민·이학영·양승조·임종성·한정애·이언주·남인순 의원 발의)
24.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심상정·김정우·인재근·임종성·박용진·장정숙·전혜숙·황주홍·양승조 의원 발의)
2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김성식·김광수·최도자·정성호·장정숙·김관영·윤영일·정인화·김수민·박주선 의원 발의)
26.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민건강관리에 관한 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박선숙·김삼화·김수민·장정숙·황주홍·박주현·정인화·권은희·신용현 의원 발의)
2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윤소하·최도자·김정우·전혜숙·최인호·이학영·이언주·조정식·강훈식 의원 발의)
2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장정숙·김경진·정인화·최도자·황주홍·정동영·강창일·김삼화·이용호·김관영·윤영일 의원 발의)
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강훈식·이용주·소병훈·민홍철·이용호·박주민·김현권·박남춘·최인호·정성호 의원 발의)
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정태옥·송희경·정병국·이우현·이현재·유재중·박맹우·박완수·추경호 의원 발의)
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박주민·윤소하·윤관석·장정숙·한정애·김상희·이학영·신창현·이찬열 의원 발의)
3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고용진·도종환·박홍근·이재정·신동근·김경협·김상희·황주홍·김종대·이철희·전혜숙·인재근·윤소하·정춘숙·소병훈·안규백·남인순·양승조·권미혁 의원 발의)
3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강훈식·문미옥·김해영·민홍철·박홍근·안규백·박정·정재호·양승조·안민석·신창현·설훈·박주민 의원 발의)
3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한정애·송옥주·김삼화·전혜숙·백혜련·양승조·서형수·남인순·박주민 의원 발의)
3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소병훈·유은혜·기동민·박남춘·김영진·우원식·윤소하·이인영·윤관석·신경민·문미옥·이철희 의원 발의)
3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윤호중·이동섭·이찬열·신경민·윤종오·우원식·권칠승·박광온·김수민·전재수·박홍근 의원 발의)
3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백혜련·조정식·유은혜·박남춘·위성곤·황주홍·변재일·박홍근·박정·윤관석 의원 발의)
3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윤영석·최교일·장석춘·강석진·김종민·엄용수·윤호중·이현재·박광온 의원 발의)
39.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안규백·황주홍·이찬열·송옥주·조정식·서영교·설훈·

노웅래·김상희·강병원 의원 발의)

40.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문미옥·양승조·박주민·전혜숙·서영교·우원식·남인순·강훈식·권미혁 의원 발의)

4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김철민·김정우·강병원·어기구·김종민·김태년·유승희·손혜원·김병욱·김해영·송옥주·전해철 의원 발의)

4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기동민·김상희·조배숙·최도자·장정숙·박남춘·김정우·정춘숙 의원 발의)

4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심상정·박용진·장정숙·김영춘·전혜숙·황주홍·양승조 의원 발의)

4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김학용·송희경·정성호·김상훈·박준영·윤종필·박인숙·김순례·추경호·김승희·윤소하 의원 발의)

45.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문미옥·설훈·양승조·박주민·전혜숙·서영교·강훈식·우원식·남인순 의원 발의)

4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이완영·김성태·김성원·김세연·송희경·이군현·이철우·이현재·이명수 의원 발의)

4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정우·윤소하·정춘숙·홍영표·전혜숙·김상희·김해영·김영진·설훈 의원 발의)

4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정성호·황주홍·김정우·박남춘·전혜숙·이동섭·남인순·임종성·위성곤 의원 발의)

5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조배숙·김삼화·소병훈·박찬대·김종대·안규백·서영교·금태섭·김정우·전혜숙·박남춘·박홍근 의원 발의)

5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김수민·김종회·박주현·유성엽·이용호·장병완·장정숙·정동영·채이배·최도자 의원 발의)

5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정인화·조배숙·김종회·장정숙·권은희·정동영·이동섭·황주홍·김삼화 의원 발의)

5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김영진·안민석·이용득·양승조·위성곤·전혜숙·조승래·이찬열·소병훈·심재권·박홍근·김경협 의원 발의)

5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정우·윤소하·전혜숙·김상희·김해영·김영진·설훈·강훈식·이개호·이찬열 의원 발의)

5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송희경·서청원·이명수·원유철·정우택·조훈현·김종태·백승주·金成泰·윤재옥 의원 발의)

5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홍익표·안규백·강창일·어기구·윤관석·전현희·김정우·유은혜·민병두·신경민 의원 발의)

5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민병두·김종회·박선숙·정동영·김삼화·이태규·김광수·박용진·서영교·황주홍 의원 발의)

5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서영교·정인화·김정우·안규백·유성엽·윤소하·권미혁·이춘석·황주홍·조배숙·김경진·김종회·김삼화·김중로·정동영·신용현·홍문표·이동섭·이용호·이용주·장정숙·손금주·오세정·김수민·인재근 의원 발의)

6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정병국·신상진·이명수·김성원·김석기·김세연·배덕광·이군현·주호영 의원 발의)

6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염동열·이양수·김도읍·김규환·김정재·이명수·박명재·민경욱·홍철호·임이자·이우현·윤종필·김기선 의원 발의)
6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김철민·김종회·신창현·심재권·윤한홍·정성호·강창일·서영교·전혜숙 의원 발의)
6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김경협·김상희·노웅래·박남춘·신경민·안민석·우원식·윤관석·이춘석·조승래 의원 발의)
6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이동섭·정유섭·성일종·김정재·정태옥·안상수·박남춘·이우현·유기준·홍일표 의원 발의)
6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주승용·백재현·김종회·정인화·김관영·권은희·유성엽·이양수 의원 발의)
6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이완영·김종석·유기준·김정훈·정용기·김상훈·金成泰·조경태·전희경 의원 발의)
6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소병훈·유은혜·기동민·박남춘·김영진·우원식·윤소하·이인영·윤관석·신경민·문미옥·이철희 의원 발의)
6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신상진·이태규·이현재·황주홍·이명수·박명재·정우택·김성원·김석기·김세연 의원 발의)
6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안규백·김종대·서형수·박남춘·전혜숙·이학영·위성곤·장정숙·윤후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4331)
7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김영진·안민석·이용득·양승조·위성곤·전혜숙·조승래·이찬열·소병훈·심재권·박홍근·김경협 의원 발의)
7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박정·윤소하·강창일·김상희·최도자·정춘숙·장정숙·오제세·기동민·인재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4961)
7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정춘숙·최도자·서영교·김상희·한정애·안규백·신창현·송옥주·홍영표·전혜숙·이철희·양승조·인재근 의원 발의)
7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강창일·정성호·김철민·전해철·김정우·인재근·이종걸·박남춘·전혜숙·김영진 의원 발의)
7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전혜숙·서영교·김정우·김수민·소병훈·추혜선·김현권·박선숙·인재근·장정숙 의원 발의)
7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김상훈·신상진·김도읍·이양수·이명수·강길부·송희경·김성찬·김성원 의원 발의)
76.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신창현·윤소하·김정우·양승조·김해영·인재근·남인순·전혜숙·기동민 의원 발의)
7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서영교·위성곤·박정·김해영·노웅래·백재현·주승용·원혜영·이종걸 의원 발의)
7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김종대·김정우·서형수·박남춘·전혜숙·이학영·최도자·표창원·장정숙·황주홍·기동민·설훈 의원 발의)
7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권석창·김도읍·김정재·박명재·박인숙·박찬우·윤상현·이우현·이은권·정유섭·정태옥 의원 발의)
8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김상훈·신상진·김도읍·이양수·이명수·강길부·송희경·김성찬·김성원 의원 발의)
8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박찬대·박재호·황주

홍·추혜선·김정우·문미옥·소병훈·김영춘·박주민 의원 발의)

8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김영주·김종민·서영교·박경미·황희·박주민·김경진·황주홍·추혜선·윤소하·심상정·이정미·김종대·윤종오·김종훈·정인화 의원 발의)

8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박재호·이원욱·박남춘·이찬열·박주민·남인순·김현권·권칠승·김영춘 의원 발의)

8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김영주·김종민·서영교·박경미·황희·박주민·김경진·황주홍·추혜선·윤소하·심상정·이정미·김종대·윤종오·김종훈·정인화 의원 발의)

8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기동민·김상희·조배숙·전혜숙·최도자·장정숙·박남춘·김정우·정춘숙 의원 발의)

86.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권석창·박대출·박맹우·박성중·윤상현·이우현·이채익·최교일·홍철호 의원 발의)

8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김병욱·김경진·안민석·윤소하·김민기·정성호·김종훈·신창현·서영교·전재수·김종회·심상정·황주홍·박남춘·김해영·김삼화·전혜숙·권칠승·심재권 의원 발의)

8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이명수·민경욱·신상진·김도읍·이은재·김수민·문진국·김성찬·주호영 의원 발의)

89.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백재현·정인화·김관영·유성엽·윤영일·윤소하·전혜숙·박준영 의원 발의)

9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이찬열·안규백·황주홍·박재호·설훈·서영교·박남춘·박광온·이석현·인재근·이원욱 의원 발의)

91.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이완영·김성태·유승민·박순자·김성찬·김성원·김세연·이군현·이명수 의원 발의)

9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안규백·황주홍·이찬열·송옥주·조정식·변재일·박남춘·정재호·윤영일 의원 발의)

93.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4. **중증장애인의 재산보호를 위한 장애인 특별수요신탁제도 활성화에 관한 청원**(김성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

95. **원주 C형 간염 피해 보상에 관한 청원**(송기헌 의원의 소개로 제출)

96.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지원에 관한 청원**(원유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

97.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지원에 관한 청원**(김두관 의원의 소개로 제출)

98.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지원에 관한 청원**(안민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99. **학습시간 줄이기 및 자유시간 보장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에 관한 청원**(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양승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9항 학습시간 줄이기 및 자유시간 보장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에 관한 청원 등 이상 9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채이배 의원님 오셨나요?

○**채이배 의원** 예.

○**위원장 양승조** 채이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의원**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

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에서 반드시 논의되고 통과되기를 희망하여 직접 제안설명을 드리러 왔습니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동원되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후 '최순실 사태'의 청문회와 검찰 수사 그리고 특검 수사로 이어지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정부 차원에서 삼성그룹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이 있었으며 국민연금도 이 지원의 수단으로 동원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민연금은 최소 3400억 원의 평가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손실액은 국민연금이 자체 산정한 적정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이 진행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장 보수적인 수치이며 국민연금 또한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국민연금이 특정 재벌 그룹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결정을 내렸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이것은 심지어 그 의사결정이 연금에 손실을 초래했으며 국민연금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국민연금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이 법안을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연금의 운용·관리에 대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득액 또는 기금의 손해액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의 무거운 형으로 엄하게 처벌하며, 기금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기금의 운용·관리를 맡은 운용위원과 기금이사에게 선관주의의무와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충실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이들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며, 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조항과 손해배상책임을 두어 연금 운용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이번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국민연금이 동원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 법 시행 이전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이 법 시행 당시 회복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도 개정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 조항을 넣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승조 채이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55항, 제93항,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별도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의 처리절차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신고제도를 정비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통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약국 운영시간 외의 시간에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 판매방식을 다양화하고 구매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위원에게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위원 중 민간위원이 뇌물죄 등을 저지른 경우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원회를 보다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승조 정진엽 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머지 법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5건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73건의 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96항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지원에 관한 청원 등 4건의 청원에 대하여 석영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 중 사회서비스정책관, 보육정책관, 장애인정책국 등을 제외한 법안에 대하여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제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세탁업소에 세탁기능사 자격 취득자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세탁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세탁물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재 이미 세탁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세탁기능사 자격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신규 영업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최도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립중앙의료원법 개정안은 원장의 직무대행을 이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의 제3자 전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원장이 이사장의 직위를 겸하고 있어 이사가 아닌 사람이 원장의 직무대행을 수행케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으며, 국유재산 제3자 전대는 항만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혜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의약품·의료기기를 반드시 조달청을 통해 구입토록 함으로써 특정 민간업체에 의약품·의료기기 계약사무를 위탁하는 방식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계약사무 민간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적정성 문제, 안정성 저해 우려 등을 해결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나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이미 의약품·의료기기 계약사무 민간위탁의 종료를 검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윤종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주구역에서의 주류 판매 및 음주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절주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폐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보이나 금주구역에서의 주류 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김승희 의원과 권미혁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주주권행사위원회 또는 주주권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주주권 행사의 주체 및 절차 등을 법령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주주권 행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주주권 행사 주체의 전문성 및 책임성, 의사결정의 독립성 등을 균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윤소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의 설정 주기를 현행 '연간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연도 중 소득·재산자료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선정기준액 조정에 따른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승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노숙인' 용어를 '홈리스'로 변경하고, 실태조사의 주기를 현행 5년에서 매년 실시토록 하며, 쪽방상담소 근거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중 쪽방상담소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은 다른 노숙인 시설에 대한 입법례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이며, 기타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노숙인 관련 법령 및 정책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동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재가급여의 종류에 물리치료사 등에 의한 방문재활 급여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재가노인들에게 적절한 물리치료 등을 제공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로운 급여 종류를 신설함에 있어서는 전달체계와 수가 책정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부담능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춘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을 이 법에 따른 보호시설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해당 시설에도 미성년 피해자가 상당수 입소해 있고, 이들의 일상생활과 자립을 위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후견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박인숙 의원과 김광수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자는 내용으로, 저출산이 장기화·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적 시의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동수당을 도입할 경우 보육료 등 기존의 지원체계와의 관계, 재원 마련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인재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형량에 따라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두려는 내용으로, 의료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점에서 입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의료행위 중 발생한 성범죄가 아님에도 이 법에 의해 일률적으로 면허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구성요건을 직무와 관련 있는 성범죄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인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뇌사 장기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기증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축소·폐지되는 상황에서 기증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장기 외에 인체조직도 숭고한 이타적 행위로서 예우가 필요하므로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예우사업도 함께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양승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20건의 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94항 중증장애인의 재산보호를 위한 장애인 특별수요신탁제도 활성화에 관한 청원 등 2건의 청원에 대하여 홍형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관, 장애인정책국 소관 법률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천정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민건강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차원에서 조사·규명하고, 이로 인한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인바 기후변화의 위험에 대한 최근의 생활체감도를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기후변화와 건강피해 간의 인과적 관계 및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의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이 기술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이 지난 1월에 보건의료기본법에 새롭게 반영된바 이에 대한 조정 등에 대해서 향후 공청회 등 법안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 수리를 하거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연장 여부 등에 대한 통지 없이 7일의 처리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다음 날에 당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입법조치

인바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국민의 권익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박순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은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인바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동 개정규정이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적 규정이란 점에서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만을 상세히 열거하는 입법조치는 법체계적인 관점에서 균형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고, 아울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등은 근로기준법이 준수되도록 관리 감독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9항 김성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조치를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위반 행위와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의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20만 원 상한의 현행 법체계하에서도 시행령에서는 실제 과태료 상한을 10만 원으로 축소 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주차위반보다 가중 부과되는 현행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위반 과태료 한도에 대하여 5배씩이나 급격하게 인상시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8항 성일종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보면, 총 구매액의 1%로 규정된 법정목표가 최근 5개년 동안에 2015년을 제외하고 모두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정책의 실효적 대안으로서 개정안의 입법조치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요약보고 되지 않은 개정안의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양승조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아직 안 오셨지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 회부의 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93건의 법률안과 6건의 청원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심사기간 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인재근 소위원장님과 김광수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0. 업무보고

가. 보건복지부

나. 질병관리본부

(10시23분)

○위원장 양승조 이어서 의사일정 제100항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를 통해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보건복지부 직원은 국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올해는 경제여건도 좋지 않고 취약계층의 삶도 쉽사리 나아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내실화하고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생계급여 인상,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

저소득층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필수 의료비 부담도 경감해 나가면서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2246개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차량 지원, 복지 담당 공무원도 조기에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장애인·노인·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권익보호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진료정보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취약지·취약계층 대상 ICT 의료도 확대할 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연명의료 시행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이송체계 확립,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확충 및 분만 수가 인상, 중증응급환자 전원조정체계 구축 등 필수·공공의료는 더욱 강화하고, 항생제 사용과 결핵 발생률도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의원 등을 중심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고, 금연 환경 및 문화 확산, 자살예방 체계도 강화하는 한편, 제4차 산업혁명이 보건복지 분야에 일으킬 변화에 대비하여 첨단·정밀의료 개발,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육성,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등에 있어서도 더욱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 위원님 여러분!

정부를 포함한 사회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 출생아 수는 40만 명을 겨우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를 더욱 강화하고, 지차체·민간기업 등 저출산 극복 분위기를 전국에 확산시키면서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보육·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노인일자리를 확대하여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는 한편, 평가체계 개선 등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돌봄·간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여러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면서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되 급작스런 변화에 따른 충격은 완화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함께 고려하여 3단계 개편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부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방문규 차관입니다.

권덕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입니다.

김원득 사회복지정책실장입니다.

이기일 대변인입니다.

김혜진 감사관입니다.

류근혁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영식 국제협력관입니다.

최태붕 비상안전기획관입니다.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입니다.

이형훈 한의약정책관입니다.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입니다.

김현준 건강정책국장입니다.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입니다.

배병준 복지정책관입니다.

최성락 복지행정지원관입니다.

윤현덕 사회서비스정책관입니다.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입니다.

이강호 인구아동정책관입니다.

고득영 보육정책관입니다.

장재혁 연금정책국장입니다.

강완구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질병관리본부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입니다.

박도준 국립보건연구원장입니다.

정은경 긴급상황센터장입니다.

곽숙영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고운영 질병예방센터장입니다.

성원근 감염병센터장입니다.

지영미 면역병리센터장입니다.

허영주 생명의과학센터장입니다.

한복기 유전체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보건복지 주요업무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부의 201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7년도 주요 업무 계획, 현안과제로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일반현황 순서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내실화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소득과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를 최대 5.2% 인상하고, 저소득 1~2인 가구 지원 확대 방안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생계비 등 지원 수준을 2.3% 인상하겠습니다.

자산형성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규 가입자 모집기간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을 금년에 단독 119만 원, 부부 190만 원으로 완화를 통해서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인상하겠습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를 실시하고 65세 도래자 사전 신청 안내를 하겠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는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고용취약계층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으로 65만 명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7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와 국민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2018년 전국 확산을 목표로 금년도에는 2100개 읍면동으로 대폭 확대하고, 방문상담 활성화를 위해서 차량 지원, 담당 공무원에게 스마트워치를 보급하고, 지역주민 재능기부, 후원금품 등도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중심으로 연계·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관리 강화를 위해 읍면동 복지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등 담당 인력 교육과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담당 공무원도 1623명을 배치하겠습니다.

IT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민·관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우수기관의 가격 자율책정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설의 종사자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권익을 증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위기아동 조기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법률상담, 의료지원을 제도화하고, 재학대 고위험가정에 대한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홍보·인식 개선도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서비스를 다양화하겠습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성인기 발달장애인 대상 고용·복지 연계를 강화하며,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를 위한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연 2회 재가장애인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대예방과 피해 사후지원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18개소 설치하겠습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신고의무자의 직군을 14개로 확대하고, 학대사례조사, 노인보호전문기관·쉼터를 증설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학대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학대시설·범죄자 명단 공표, 상습범 및 시설 종사자를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절차 강화를 위해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운영 등 개정된 정신보건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필수의료비 부담을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 정신요법, 간초음파 등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암·희귀질환 등 고가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외래 개인정신치료 본인부담 경감 등을 10월 중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장성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수립된 보장성 강화계획과 별도로 고액의료비 부담이 많은 질환을 대상으로 추가 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의료비로 인한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재원과 근거법령을 마련하여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15페이지에서 상세하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환자 중심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정보 교류와 수가 개편, 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인력수급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존엄한 죽음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호스피스 대상을 확대·다양화하고, 암 치료 이후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암 합병증 등 의료·사회·정서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내년 2월에 시행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의료 확산과 제도화를 위해 도서벽지,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취약지·취약계층 대상 서비스를 확대하고,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의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마련, 취약지 중심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의약 표준화를 위해 표준임상진료 지침을 개발·확산시키고,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 시범사업을 하며, 의·한 간 협진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이송체계 확립,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근거 마련,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보완, 신규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확충, 신생아 집중치료실 확대 등을 추진하고, 중증응급환자 전원조정체계 구축, 권역응급·외상센터 평가와 수가 연계, 24시간 영상협진체계 구축, 외상전문의 수련센터 추가 운영, 취약지에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인프라로서 중앙과 권역에 감염병전문병원을 각 1개소씩 설립하고,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을 확충하겠습니다.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2020년까지는 항생제 사용을 20%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80만 명에 대한 대상별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서 2020년까지는 결핵 발생률을 10만 명당 50명으로 감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방적 건강증진을 강화하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1400여 개소 동네의원에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고혈압·당뇨 환자의 질환과 생활습관을 상시 관리하고, 만성질환 위험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운동, 영양 등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견이 늦어 생존율이 낮고 암으로 인한 사망원인 1위인 폐암에 대한 검진 시범사업을 3월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금연사업과 흡연자 지원도 내실화하겠습니다.

경고그림 시행을 계기로 금연문화를 더욱 확산하고, 학교절대정화구역 내 담배광고 금지 등 비가격정책 입법을 추진하고,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활성화, 실내 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시행을 준비하겠습니다.

자살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살시도자의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을 확대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추가로 확충하겠습니다.

시도별 자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며, 이를 통해서 지역맞춤형 자살예방 시범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산업 성과의 창출을 본격화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고령화 등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의료지원센터 개설 등 정밀의료

실행기반을 마련하고,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으로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생태계를 조성하여 병원의 연구개발 성과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신약개발·의료기기 기업과 협력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2차 제약산업 육성계획을 10월 중에 수립하고, 의료기기산업 육성법을 제정하며, 화장품은 글로벌시장 개척단 파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분야별·지역별 전문가를 통한 개별컨설팅과 의료기관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연중 지원하겠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과 인천공항에 외국인환자 사후관리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위기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응체제 확립을 위해 금년 중 출범하는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회 내에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구성해서 위원회 중심의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사회적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 분야에 대한 핵심 대책에 대해서 심층평가를 토대로 범정부적인 보완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사회적인 저출산 극복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평가체계를 구축해서 우수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혼·출산·양육친화 기업에 대한 유인책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평가 반영에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양육 지원의 체감도를 제고하겠습니다.

9월까지는 소득 수준별로 난임시술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10월부터는 건강보험에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기저귀 지원도 12개월 아동에서 24개월까지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보육시설의 지속 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통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하고, 18시 이후까지 운영하는 모범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수요에 기반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부모의 규칙적 등·하원 시간 준수 유도 약속 캠페인 등 보육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과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나눔·시민참여·공익일자리 등과 연계한 가칭 '다함께 돌봄사업' 모델을 개발·검토하겠습니다.

고령사회 대비를 강화하겠습니다.

전 국민 노후준비 여건 조성을 위해 연령·성·직종별 지표에 따른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개인맞춤형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고, 공·사연금 통합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단시간·일용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을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추후납부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정의 안정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제4차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신뢰받는 국민연금제도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장친화적인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고령자친화기업 전환 촉진과 성과에 따른 다년도 재정지원으로 개편하며 최소고용조건을 완화하겠습니다.

활동수당을 인상하고 재능나눔 수혜대상 확대 등 공익형 일자리까지 사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다양화와 질 제고를 위해 돌봄·간호·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방문요양·간호통합 서비스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요양시설의 평가체계를 서비스의 질 평가 중심으로 개선하고, 평가결과 최하위기관은 컨설팅을 통해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 강화를 위해서 독거노인의 현황조사, 서비스 대기자 및 잠재수요 등 취약 독거노인을 적극 발굴하여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지역사회 인력을 활용한 은둔형 독거노인 발굴·보호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안과제로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입니다.

개편 필요성은,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성·연령, 재산, 자동차 보험료도 부담하여 저소득 지

역가입자의 불만이 누적되어 왔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이 느슨하여 고소득·고재산이 있음에도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편 시 고려사항은, 직장·지역 가입자 간 소득 파악의 차이와 보험료 인상자의 수용 가능성 그리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민 부담은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며, 재산 부과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 비중은 높이는 3단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비중은 3단계에 이르렀을 때 60%, 전체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비중은 9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소득을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정액의 최저 보험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산 보험료는 재산 공제제도를 도입한 후에 단계적 확대를 통해서 재산 부과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소형차부터 보험료 부과를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피부양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과세소득 합산 금액이 연 3400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재산 기준은 과표 9억 원 이하의 재산이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서 생계 가능한 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보험료 부과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직장가입자의 평균보험료 30배 수준으로 보험료 상한선을 상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부과체계 개편 시행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계부처·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개편안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승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께서 인사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 질병관리본부의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 확산에 이어 구제역까지 확대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저희 질병관리본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방지를 위해 고위험군 모니터링 등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H7N9 인체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한 여행객 대상 홍보와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역학조사관과 즉각대응팀 훈련을 통해서 위기관리 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12개월 미만 영아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올해에는 만 5세 미만 아동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결핵 후진국 오명을 탈피하기 위하여 발병 전 단계에서부터 진단과 치료를 강화하는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감염병과 만성병 극복을 위하여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충실히 이행하고, 금년에 기본설계를 추진하는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시작으로 연구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저희 질병관리본부는 소통과 신뢰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 질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R&D 연구 및 인프라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병관리본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24시간 공중보건위기 대비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역학조사관과 즉각대응팀 교육 및 지자체 위기대응 현장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1개소를 금년에 지정하고, 감염병관리시설 평가 도입 및 긴급상황실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반 운영을 통해 지자체 예방조치를 지원하고, H7N9 인체감염증 유

입 차단을 위해 중국 입출국 시 주의사항 안내문자 발송 등 홍보와 의료기관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쪽, 국가예방접종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노인 및 만성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지난해 12개월 미만 아동에서 올해에는 59개월 미만 아동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처음 실시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는 중학교 입학생 대상 예방접종 확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백신 부작용 불안감 해소 등을 통해 사업을 안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어린이집과 같은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 실시 등을 통해 결핵 발생을 감축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 허가를 목표로 피내용 BCG 백신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단계적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과분석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관리역량 향상을 위해 아토피·천식 광역교육정보센터와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같이 국가 간, 지역 간 비교 가능한 보건지표를 생산하여 정책 수립과 평가의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 나눔문화가 확산되도록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의 공정한 분배와 이식대상자에 대한 선정 심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헌혈자 보호 및 안전지침 정비, 의료기관 적정수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국가 감염병 R&D 추진 전략 이행 강화입니다.

올해는 8개 부처가 합동 수립한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5개년 계획을 본격 시행하는 해입니다. 범부처 연구개발사업 기획 등 감염병 R&D 총괄·조정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연구인프라 구축 강화 및 연구자원 확보·관리 강화입니다.

국가 보유 백신후보물질 확보 및 지원을 위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임상용 줄기세포 생산시설 적격성 평가를 통해서 줄기세포재생센터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분양대상자원 확대 등 한국인체자원은행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조직·인력 등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질병관리본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승조 정기석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및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오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요즈음 정말 어렵고 복잡한 이런 시국에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흔들림 없이 국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즈음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민생도 어렵고 경제 어렵고 또 AI, 구제역 등으로 건강문제도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건강과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아주 각별한 각오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백서에 대해서 제가 지난 6월 업무보고 그리고 국정감사 등 여러 기회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청년 빈곤층 생활대책 말씀하시는……

○송석준 위원 청년백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청년백서 문제에 대해서 청년위원회가 청년 사회·경제조사를 하고 있고 또 고용부에서 청년패널조사 등을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그 부서들하고 조사를 같이 해서 종합적인 정책을 만들 예정이고, 지금 저희가 보사연에다 청년에 관한 연구를 또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곧 조사

들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청년정책이, 저출산대책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청년 실신시대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청년의 실업 문제, 일자리 문제 그리고 신용불량, 학비 내고 또 청년들이 뭔가를 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일 또 일자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심지어는 우울증, 제가 또 지적을 했었지만 청년 우울증 문제도 심각합니다.

건강 문제, 일자리 문제, 여러 가지 청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청년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어려우면 결혼, 출산에도 이어지고 결국 나라의 미래가 좀 어두워지는데, 그래서 청년의 문제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도 유사한 업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복지부 차원에서 청년들의 어떤 실태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또 각 부처로 하여금 필요한 정책은 유도할 수 있게끔 청년의 어떤 실상에 대해서 한번 종합 백서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저도 정부 부처에 있었지만 자꾸 이렇게 내 안에 보이는 그동안의 어떤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 한번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대한민국 청년들의 문제, 정말 A에서부터 Z까지를 총망라해서 종합 백서를 한번 만들어서 각 부처의 어떤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같이 범정부적인 노력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다시 한번 각오를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말씀에 청년 문제에 대한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것에 대한 평가·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주로 복지부 관련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일자리 문제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일부 협조는 하고 있지만 다른 부처들하고 종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협의체를 만들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금년 중에 종합 실태에 대한, 상반기 중에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한번 좀 만들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송석준 위원 바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도 청년기본법 지금 발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의 의정 철학 다섯 가지 중에 새로움의 정치, 미래세대들을 위한 정말 희망 넘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청년 실태를 제대로 분석하고, 여러 가지 정책 처방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알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네요.

복지급여 부정 수급액이 전년 대비 76%나 증가해서 약 790억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해 오셨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짧게 좀 답변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그동안 복지급여 부정 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금융재산도 반기별로 조사하던 것을 월별로 조사하면서 돈의 흐름도 좀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회보장 시스템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축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부정 수급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송석준 위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특별한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송석준 위원 제가 관련법도 발의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차질 없이 개정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송석준 위원 그리고 저출산 문제가 아직도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저출산대책이 나오지만 친할머니, 조부모님이나 또 외조부모님이 아동들을 보육할 때는 일정한 소정 여건에 따라서 좀 수당을 주는 방안을 제가 법안 발의한 것이 있어요. 그것도 관심 갖고, 소위 할보미 수당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송석준 위원 그리고 저출산 컨트롤타워가 이번에 만들어졌는데—인구정책개선기획단이요—정말 실효적으로 운영되어서 이제는 제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알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리고 최근에 한랭질환자가 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도도 있었지만. 사망자도 늘고.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데도 아직도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의 어떤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금 말씀 주신 내용 같이 국민안전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전예보제 같은 것도 좀 시범 운영을 해 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정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민건강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송석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오전 질의는 김상희 위원님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혁 위원 정진엽 장관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금 어떤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지요? 구속되어 있는 혐의가 무엇무엇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구속 혐의 내용이……

○권미혁 위원 장관님, 전 국민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구속 사유를 모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직권남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혁 위원 직권남용하고요 권리행사 방해 혐의 그리고 박근혜·최순실국정조사특위에서 위증한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문형표 이사장님이 지금 구치소에서 계속해서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저희도 여러 각도로 접촉을 해 봤는데 지금 본인이 사퇴 의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권미혁 위원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당사자로 구속이 됐는데 구속 직후에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형표 이사장은 메르스 방역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국민연금공단에 엄청난 손실과 혼란을 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사퇴를 거부하는 것은 저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처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러모로 접촉을 해 보셨다고 했는데요, 장관께서 문형표 이사장에게 직접 혹은 인편을 통해서 사퇴를 요구하신 바가 있는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공단 기획이사를 통해서 지금 국회나 또 언론의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거취를 결정하게 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은 전혀, 본인이 결정을 해 주시면 제일 좋겠는데 지금 사퇴 의향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권미혁 위원 그런데 지금 문형표 이사장이 물러날 근거는 넘치거든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법 35조, 36조를 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혹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는 당연 퇴임이나 해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정관 19조에도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하면 당연 퇴임이나 해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경영성과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어 있는데 22조에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6년 3월 29일에 장관님과 문형표 이사장께서 경영성과협약서를 체결하셨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권미혁 위원 그렇다면 장관님께서 일단 물러나도록…… 본인이 물러나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정말……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것은 국민연금공단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책임지고 물러나게끔 하실 수 있는 건지를 여쭙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도 법률 자문을

구해 봤는데 문형표 이사장이 이사장직을 하면서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장관으로서 있을 때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해임을 할 수는 없다라는 이런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단 이사회에서 해임 건의를 요청해야지 저희가 해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문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또 공단 이사회의 자율성을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이사회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거기서 해임 건의안이 나와서 저희한테 해임 요청이 올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권미혁 위원 장관님, 혹시 청와대나 황교안 직무대행하고 문형표 이사장님의 처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논의 때문에 지금 주저하시면서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아직은 거기까지 논의를 안 했습니다.

○권미혁 위원 논의를 한 바가 전혀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저희가 지금 특검 수사나 재판 진행 상황 또 후임자 인선 문제 같은 이런 좀 예민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미혁 위원 재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에는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미 사퇴를 했고요.

그리고 장관님, 문형표 이사장이 2월 1일부터 결근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권미혁 위원 문형표 이사장이 하고 있는 결근의 근거가 있습니까? 만일 병가라면 문형표 이사장이 이에 해당이 안 되고요. 특별휴가 같은 경우는 상훈·표창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해당이 없습니다. 어떤 근거로 결근으로 처리되고 있는 부분을 그냥 봐 주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무슨 근거라기보다 저희가 처음에 공가를 쓰다가 연가를 쓰다가 연가 기간이 끝나서 지금은 결근하는 것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미혁 위원 그런데 장관님, 이렇게 근거가 없는 결근으로 이것을 처리하게 된다면 공무원 기강이 섭니까?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이 문제만 가지고도 장관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아마도 공단 인사규정에, 내부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아니, 아직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면 병가도 진단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고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별휴가에도 해당이 안 된다는데……

장관님, 청와대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 황교안 직무대행에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해임 건의 하시고, 그다음에 사태를 정확하게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더 노력하실 건지…… 이것은 공무원 입장에도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지금 결근 처리부터도 말이 안 되고, 이것만 가지고도 장관님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확한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우선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게 하는 것을 좀 더 종용해 보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어느 기간 동안요? 2년, 3년 동안 결근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아니, 그렇게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미혁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하여튼 최대한 본인이 의사 결정을 하도록 저희가……

○권미혁 위원 그러니까 어느 만큼 해 주실 거냐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 기간은 저희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연말에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권미혁 위원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 빠른 시기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 상황을 또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윤종필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필 위원 자유한국당 윤종필 위원입니다.

장관님, 최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사 5명이 기증받은 해부용 시체를 두고 인증샷 찍어 온라인상에 공개한 사건 잘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종필 위원 일부 극소수 의료인들의 일탈행위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의사들의 위상이나 의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생각해 볼 때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이 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의료인에 대한 윤리의식을 제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초구보건소에서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고요.

저도 의료인이지만 교육과정이나 전공의 수련과정 때 그동안 윤리의식에 대한 교육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윤리의식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제도적으로 함양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의료인 보수교육에도 이런 윤리의식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인 윤리교육이 좀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종필 위원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체를 해부하는 사람은 연구를 위해 기증받은 시체를 취급할 시에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이 조항 잘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윤종필 위원 그러나 우리가 유감스럽게도 사진 속의 그 의사들의 모습에서는 참 예의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진지하기보다는 참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체 기증에 동의한 유족들에 대한 어떤 감사함이나 고인에 대한 숙연함 이런 것도 없어 보였고, 의료인들의 윤리의식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것이 당연해 보일 정도로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의료인들의 윤리의식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이번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의사는 수술 중에 생일파티를 하기도 했었고,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해서 집단감염사태도 일으켰고, 음주 상태에서 수술한 사례도 있었고, 마취 후에 잠든 여성 환자에 대한 성추행사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장관님이 보시기에는 보건복지부가 어떤 개인적 영역이라고 할 일부 의사들의 윤리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말씀은 하셨지만, 물론 의사들 자율적으로 이것을 잘 해결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이것을 기대하는 것도 일단 무리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의사협회가 의사들 스스로 비도덕적 행위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도 시행 중이라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의사들의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다루기 어려운 경우는 또 다른 법령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다른 좀 더 중한 그런 벌칙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진료 중에는, 하더라도 실습 중에 비윤리적 행위를 자발적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해부용 시체 앞에서 인증샷 촬영사건은 해당 의사들이 기껏 5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벌만 받게 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일한 처벌이 아니겠느냐, 좀 더 무거운 어떤 처벌이 가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체 해부 실습에서의 행위는 우리가 실제 환자를 대하는 것은 아니라서 좀 더 윤리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반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시신을 기증하신 분들의 마음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좀 더 심도 깊게 그런 부분도 살아 계시는 분하고 같은 윤리적 잣대도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필요치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안일한 생각과 습관들이 쌓이다 보면 더 심각한 비윤리적 행위가 또 따르게 되고, 이러다 보면 작은 것이 더 큰 것이 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을 통해 보건 당국의 시체 해부 관리 그리고 해부 실습이 이루어지는 대

학병원에 대한 관리를 좀 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지부는 이 부분에 좀 더 심도 깊게 한번 대처해 주시고, 어떤 복안을 수립하셨는지, 아까 보건소 부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 더 윤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의사들이 알아서 개선해야 될 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를 관장하는 중앙부처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일탈행위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제가 다루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료계 전체의 올바른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각별히 신경 쓰시고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뢰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명심하겠습니다.

과태료 처분의 주체인 지자체하고 복지부하고 다 협조를 해서 이런 위반행위에 대한 우선 감독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시행령을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도 하고, 지금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좀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또 저희가 의사협회뿐만 아니라 치과의사협회 또 간호협회, 병원협회 등 해서 단체들하고 회원 윤리교육을 좀 강화하라는 것도 지금 저희가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인데요. 그런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승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간사이신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거취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적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격 박탈 기준은 검찰의 기소가 아니고 법원의 최종 판결로서 확정될 때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자리가 너무나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장기간 공석이 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정도 기다려야 되겠지만 보건복지부 차원의 좀 합리적인 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첨단의료복합단지 문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오송과 대구에 첨단의료복합단지 2개소를 2008년도부터 계획에 착수해서 2013년도까지 대체적인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완료가 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의 운영비 지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오송에 최근까지 기반시설 공사가 조성될 때까지 2850억 정도가 투입됐고, 대구에 한 2060억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아마 2017년도—그러니까 금년도지요—정부가 운영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금년도에 확정된 계획은 그에 못 미칩니다마는 2018년도부터는 지원을 아예 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지금도 운영비가 부족해서 전체 정원의 48%만 인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장비 가동률도 한 38% 정도만 가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비 조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정원과 기 확보한 장비 가동률이 각각 48%와 38%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 재단의 자체 수입을 보면 오송이 전체 소요 경비의 1~4% 정도만 조달이 가능하고, 대구가 조금 형편이 낫지만 역시 4~7%만, 전체 소요 경비의 자체 수입 충당비율이 그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2018년도부터 전액 운영비를 삭감하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첨복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양 첨단복합단지에 대한 종합육성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3차 종합육성계획이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2019년도, 이미 9월 달에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제출해야 될 기관인 미창부·산업통상부·식약처 그다음 대구시와 충청북

도, 지금 어느 기관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또 이 첨복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육성 계획을 제출했는지, 이렇게 지금 정부 운영비가 조달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과연 보건복지부의 복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정말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심정으로 저희가 질의를 합니다.

OECD에서는 아마 2030년도경에 세계적으로 바이오경제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의료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여러 가지 건강·보건 분야에서 글로벌한 협력적 육성이 필요한 그런 산업으로 규정을 짓고 있는데 과연 우리 정부에서 의료산업의 발전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장기적인 안목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보건복지부의 입장에서는 첨복단지를 글로벌 신약과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보건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을 주셨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하는 3차 종합계획이 원래 이미 수립이 됐어야 되는데 좀 늦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1분기 내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추진 방안에 대해서 이것도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9월까지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방안들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아까 말씀 주신 2018년에는 자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미 시작하는 것도 좀 늦어졌고 그리고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자립이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됐고, 결국 정부에서 좀 더 지원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기재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2018년도에 지원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4분기까지 우선 관련 부처, 지자체, 또 재단과 세부 추진 방안을 협의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양 첨단의료복합단지 재단에 자구 노력을 강화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년도 연말까지만 해도 이 두 재단 자체가 비영리재단이기 때문에 수익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러면 오롯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운영비 지원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데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돌파구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거버넌스의 정점에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제도 개선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비스 수수료나 장비 임대료에 국한되어 있던 수익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 민간 R&D 수주도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첨복재단 이사장 중심으로 자율권을 갖고 전문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거버넌스 개편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저희가 다 꼼꼼하게 챙겨서 일이 잘 진행되도록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강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위원 강석진 위원입니다.

장관님, 인사말씀 3페이지에 보면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확충 및 분만 수가 인상을 말씀하셨고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는데 그것 관련해서 여론도 좀 전달해 드리고 또 확인하고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달에 국회가 안 열리고 하기 때문에 제 지역에 있었는데 제 지역은 분만취약지거든요. 그래서 다녀 보면 젊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 분야에서 참 많은 민원이 산부인과 의사 문제 또 산부인과 병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감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말씀도 드리고 해서 그 이후에 좀 확충이 됐는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것도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지역 여론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 보면 첫 번째로는 심지어 관공서, 세무서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도시에 있다가 인사 이동해서 옵니다. 오면 그분들이 부인이 아기를 가지게 되면 부인을 친정으로 보내

야 될 정도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의료시설이 산부인과 병원이나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이 도리어 떨어져 살아야 되는 그 정도까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하는 젊은이들은, 특히 농업에 종사한다든지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도 부인이 만약에 산부인과를 가야 될 일이 있으면 한 시간 정도 이상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일손을 그만둔다든지 또 직장에 조퇴를 하고 나와서 부인을 싣고 갖다 와야 되는, 남에게 맡기 수가 없으니까, 이런 정도로 의료취약지역은 아주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감에서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했다든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어떻게, 올해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여기 산부인과 확충 및 분만 수가 인상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분만취약지 지원 강화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에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가장 큰 문제가 인력 보강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호사 인력도 부족하고 특히 산부인과 의사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서 저희가 분만산부인과의 경우에는 간호사의 인력기준을 좀 완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사 인력을 위해서 홍보도 아주 많이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분만취약지역에는 저희가 의사인력 채용하는 것에 대한 인력 지원을 해 드리고 또 장비에 대한 지원도 지금 현재 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이 가장 문제라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저희가 주력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진 위원 장관님,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를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을 뭐 좀 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올해 의료인력 수급 계획을, 지금 전체적인 의료인 수급 계획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점차 산부인과를 안 하려고 기피를 해서 이것에 대한 수급 계획을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쩌면 이것이 저출산 문제의 큰 어떤 중심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산부인과 의사를 지원할 때는 특별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진 위원 하여간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뭐가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실무 국장이나 과장님한테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산모가 그 의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인 진료를 받지 않으면 분만실에 그 아기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이것을 통해서 산부인과 의사를 좀 더 확보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국립보건의과대학을 설립을 빨리 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런 기피 과에 대한 인력을 좀 더 많이 활성화시킬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강석진 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은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요즘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국민적 관심사가 많은 사안입니다. 또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 마련을 위해서 개편하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무슨 일이든지 시행하는 시기가 적정하고, 시기도 중요하고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정책이 바뀔 경우에 그것이 바뀐 데 따라 그 정책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분들, 국민 거의가 받는 우리나라 의료 부과체계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수 국민들의 동의도 얻어 내야 되고 또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가입자 소득파악률이 문제가 될 텐데, 그렇지요, 그 개편 방안에 보면,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우선 지역가입자의 50%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중에서도 500만 원 이하로 소득이 신고되는 경우가 한 26% 정도 됩니다.

저희가 여러 조사가 있는데 국민소득계정을 이용한 것으로 봐서는 여기에서 소득파악률이 한 74%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연구 결과마다 다 다르고 한 60~80%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진 위원 지역가입자가 이렇게 개편될 경우에 도리어 많이 부과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역가입자분들 중에서는 증가하는 분들은 극히 일부, 고재산가 분들이나 고소득자에 한해 있고요. 지역가입자들은 대부분 보험료가 떨어지는데 저희가 최저보험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내시던 것보다 최저보험료가 높게 형성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내던 것에서 증가분은 저희가 감액해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석진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강석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표 이사장이 지금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본인이 사퇴를 할 의향이 없다고……

○김광수 위원 지금 해임 절차라도 밟아야 될 상황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단 이사회에서 해임 건의가 요청이 오면 적극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김광수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민들 정서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거의 삼성의 사금고로 전락시켜서 국민연금을 이렇게까지 분탕질을 쳐 놓은 데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이렇게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금과 관련해서 그동안 연금이 삼성의 사금고로 전락했다는 국민적 비판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어떤 법적 상설기구로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이것은 기금운용본부의 조직 개편 이런 것과 다 같이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결권 전문위원회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의견들이 아주 많으시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장관께서 기금운용위원장이시니까 위원장 의견을 말씀을 주시는 게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의결권 독립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필요는 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연구 중이라서 결과를 보고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울러서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서 도덕성과 전문성 이것이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사장 임명 절차와 관련해서 국회 청문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연기금이 지금보다도 거의 4배, 5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단 말이지요. 막대한, 거의 2500조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금운용에 관해서 책임성과 도덕성을 담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어떤 인사 청문 절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으로서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거기까지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광수 위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이 장관이시니까 묻겠습니다.

기금운용본부가 혁신도시 전주로 이전을 골자로 한 연금법 개정안이 2013년 6월 말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2월 말 정도, 이달 말 정도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

는데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금운용 인력의 퇴직 현황을 보면 2월 말까지 사의를 밝힌 직원이 27명에 달하고 지금 정원이 260명인데 37명이 부족한 223명이 근무 중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전과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대책 마련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금 전주 이전에 따른 인력 이탈 그것 말고도 최근에 감사받고 이런 것에 따른 인력 이탈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운용직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임금 인상, 기본급도 인상을 하고 성과급 지급도 10% 인상하는 안을 좀 만들었고요. 또 이것이 복리후생 차원에서 숙소 신청자들에 대한 지원들, 또 이주 지원비, 이사비, 직장 어린이집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그동안 할 계획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것만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현재 공단에서 지원책에 대해서 다시 보완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 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보완책에 대해서 보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제야 보완책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기간이 3년 6개월 넘게 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그사이에 지금 구속된 문 이사장은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계속 공사화 논란만 키우고 있어서 사실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전혀 갖지 않고 종합적인 대비를 하지 않으셨던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라도,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어수선하지요. 정보 유출과 관련돼서 공단 분위기도 침체되고 이사장도 구속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전문인력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예견된 상황이란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선 대책, 어떻게 해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금운용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됐을 문제인데 이제야 대책을 마련하겠다 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확실하게 좀 만들어서 이탈 문제라든지 이런 내부 동요가 없도록 확실한 복지부 차원의 내부 방안, 방침을 빨리 만들어서 조속히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장관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획기적인 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전문집단에 대해서 지금 연봉이 너무 적은 상황입니다. 한 6000만 원 정도 가지고 거기서 일을 할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아주 파격적으로 임금 인상도 해 주고 이런 파격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해 보고, 공운법에 저촉이 되고 있는데, 공운법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것도 좀 여기서 탈피해서 좀 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광수 위원 주거 대책도 좀 정확히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주거 대책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서 본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2월 말까지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자유한국당 김순례 위원입니다.

장관님, 제가 질의에 앞서서 양옆에 계신 방문규 차관님과 질병관리본부장님께 좀 칭찬을 드리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수차에 걸쳐서 국감을 통해서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폐아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을 많이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김순례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소위를 통해서 예산 순증이라는 과정을 심도 있게 하면서 차관께서도 인정해 주셔서 인식 개선에 대한 홍보비가 마련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인식 개선과 더불어서 전문가집단, 발달장애자 전문인, 그리고 영유아에 관련된 보호자에 대한 이 세 가지의 자료를 그 이후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홍보자료가 나가는 것에 자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의 홍보자료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와 행정부가 합의 일치로 이렇게 이루어 낸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고대구로병원에서 소아정신과 병원에 아이들을 케어하는 스태프들과 환자 보호자와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의 관련 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면서 환자 보호자도 굉장히 감격을 했고 또 전문인에서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집행부가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인식 개선에 대해 아주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2017년도에도 함께 이것을 더 진일보하는 행정과 정책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쪽에 계신 분에게 칭찬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저희가 다 같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 약국은 요양기관에 해당이 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김순례 위원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42조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입니다.

요양기관에서 진찰 검사나 약제·치료비의 비용 지급은 국민건강보험법 42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법 41조 2항·3항에 따르면, PPT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의 대상을 정할 수는 있으나 임의로 요양기관을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이 법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제가 이 질의에 앞서서 박순덕 법률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구해 가지고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만일 고시에 의해 임의로 요양기관을 급여대상에서 제외하였다면 이는 상위 법령에 위반이 되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저희가 특별한 요양기관 중에서 평가나 이런 것에서 제외되는 것은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보다 차원이 높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순례 위원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봐 주십시오.

보건복지부 고시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제3조 1항에 의하면 한방요양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예로 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에 한방요양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한약제제 요양급여 대상에서 임의로 약국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규정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위헌적인 규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간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답변은 제가 모든 질의를 한 다음에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시에서 한방요양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나열해 놓은 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한의원은 예시를 들어 놓은 규정입니까 아니면 열거 규정입니까? 이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시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한의과를 두고 있는 병원이나 치과병원, 종합병원에서도 한약제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할 수 있는 이유로 이 또한 한방요양기관에 해당되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규정이 예시가 아닌 열거의 규정이라면 앞서 말한 병원들 또한 한약제제 처방 시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고, 이 또한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 고시는 한방요양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그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고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제1

항의 사용 예를 제외하고는 기타 고시나 상위 법령에서 한방요양기관이라는 용어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점을 비추어 독점적 행정편의적인 용어 사용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의료 분야의 균형적인 발전을 선도해 가야 할 복지부가 오로지 한방의료조직을 위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는 등의 편향적인 행정을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장관께 제가 세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한방 보험 적용에 대한 요양기관 확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의학 의약분업 이런 문제 또 직능단체 간의 입장, 사회적 요구도 등에 의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순례 위원 지금 그 검토를 20년이 넘게 하고 계십니까? 복지부는 검토만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아닙니다.

○김순례 위원 누구도 이것을 질책하지 않고 질의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는다고 해서 업무를 방기하고 있으면 업무 유기입니다. 그 답변을 매번 들었습니다. 진일보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담당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좀……

○김순례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 이형훈 이형훈 한의약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약제제 급여목록·상한금액표에서 약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희가 열거규정으로 해석할 것인지 예시규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순례 위원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국에서 한약제제를 취급하고 있나요, 없나요?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 이형훈 한약제제 중에 100처방이라고 하는 처방목록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 위원 분명히 하고 있지요?

다음 해 보세요.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 이형훈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한방 보험 적용 기관으로는 지금 약사·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해석을 일단 급여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례 위원 잘하고 계신 거예요?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 이형훈 그 부분은……

○김순례 위원 누가 지적질 안 하고 문제 제기 안 하면 방기해 놓고 있는 게 잘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국정감사는 아니지만 이 문제가 굉장히 논단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이 안에 대해서 방기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 이형훈 예. 위원님 그 부분 때문에 한약제제의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지금 한약제제발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협의체에서 한방 적용하는 요양기관이라든가 급여 약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 한약제제의 보장성 강화 방안을 함께 지금 논의하고자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방하고 면밀하게 같이 함께 의견을 주고받는 것을 하세요.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 이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지금 시간은 지났습니다마는 하여튼 복지부장관께서는 굉장히 이 내용의 엄존함을 상기하시고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4월 임시회 전에 저희 방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조 김순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위원 의사진행발언으로 하려다가 그냥 본질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고 싶었는데요. 대통령이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의 죄가 있는데 스스로 사퇴하지 않아서 국회는 탄핵을 결정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그에 대한 핵심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문형표 이사장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작년 12월 19일 날 구속기소되어서 약 두 달이 지났어요. 응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 본인의 죄과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시인했지만 그에 합당한 응분의 책임은 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조특위 차원에서 청문회 위증과 관련해서 고발을 했는데요. 그런데 한 2년 동안 계시면서 이 상임위장, 국정조사장에 나오셔서 수많은 위증들을 하셨어요.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께서 간사님들하고 좀 상의하셔서 위원회 차원에서 명백하게 위증으로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처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관님,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문형표 이사장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렇습니다.

○기동민 위원 이사회가 해임을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기동민 위원 그 해임 결정이 두 달 동안 진행되지 않았어요. 이후에도 원활하게 진행되리라고 판단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검,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기동민 위원 뭐가 민감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특검 수사, 재판 진행 상황이나 후임자 인선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보고 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이런 보건복지부의 행태와 그리고 문형표 이사장의 일련의 행태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들이 단 1%나 될까요? 법률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직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그 책임 있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 이런 조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도 물론 지금 장기간 공백상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동민 위원 그러면 장관께서 정치적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뒤로 미뤄 놓으실 거예요. 미루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 노후자금을 맡겨 놓은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장관께서 이 사태를 방치하실 거예요? 정치력을 발휘하고 집행력들을 분명하게 주어서 국민연금공단 이사회가 책임 있게 결정할 수 있도록 방향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장관이 응당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가만 계시는 게 장관의 직분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좀……

○기동민 위원 검토는 충분히 하셨어요, 결정할 일만 남았지. 언제까지 검토하실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아니, 안 돼요. 조속한 시일 내라니? 지난번 상임위 할 때도 분명하게 문제를 지적했었고, 아무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보고해야 되는 게 임무인데 장관께서 그렇게까지 업무를 해태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판단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 결정을 지는 자리가 장관의 자리입니다. 누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어요? 거기에 따른 부작용들이 있다면 그것을 감내하는 것이 장관의 자리예요.

누가 법률 위반하라고 그랬습니까? 문형표 장관처럼 쓸데없는 지시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국민연금공단에 하라고 그랬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잘못된 지시예요, 그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내일까지 책임 있게 답변하세요. 하루 말미 드립니다. 장관의 지침을 명확하게 밝히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위원님, 우선 절차를 제가 조금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절차 보완설명은 내일 하시고 이것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하시라고요. 절차 문제 2개월 동안 따졌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곧 저희가, 내일은 조금…… 저희가 연금공단하고도 또 상의를 하고 그래야 되니까.

○기동민 위원 아니, 지금까지 뭐했어요? 내일까지 답변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기동민 위원 내일까지 답변하세요.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나오세요, 차관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아니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판단할 수 없다면 내일 같은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대행이라도 나와 가지고 책임 있게 답변하라고 하세요. 책임 있게 답변하세요, 상의하셔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오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상의해서 책임 있게 답변하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기동민 위원 하나 여쭤 볼게요.

몸에 테이프가 붙어 있는데 한꺼번에 확 떼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9년 동안 걸쳐서 떼는 게 낫습니까? 쇠뿔을 빼는데 단김에 빼는 게 좋아요, 9년 동안 걸쳐서 빼는 게 좋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쇠뿔이야 뭐 단김에 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런 문제라고요. 9년 동안 이 시행시기를 늦춘다고 해서, 여유시간을 준다고 해서, 그리고 시행시기를 내년도 아니고 2018년 7월인가요, 그렇게 늦춘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거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장관님 재임시절에 분명하게 방침을 가지고 작년까지 의견들을 줘서 시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어요. 물론 마지막에라도 이런 노력을 한 것은 가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나마 보건복지부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지 않습니까? 9년 동안 하겠다니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우선 시작은, 입법 과정까지 그것은 조속하게 위원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3월 달 내로도 다 마무리를 짓고…… 그런데 이게 시행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올해 내로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동민 위원 국민건강관리공단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6개월이면 충분하대요. 주무부처에서 그리고 관할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시행기간을 그렇게 길게 잡습니까? 물론 충분히 예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충분히 예비하는 것이 무작정 기간을 늘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저항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명히 수혜를 보는 대상이 있으면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저희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안을 만든 것이고요. 시스템을 고쳐야 됩니다. 시스템 고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게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내년……

○기동민 위원 아니,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고치지 않고 누적되었던 것을 9년 동안에 걸쳐서 그것을 고쳐 내겠다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아니요, 그게 아니라 18년도 시작하는 것은 저희가 시스템을 바꾸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개편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한 겁니다.

○기동민 위원 충분히 검토했지만 지고지순한 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흡하다는 평가들도 많은 것이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 문제는 국회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심의하시는 과정에 충분히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동민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의견을 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홍인 국장께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국회나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당리당략을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만은 아닌 것이잖아요. 국민들과 함께 그동안 누적되었던 7600만 건에 달하는 일련의 민원 이런 부분들 해결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니, 지금이 어찌 보면 20년간의 적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잘못된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최고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좀 더 분발하시고 국장께서도 좀 더 분발하셔서 합리적인 대안들이 정치권과 함께, 국회와 함께 모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저희가 하여튼 신속하게 일을 진행해서 조속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문제는 분명한 답을 내일까지 가지고 나오십시오. 장관님

은 리미티드 라인을 정해 주지 않으면 판단을 안 하시더라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판단하셔서 내일 책임 있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오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조 기동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당 간사님은 기동민 위원 말씀하신 문형표 이사장님 위증 문제에 대해서 상의해 주시고요.

이어서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위원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품목 조정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13개 품목의 교체와 확대 여부를 위해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품목 조정이 필요한 경우 6월 말까지 고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에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품목 13종을 결정했던 심의위원회에 정작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를 배제했습니다. 새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도 약사가 배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약사들의 의견 청취를 충분히 한다고 하지만 정작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약사들 입장에서 판매 품목의 확대에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복지부 입장에 반대할 것 같다고 위원회 구성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것은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정부 시책에 담아내겠다는 위원회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약사를 배제한 위원회 구성은 품목 조정 협의 과정에 심각한 흠결이 될 수 있습니다. 약사도 최소한 한두 명 정도는 위원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저희가 지금 약학회에다가 위원 두 분을 추천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약학회에서는 당연히 약사분 2명을 추천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의사도 의사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의학회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요 약학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약사분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2012년도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약사들이 참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만약에 그쪽에서 약사들을 1명이라도 추천을 안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아니, 당연히 상비의약품 하는 데에 약사분들 없이 논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꼭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최도자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관련해서인데요. 저는 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보다도 안전상비의약품 관리와 실태 조사를 더 먼저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의약품 오남용이나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피해가 크고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뒤바뀐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2014년 안전성 문제로 회수 조치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의 경우에는 즉각 회수되지 못한 편의점은 25.7%로 판매점 네 곳 중 한 곳은 관리 사각지대인 것입니다.

환자가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1회 구입 수량이라든지 구입 연령 등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기준 준수율은 3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2015년 기준 연간 239억 원 상당의 안전상비의약품이 편의점에 공급되고 성인 10명 중 3명이 구매 경험이 있고요. 전체 판매장 중 43%가 2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심야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오남용 및 부작용에 대한 실태조사가 아주 미흡합니다.

또한 판매점에서 상비약을 취급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도 문제가 있습니다. 2016년 6월 말 기준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은 2만 8039개소입니다. 판매점은 통상 24시간 연중무휴 영업하므로 종사자가 3인 이상입니다. 현재는 점주만 교육받고 있지만 점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 시간도 문제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사

원도 매년 2시간씩 교육을 받는데요. 상비의약품 판매점은 점주만 최초 1회 그리고 4시간짜리 교육을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이해 정도가 낮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자보다는 교육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의약품보다 경중도가 낮다고 소홀히 관리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몰아갈 것입니다.

장관님께서 제가 지적한 이 문제들을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동안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시행 평가하는 것을 작년에 한번 평가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수요 설문조사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진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약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도 과량 복용을 한다거나 이럴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종사자의 교육 또 이게 원래는 한 번 사용할 양만 팔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지키지 않는 것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승조 최도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질의자이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 장관님, 지금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장관님께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은 업무를, 일을 누구를 바라보고 하셔야 됩니까? 국민을 바라보고 하셔야 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국민연금 500조 그리고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형표 이사장이 사표를 내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계속 그런 입장이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장관께서도 문형표 이사장이 사표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본인이 사표를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상희 위원 바람직한데 사표를 안 내는 거지요. 그러면 사표를 안 낼 경우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 그런 무책임한, 책임지지 않는 기관장을 교체할 수 있는 근거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지금 전혀 복지부가, 장관께서 적용하려고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복지부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는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 위원님들은 다 이것은 잘못된 입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아니, 제가 이것을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는 없는 거고요.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상임위 때도 그렇고 지금 두 달이 됐잖아요. 두 달이 됐는데 지금 한시가 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연금은 삼성 부역자라고 하는 오명에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지체가 되고 의결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의결권 전문위원회가 9명 중에서 5명이 공석인 채로 방치되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장관께서는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것 내일까지 답변하라고 그러는데 당장 오늘 답변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해임건의안 내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해임건의안은 제가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단 이사회에서 해임건의를 올리면 저희가 거기서 의결하는……

○김상희 위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장관께서도. 지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임명권자에게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아니, 저희가 그것은 법률 검토를 해서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김상희 위원 지금 법률 검토를 해서 이것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적 행위로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당장 결단을 내려 주시고요.

오후에도 또 묻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대체가 두 달이나 됐고 지난번 상임위에서 그 정도로 지적을 했으면 장관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직접 어떤 방식으로든지 종용을 해서 사표를 내도록 하든지, 아니면 해임건의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요청을 하든지 했어야 되

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여하튼 저희가 그 과정을……

○김상희 위원 오후에 다시 묻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지금 그 답변을 여기에서 할 수가 없어요. 두 달이 됐고 지난번 상임위에서 장관께 요구할 만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똑같은 답변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단계 2단계 3단계, 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야 되는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연간 7000만 건의 민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개편했을 경우에 생겨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불이익 당하는 사람 생기지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할 경우에는 저는 9년이 아니라 한 10년이 넘도록 계속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로 시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가장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개편안을 조속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짧은 시간 내에 시행하는 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게 되면 계속되는, 10년 넘도록 건강보험 부과체계와 관련한 갈등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되면 갈등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단계적으로 간 것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이 큰 문제고요……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단계적으로 하는 것은 이 부과체계 개편이 됐을 경우에 생기는 갈등들 이런 부분들을 줄여 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 부분이 어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부담도 줄이고 갈등도 줄이는 겁니다.

○김상희 위원 그렇게 되면 갈등이 줄어들고 오히려 갈등비용이 줄어든다고 하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없어요. 근거 없이 그냥 3단계로 한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이것은 아주 다양하게 다 검토를 해서 한 거고요. 이게 저희가 다 원래 가고자 하는 데로……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3단계로 할 경우에 갈등이 훨씬 더 줄어든다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갈등이 증가되는 것보다 수용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수용성의 문제입니다.

○김상희 위원 수용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은 또 무슨 근거입니까? 3단계로 하면 수용이 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게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부담을 늘려 가야지 전혀 보험료를 안 내던 사람에게 갑자기 한 달에 한 30만 원 가까운 보험료를 내게 하면 그것은 수용을 할 수 없을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것은 저는 지금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3단계로 하면……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피부양자에서 탈락돼서 새롭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될 인원이 1단계에서 10만 명이고 3단계에서 60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그분들은 안 내시다가 평균 한 20만 원가량 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60만 명을 할 거냐, 아니면 소득의 크기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할 거냐 그런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개편안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대상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그 문제에 대

해서는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다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심도 있게 같이 논의를 하고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내용과 관련해서도 지금 질의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김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미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권미혁 위원 지금 장관님께서 해임에 대한 법률 검토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오후 회의 전에 제공해 주실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에 대한 법률 검토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아까 제가 질의하는 과정 중에 결근으로 처리되고 있는 문제가 이게 근거가 있냐고 얘기했을 때 근거 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인사 규정에서 저는 그걸 발견하지를 못했거든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아까 그 말씀 드리신 것은 공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윤소하 위원 아니, 결근은 징계사항이지요. 무단결근은 징계사항이에요.

○권미혁 위원 아니, 그래서 이 부분, 인사 규정이나 그에 대한 규정이 있으시면, 근거 규정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2개를 저희 방이나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오후 회의 전에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자료 있으시면 오후에 주시고요.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승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제세 위원 장관님, OECD 국가 중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잘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아직은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제세 위원 그러니까 OECD 34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의료비의 가계지출 규모가 두 번째로 높은 나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가 가계부담이 45%로 제일 높고, 우리나라가 가계부담이 35.9%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법정본인부담률이 약 20%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약 17% 이렇게 해서 지금 한 36.7%가 본인이 부담을 하고, 반대로 보장성은 65%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다. 멕시코가 제일 높고, 한국이 35%, 칠레가 31%, 포르투갈이 31%, 그리스가 28%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일 낮은 나라는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 본인가계부담이 10% 이하인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게 35%다, OECD 국가에서는 두 번째로 높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은 오래된 얘기지만 법정본인부담률은 20%지만 비급여가 한 17%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한 35%가 본인이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OECD에서는 그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

특히 지금 4대 중증은 보장률이 한 80% 되지만 4대 중증 외에 10개 이상의 재난적인 의료비를 야기하는 그런 질병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대 중증을 제외하고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4대 중증과 같이 의료보장률을 더 높여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원이 한 3000억 정도가 필요하다, 추가로. 그 정도는 정부가 해서 중증에 대해서 4대 중증과 똑같은 정도로 부담률

을 낮춰 줄 그런 용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보장성은 점차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4대 중증 이외에도 다른 질환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거기에 맞는 재정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제세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께서도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대구와 오송에 있는데—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송과 대구에 있는 첨단의료복합지원기관은 주무 관청이 복지부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오제세 위원 복지부인데, 지금 정부 예산이 한 5000억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의 인력이라든지 가동률이 50%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이 스스로 자립하는 기관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의약품이라든지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기관이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그런 의료복합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이 기관을 가지고 돈을 벌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고요.

우리나라의 의료기기와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지원을 하느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원래 이 설립 자체가.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첨단복합단지를 지정하고 그 지원기관을 설치해서 그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게 목적이라 말이지요.

그러면 이 목적대로 얼마만큼 이 산업 발전에 기여했는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가 이 기관의 목적과 성과 측정의 기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돈을 얼마를 벌어서 자립을 할 수 있느냐, 운영비가 400억~500억 드는데 그것을 니가 돈을 벌어서 해라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건데, 그런 방향에서 지금 정부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잘못된 운영성과 측정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것을 가고 있느냐……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건데, 왜 이렇게 하고 있지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사실은 처음에 첨복단지를 설립할 때 2018년부터 자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지연이 되면서……

○오제세 위원 그런데 의료나 의료기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기관이 돈을 벌 방법이 없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제세 위원 원래 목적도 돈을 벌기 위한 그런 기관이 아니라, 돈을 벌려면 의료기기를 만들거나 약을 만들거나 그래야 돈을 버는 건데 이것은 그런 산업을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의료기기 업체나 제약 업체나 또는 그런 연구기관이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면 되는 거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자립화를 할 수 있는 기반은 만들자 그래서 지금 국가나 지자체, 민간에 R&D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사장 중심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이런 제도 개선을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고, 3차 종합계획도 곧 마련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이 정부에서 지원을 끊으면 운영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원은 해 가면서 어떻게든지 그래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제세 위원 국책기관이 돈을 버는 기관이 있고 지원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정부는 돈을 벌지 않잖아요. 복지부보고 '돈 벌어 가지고 복지부 운영해라'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설립 목적이 뭔지 잘 좀 하셔 가지고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기능을 하여튼 증대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오제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국회의원 남인순입니다.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남인순 위원 2015년 10월 20일 날, 그때 부임

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요, 최광 전 연금공단 이사장 만나서 사퇴를 종용하신 적 있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때 그런 적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때 당시 최광 전 이사장이 홍완선 기금이사를 비연임하자 당시 장관께서 기금이사 연임이 청와대의 뜻이라고 연임을 주장을 하다가 최광 전 이사장이 홍완선 기금이사를 비연임하자 자진사퇴를 종용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이 연합뉴스에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것은 조금 사실하고 다릅니다.

○남인순 위원 그때 그 판단이 지금 생각해도 옳으신 판단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때는 제가……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쪽에서, 이사장님께서 연임을 안 시키겠다라고 저희한테 협의를 해 오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그때 장관 발령받고 금방, 얼마 안 돼 국감을 하고 있던 기간이라서 국감 끝난 다음에 저도 한번 알아보고 상의를 하자, 그래서 한번 만나서 상의를 했었는데……

○남인순 위원 장관님, 그런데 그때 어쨌든 그렇게 기금이사에 대한 연임이냐 비연임이냐 이것의 권한은 당시 최광 전 이사장이 가지고 있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것은 맞습니다.

○남인순 위원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비연임을 시키자 자진사퇴를 종용을 했는데, 지금 사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문형표 이사장이 작년에 12월 29일 날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자부터 지금 결근 중이에요. 결근 중인 상황이면, 현재 복지부가 그때랑 비교해 보면 문형표 이사장에 대해서 복지부가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 문제는 저희가 법적 검토를 조금만 더 해 보고……

○남인순 위원 아니, 법적인 검토를 떠나서,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인 검토를 해서 그때 한 게 아니잖아요. 최광 이사장에 대해서도 바로 만나 가지고 종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때는 좀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인순 위원 종용한 것은 물론 잘못된 것이지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사실 그보다 더, 문형표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직원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현재 공단 직원이 5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징계대상이 되잖아요. 공단 이사장은 징계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지금 버티고 있는 거지요. 그런 것이면 당연히 복지부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러면 빨리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아까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사실은 연금공단 이사 4명이 해임을 동의하면 상정이 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남인순 위원 현재 지금 세 분이 해임에 대해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해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지금 복지부에서 국장 한 분이, 연금정책국장이 이사로 참여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남인순 위원 복지부가 생각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의지가 있으면? 법적인 것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안건 상정은 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것은 그쪽 이사회에서 해임 건의를……

○남인순 위원 아까 이사회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사회 구성원 중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4명이 해임을 동의를 하면 상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3명은 이미 그런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장재혁 연금정책국장이 여기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 해임건의안 상정에 동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법적인 것 따질 상황이 아닙니다.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세 단체에서 그것에 대한 의견 표명이……

○남인순 위원 표명이 있었습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소비자연맹.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도 그것을 한번 물어봤는데 아직 의견 표명이 없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 세 단체가 확실하게 해임에 대해서 찬성하면 복지부도 4명 해서 그 절차를 진행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절차 그것은 한번……

○남인순 위원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지난번에는 5일 만에 최광 이사장 불러 가지고 그만둬라 이렇게 종용하신 분 아닙니까, 큰 잘못도 없는 사람을? 그 당시에는 최광 이사장이 자기 권한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장의 권한대로 한 것을 가지고도 청와대의 뜻을 거슬렀다고 그만두라고 종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불법하시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해임 이유는 그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유였고요.

○남인순 위원 지금 이거 가지고 법적인 절차 따지시는데, 복지부가 책임을 통감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장재혁 연금정책국장님!

마이크 좀 줘 보세요.

그동안 이사회 회의에 몇 번 참석하셨어요, 연금공단 이사회 회의에?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제 기억으로 한 번 참석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남인순 위원 한 번 참석했어요? 제가 받은 바로는 직접 참여한 것 한 번도 없었고 서면 참석 두 번 한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요. 한 번 했다니까…… 이거 한 번 한 것 말이 안 되지요.

지금 어쨌든 복지부에서 연금정책국장을 맡고 있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이신 분인데 내용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 해임건의안 상정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말씀드리면, 공단 이사회 멤버가 총 열한 분이거든요. 열한 분 중에서……

○남인순 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그 회의를 개최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분이 회의 소집 요구를 하고 의결을 열한 분 중에서 과반수, 여섯 분이 찬성을……

○남인순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본인 입장을 묻는 거예요. 회의 여는 것과, 이것으로 인해서 회의를 열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상정을 하려면 네 분 해야 되니까, 이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사로서 얘기해 보세요,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저는 찬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찬성 안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예.

○남인순 위원 왜 그렇지요?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저희 법에 공단 이사장이 이렇게 궐위가 될 때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인순 위원 아니, 공단 이사장이 지금 도의적 책임과 연금공단에 끼친 손해가 얼마인데요. 지금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 장관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사로 참여하는 국장이 검토해 보겠다는 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 제가 발의를 하고 찬성하는 것은……

○남인순 위원 그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찬성은 하는데, 제가 하는 것은 뭐 어떻다는 얘기예요? 지금 복지부의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아니,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남인순 위원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예, 그렇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러면 복지부에서 입장을 정하면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그것은 따로 한번 논의를 좀……

○남인순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소하 위원 오늘부로 가장 오래된 정당인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이제 금방 남인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그 과정은 다 차치하고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동석해 있고 이 문제를 위원들이 그렇게 대단히 큰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파견된 정책국장이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렇게 발언할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얼마만큼 안일하게 받아들이고, 여기 추호도 반성의 의지……

지금 국민연금공단에서 결의대회 하고 자정대회 하고, 그거 무슨 소용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관점과 태도가 이러니까……

장관이 있는데, 보건복지부 몫으로 파견된 것이지 개인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독립성을 일정 보장하자는 것은 국민연금을 온전히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이지 독단과 부정부패 하라고 독립성을 강조한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로서 거기에 응당한 책임을 느껴야 되고, 거기의 이사이면……

어떻게 감히 여기서 '나는 거기에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사회 개최하라니까?

장관님, 오늘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말도 많고 탈도 이렇게 많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20대 개원 이후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화상투약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안 된다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렇게 끈질기고 집요하게, 오늘 또 약사법 개정안 내놓았어요.

질의드립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추진하는 부분이 장관님 신념이십니까 아니면 말 못 할 사정이 있는 겁니까?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무슨 말 못 할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접근성을 향상시키자 그래 가지고 전에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도 이것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윤소하 위원 규제개혁장관회의는 지금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하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공장이었어요. 그 공장 가동 멈췄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 문제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장관님, 절대 되지 않으니까 거둬들이시길 바라고……

현재 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병원이 몇 군데인지는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윤소하 위원 313개소지요. 그런데 작년 한 해만 해도 143개소가 새롭게 지정됐어요.

그런데 정작 지정을 받고도 서비스 시행을 하고 있지 못하는 병원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윤소하 위원 한 병원은 아예 지정을 받아서 포기했어요.

문제는 이들 병원 모두가 거의 지방에 있고, 그때 같이 한번 지방에……

왜 서비스 시행을 못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똑같이 시설·장비는 기준에 맞춰서 구비했는데 인력 문제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지 못하다,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경기도의 한 병원의 경우는 추가로 20명의 간호사가 더 필요하지만 신규는 물론 유휴간호사—경력직이니까 비용이 더 들겠지요—이마저도 채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만큼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한 간호인력 확대가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윤소하 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에 가면 인력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하지 못한다고 사방에서 난리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보건의료 인력부족 문제, 특히 지방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해 왔어요.

기억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윤소하 위원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 발의한 것도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윤소하 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생각하는 대안이 뭔지 같이 상의도 해 보고 논의해 보자는 이야기조차 안 하고 있어요. 아까도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장관님께서 인력의 문제가 진짜 심각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인력지원 특별법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같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의원실과 같이 하든지 같이 공청회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여튼……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그냥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얼마든지 같이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같이 해냅시다.

작년에 간호취업지원센터 만들어 가지고 30억인가 지원해 가지고, 그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금 그래도 간호사가 한 1000명 정도가 직장을 가졌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것은 좀 더 확대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윤소하 위원 실제적으로 정확히 취업한, 그 사업을 통해서 취업이 270명이에요.

다시 한번 살피세요. 그냥 거쳐간 사람 말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취업 연계를 1000명 정도 했습니다.

○윤소하 위원 연계 취업……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 아직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장……

○윤소하 위원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 복지부도 같이 논의를 진행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위원장님과 4당 여야 간사님들께도 정중히 요청드릴게요.

본 위원이 계속해서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이 부분 강조하고 있는데, 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이어서가 아니라 현장의 간호인력, 의료기사와 같은 보건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대로 가다가는 특히 지역의료 체계가 붕괴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자꾸 떠나고 있는데, 위원장님과 4당 간사 위원님들이 법안소위에서 안 되면 공청회라도 한번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조 예,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 위원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2012년도에도 지금과 같이 대선공약 중에 복지와 관련된 공약들이 언론을 통해서 당시에 발표됐었고 또 국회에서 의원들이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면 그 당시의 장관님은 정확하게 자기 입장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기본소득제가 사회복지 분야의 뜨거운 화두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대선주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장하시는 분마다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 차이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복지부도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말씀 좀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할 것이고요.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진보진영에서 얘기하는 기본소득의 개념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단위로 균등하게 지급해야 되고 그리고 자산의 조사 없이 소득이 있더라도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또 노동 여부와 노동의 의사를 묻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생계 보장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할 정도로 충분한 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일부 대선주자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외국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스위스에서도 작년 6월 달에 이 기본소득과 관련된 국민투표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김승희 위원 노동 여부·의사 이런 것 묻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생계 보장과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할 정도로 충분한 현금을 보편적으로 모든 성인에게 매달 3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국민투표에 부쳐졌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김승희 위원 76.9% 반대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기본소득을 시작했을 때 오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부담이 큰 것 또 이것에 대한 효율성이 검증이 안 된 것, 이런 등등이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승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각종의 복지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복지제도를 폐지하고 그것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초생계가 가능할 만큼 기본소득을 주면 근로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반대로 부결되었다라고 저는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측면에서, 핀란드에서 올해 1월부터 실업급여를 받는 25~58세의 실업자들 중에서 무작위로 2000명을 선정해서 매달 7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를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보면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에 분명히 명백하게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급대상도 다르고 또 지급금액도 다릅니다. 스위스는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성인에게 지급하는 반면에 핀란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르지요.

그다음에 지급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계유지가 가능한 수준이냐 아니냐, 그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핀란드는 지금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 돈을 가지고는 저임금의 일자리라도 취업을 다시 해서 추가소득이 있어야지만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다른데, 지금 우리 대선주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기본소득 개념에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례로 모 대선주자님께서 모든 국민에게 연 30만 원, 청년·노인·농어민·장애인 등 한 2800만 명한테는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복지부의 검토의견 또는 생각하는 바는 뭡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국가별로 시범사업 정도이고, 제대로 이게 진행된 제도도 아니고 또 논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합성을 먼저 검토해야 되고 이것에 맞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복지제도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김승희 위원 그러니까 다시 제가 장관님 말씀을 정리하면 기존에 있는 복지제도에 대한 재조정 그리고 재정립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없이 이렇게 나눠 주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뜻이지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김승희 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유력한 대선주자는 기초연금을 지금 65세 이상 노인의 70%, 그분들한테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한 80% 되는 노인분들한테 30만 원으로 올리고 또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또 아이 숫자에 따라서 아동수당을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각각 지급하겠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현재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재언급은 없습니다.

복지부의 입장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금 아동수당은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의향을 밝히고 계신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무상보육이나 가정양육수당 이런 것들에 대한 정합성을 검토해서 그것에 맞는 것 또 아동수당이라는 것의 효과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이런 평가를 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수당은 우선 저희는 먼저 필요한, 받을 필요성이 있는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승희 위원 그래서 복지부장관님이 지금 대답하신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대선주자들께서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공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지금 현재 복지부장관님의 입장은 기존에 있는 복지제도에 대한 재정립과 재분석을 바탕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개념으로 대답한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 현재 입장은 우선 우리 기존의 복지제도하고의 정합성을 먼저 검토해서 실시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희 위원 저도 동감이고요.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공약이 남발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가 되면 나중에 그 뒷감당은 복지부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의사를 표명을 하세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그래서 다음에 어떤 다른 정권이 들어섰을 때 복지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타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더…… 그런 상황이 안 발생하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이고, 명확하게 복지부의 입장은 지금 재분석 없이 이렇게 공약이 남발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것에 대한 재원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맞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 문제는 아마 적당한 시기가 되면 이것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승희 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여태까지 복지부에서 갖고 있는 생각은 그런 원칙입니다.

○김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 성일종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금 건보료 부과체계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으시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성일종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하여튼 잘 봤습니다. 우선 어려운 작업을 하고 계셔서 힘드실 텐데, 큰 방향의 틀은 상당히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서민들을 위하고 형평을 맞추려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이 다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피부양자로…… 이 얌체족들이 문제고, 두 번째 지역가입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편안에 보면 5억 4000만 원의 재산을 갖고 있거나 2000만 원 이상의 이자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이번부터 부과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5억 4000만 원 정도 공시지가의 집이라고 하면 대략 시가로 한 10억 정도가 되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성일종 위원 두 번째, 2000만 원 이상이면 현금이 10억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역가입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일종 위원 지역가입자가 됐든 피부양자가 됐든 두 가지 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성일종 위원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연간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그러면 현금 5억이 있는 거거든요. 현금 5억이 있는 겁니다, 집 한 채가 있고. 이랬을 때는 이 부과체계에서 빠진다는 거예요. 저번에 국장님들하고 상의는 한 번 했는데, 국세청에서 지금 현재 2000만 원 이상만 자료가 공유되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성일종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통계청은 이 국세청 자료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2000만 원 미만의 이자소득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갖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그것은 아직 연계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이것이 법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가 안 되는데, 일단 자료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탈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부분

들을 여러 경비로 넣어 가지고 과표를 아주 적게 잡아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됐든 세금이 됐든 얇고 넓게 많은 국민이 부담을 해야 좋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 장관님의 확실한 정책을 가지고, 3년 뒤에 개편하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3년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법을 개정할 테니 이것은 되는대로, 2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10억의 예금을 넣어야 시중금리 2%로 계산했을 때 200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집 한 채 5억 4000만 원 갖고 있는 것이 시가가 한 10억 정도라 보고 또 10억 정도의 예금, 9억이든 8억이든 있다 보면 근 20억 정도 갖고 있는 분들이 건강보험 상태에서 빠지게 된다는 거지요, 5억 4000만 원 미만이면.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너무 길다, 법이 바로 통과가 되고 복지부가 서둘러서 이것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라도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금융실명법에 따라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가지고 자료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선 분리과세, 금융소득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자료 공유를 하고 해서 그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합니다. 이것을 분석하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야 되고, 물론……

○성일종 위원 장관님, 답변을 끊어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산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정부에서 얘기하는 4억의 서울 집 한 채와 예금을 7억~8억 가지고 있는 사람도 무조건 3년 이내에는 건보료에서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간별을 3년 단위로, 올해 우선 5억 4000 이상, 20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에 대한 것은 체계가 서겠지만, 개편안에 들어가 있는데 3년 동안 공백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우고, 지금 법 개정을 바로 하겠습니다. 요청을 해서 발의해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내년이라도 이것에 대한 보강으로 꼭 3년이라는 기간을 두시지 말고 빨리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저는 건강보험 체계가 제대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 세세하게 제가 물을 것이 많아서 만약에 모르시면 그냥 이것은 검토 지시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성일종 위원 또 여기에 보면 지금 고액 체납자들이 있는데 상습범들이 많습니다.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 외제 차량도 있고 이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장관님, 이것 같은 경우 해외여행을 아예 못하게 막든지 아주 극단적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바로 어떤 강력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러한 얌체족들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것은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복지부에 지난 국감에서 많이 제기됐던 서류 간소화 부분이 있는데, 장관님 차관님이 약속도 해 주셨고 많이 진행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항목만 합쳤지 세부적인 항목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는 거지요. 체크할 부분은 다 있습니다. 단지 항목만 합쳐 가지고 한 경우도 있던데 이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보셔서 실질적으로 줄여 주시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성일종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장애인들을 위한 목욕시설이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57개가 있는데 57개는 대개 거의 중앙정부 예산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입법을 진행 중인데……

장관님, 장애인들을 위한 목욕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지부의 위상도 올라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정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애인을 위해 각 시군 단

위에라도 이 목욕시설을 반드시 저는 하나씩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따르는 운영비도 정부가, 크게 안 들어갈 겁니다. 이 부분도 예산에 책정해서 지원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장애인 복지관사업은 지방에 이양된 사업이긴 한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주셨던 내용인데 저희가 이용 실태 등 먼저 한번 분석을 해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한번 해당 지자체하고도 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천안시인가요, 거기에서 지은 것은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동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아주 나름대로 가장 잘되어 있는 시설 중의 하나고요. 오래전에 지은 것들은 그런 것들이 고려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쭉 장애인시설을 다니면서 만났을 때 이분들이 가장 보이기 싫어하는 부분이 신체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이제는 나서서 우리가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시대적 요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장관님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성일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당 천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배 위원 장관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홍완선 전 이사 연임 문제에 관해서 제가 서면질의도 한 바가 있고 한데요, 오늘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관님이 기억을 되살려 보면 재작년 10월 달에 최광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네 차례 만나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천정배 위원 10월 1일·9일·11일·20일인데, 그렇게 제게 답변을 해 오셨습니다. 물론 그때 다른 용건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홍완선 당시 기금이사의 연임 여부가 장관님하고 이사장 사이에 논의된 안건이었고, 장관께서는 최광 이사장의 요청에 의해서 연임 여부에 대해 협의했다, 당시 이 문제에 대해 장관으로서 특별한 입장은 없었다, 이렇게 저한테 서면답변을 하셨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천정배 위원 다 맞으시지요? 그러면 이 말씀은 당시는 홍 이사의 연임에 대해서 가든 부든 특별한 입장이 없었다 하는 말씀이시지요, 장관님으로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우선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천정배 위원 하여튼…… 그러면 그 후에 입장을 정한 일은 있으신가요, 장관께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아닙니다. 저는 연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선 좀 파악해야 됐었고……

○천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뒤에 그분이 연임 못 하고 최광 이사장도 물러났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천정배 위원 당초 만날 때는 특별한 입장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이해합니다. 그 후로 혹시 장관님이 더 알아보시거나 어떤 정보를 얻으셔서 홍완선 이분이 연임해야 된다, 아니면 비연임이 옳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입장을 정하신 일이 있으시냐 이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때 제가 장관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곧 국감 준비하고, 국감이 끝난 것이……

○천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꾸 그럽니다, 7분 동안에 다 끝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경위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장관님은 그 후에도 쭉 특별한 입장이 없으셨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것은 협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천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 과정에서 비연임이 옳다, 연임이 옳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의 특별한 입장이 없으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것은 어떻게 협의를 하자는 거였지……

○천정배 위원 그렇지. 협의만 하자는 거였지

특별한 입장이 없었다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제가 꼭 해라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천정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0월 1일 날 첫 만남 당시에 최광 당시 이사장의 입장은 홍완선 이사 연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랬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것은 확실하네요. 그러면 지금 최광 이사장의 주장에 의하면 장관님 만나기 전에 8월 28일 날 복지부 국장에게 비연임 의사를 표명했다, 비연임이 뭔 뜻인지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천정배 위원 홍 이사를 비연임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천정배 위원 그다음에 8월 31일에는 비연임 사유를 정리한 문서를 복지부 국장에게 이메일로 보냈다고 그래요. 이메일은 사실은 지금도 수사만 해 보면 나올 수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9월 13일 날 국장에게 재촉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랬다고 그러면, 더구나 메일로 보냈다고 그러면 사실은 메일은 지금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관께서는 아시든 모르시든 간에 그런 것이 벌써 8월 말부터 9월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10월 1일 날 최 이사장을 만나기 전에 당연히 복지부의 주무 국장 등으로부터 최 이사장이 비연임 의사를 가지고 있다 하는 보고를 받으셨을 만한데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때 제가……

○천정배 위원 아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때 보고를…… 최광 이사장님이 왜 저를 만나자 그러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사실 몰랐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것은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네요. 산하기관장이 장관을 면담해서, 항상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천정배 위원 그것도 멀리 지방에 있는 기관의 이사장이 찾아왔을 텐데, 그때 아직 옮기기 전인가요? 어쨌든 찾아오는데 그렇게 면담을 온다고 그러면 장관하고 직접 통화는 안 하셨을지 모르지만 비서실이나 주무 국장이 그 안건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고, 놀러 옵니까? 그다음에 더구나 거기 비서실이나 보건복지부의 관계 국장이나 이 사람들이 그에 대한 어떤 자료도 다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때가 제가 국감 기간이라서 여기에 별로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 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가 이것을, 국민들이 믿어 주겠어요? 아니, 보건복지부장관을 이사장이 찾아와 만나는데…… 아니, 누가 국감 기간에 국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진들 뭐 하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그냥 스스로 지금 국무위원께서 '나는 바지저고리였소'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광 이사장 말씀은요, 시간이 워낙 없네요.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그날 장관께서 홍완선 이사 연임이 청와대 뜻이라고 협조 요청했다는데 장관께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할 법도 한데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저도 '기억력이 참 나쁘시네요'밖에 이야기가 안 될 텐데, 그래서 최 이사장은 그 후에 자기가 직접 BH의 의중을 알아보겠다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청와대 김현숙 복지수석, 안종범 경제수석—당시 직책입니다—그분들에게 홍완선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메일로도 보냈고, 휴대폰 문자로도 쐈고, 다 했다는 겁니다. 지금 다 수사해 보면 나올 일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관께서 어떤 반대 의사를 표명 안 했는데 BH 의사라든가 이런 이야기 전달 안 했는데 굳이 최광 이사장이 BH에 물을 이유가 어디 있었으며, 더구나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사권을 장관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광 이사장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리고 장관은 감독기관으로서 의견을 말하고 협의를 하고 할 권리는 있지요. 그런데 벌써 네 번이나 만나서 최광 이사장 나름대로는 장관한테 보고했고, 장관으로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었고 그러면 협의 충분한 것 아니에요? 협의라는 것이 뭡니까? 합의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아니,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천정배 위원 아니, 네 번에 걸쳐 했는데 그동

안 10월 20일까지 20일 동안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갔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아마 제가 10월 1일 만나 뵙고, 그다음에 제가 지시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천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9일, 11일, 20일 만나고, 그다음에 사퇴하고 문제가 벌어졌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천정배 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여러 번 만나고 협의했으면 최광 이사장 입장은 협의 끝난 것 아닙니까? 장관의 결재 맡는 것 아니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아니요, 저하고……

○천정배 위원 자, 3초밖에 안 남아서 제가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의는 합의가 아니에요. 최광 이사장으로서는 협의를 다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장관이 더구나 반대한 것도 아니고 입장이 없었다고 하시잖아요.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최광 이사장을 그 후에 해임 건의한 이유는 뭔가 자기 마음대로 비연임을 발표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는 협의가 안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도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협의가 합의가 아닌 이상에 네 번씩이나 장관을 직접 만나서 다 의견을 이야기했으면 협의가 끝난 거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네 번 만난 것은 그다음입니다.

○천정배 위원 아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1일 날 만나고 그다음 9일 날째……

○천정배 위원 20일까지 만났으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러니까 그 협의는 9일하고 11일 날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천정배 위원 아니, 잘 말씀하셔야 될 거예요. 1일, 9일, 11일 했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맞습니다. 그때까지 협의를 했었습니다.

○천정배 위원 바쁘신 장관을 세 번이나 직접 만나서 했으면 협의 충분한 거지요. 그다음에 최광 이사장의 해임 건의를 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사표 낸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아마 오늘 또 문제가 됐을 텐데 문형표 이사장이 지금 저 꼴인데 해임 건의 안 한 것하고 형평에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도 그것을 법률 검토를 해 봤는데요.

○천정배 위원 시간 넘으니까 답변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저는 지금 어떤 편견도 안 갖고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저런, 사실은 앞으로 수사해 보면 이메일이나 문자는 아마 다 복구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장관께서 홍완선 이사의 연임이 청와대, BH 뜻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것만 딱 맞으면 마지막 퍼즐이 맞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그러시는데, 그렇게 '내가 바지저고리오' 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이 문제 빠져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사장님이 연임을 안 시키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쪽에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아마도 김현숙 수석이 알게 된 것은 다른……

○천정배 위원 제 시간 끝나서 끝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러니까 최광 이사장 이야기는 그 전에 이미 복지부 국장한테 메일도 보냈다는 겁니다, 한 달쯤 전에. 그런데 그런 사유가 다 보고되고, 장관을 벌써 두 번, 세 번을 만났는데 그다음에 또 뭘 해 보라는 자체도 벌써 이것이 청와대나 다른 데서 큰 영향력이 없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다 같이 해 봤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9일 날 잠깐 만났고요.

○천정배 위원 좋습니다.

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승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근 위원 인재근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셨지만 장

차관님, 특히 차관님 뵐 때마다 부과체계 개편을 재촉했던 저로서는 감회가 남달라서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청와대 때문에 2년이나 늦어졌지만 개편안을 발표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 측면에서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차관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태의 엄중함에 비해서 정부안이 너무 여유 만만합니다. 좀 더 신속하고 강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안이 재정 중립을 포기한 점도 다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 통합한 것은 직장인, 사업자, 지역가입자, 국가 간의 사회적 연대고요, 사회적 대타협입니다. 이러한 통합의 정신을 다시 음미했으면 합니다.

어쨌든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법안소위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병 관리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47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는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감염관리의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간호사 또는 감염관리의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감염관리와 관련해 감시, 배양검사 등 전문적인 일을 소화할 수 있는 인력은 임상병리사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병원에 임상병리사를 의무 배치하는 등 전문감염관리 인력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금 병원 감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선 의사하고 간호사가 필수적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더 추가로 필요한 인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감염관리실 설치 확대 또 병원 인력 확대 문제에 대해서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기준 같은 것을 좀 개편하면서 어떤 식으로 추가 필수인력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의사, 간호사뿐 아니라 기본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임상병리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충분히 임상병리사도 감염관리실 근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최근 농아인들로 구성된 사기단 행복팀이 2010년부터 7년간 500명의 농아인들에게 다 합쳐서 280억을 갈취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노후대책을 위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100만 원, 많게는 7억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금융지식이 부족한데다가 금융 문제를 상담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규모가 더 커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금융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의 장애인 금융범죄 피해 예방교육과 피해 현황을 물어보니까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을 상대로 한 금융범죄 예방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고 저희도 같이 협조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또 농아인협회하고 상의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정말 나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것 꼭 근절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전에도 질의를 드리기는 했는데 노인복지관 물리치료실 설치와 물리치료사 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노인복지관에서 촉탁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존에 있는 물리치료실을 폐쇄 또는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물리치료사를 필수인력으로 규정하고도 촉탁의 배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정부의 업무 태만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르신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부나 지자

체의 촉탁의 관련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 제가 그전에도 질의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물리치료실을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대부분 예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물리치료사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저희가 지자체하고 계속 협력을 해서 재정 지원을 좀 독려를 하고 인력 수급 상황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 안 될 경우에는 촉탁의 같은 것도 활용을 해서 물리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재근 위원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보건소도 중요한 공적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고 지금 복지관에 물리치료실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복지관에서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노력해 주세요.

○위원장 양승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장관님, 문형표 이사장의 구속 상황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기관장으로서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판단할 수 있고요. 이사회에서 해임 건의가 가능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그것 저희가……

○정춘숙 위원 그리고 아까 대답하실 때 이사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오면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정춘숙 위원 됐습니다.

장재혁 연금정책국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이사장의 해임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동의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예.

○정춘숙 위원 이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공단 이사회가 열한 분인데요. 각자 자기 양심과 판단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인데……

○정춘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해임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시라고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제 생각에는 지금 직무대행 체제인데 공단 이사장이 궐위가 되는 경우에 법령 규정에 따라서 직무대행 체제로 현재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정춘숙 위원 잠깐만요, 지금 국민연금공단 이사 업무 겸임하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예?

○정춘숙 위원 국장님이 지금 이사 업무 겸임하고 계시지 않냐고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예.

○정춘숙 위원 그러면 겸임하고 계시면 해임건의안이 올라오면 반대하시겠네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예, 올라오면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춘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윤소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문형표 이사장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인식이 안일하다는 얘기를 들으시는 겁니다. 국민들이 지금 문형표 이사장이 감옥에 있으면서 연차 쓰고 이런 것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연차하고 그다음에 결근 이것은……

○정춘숙 위원 지금 결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그것은 공단 규정에 따라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거고요.

○정춘숙 위원 아니, 그러면 규정……

국장님, 앉으세요.

장관님,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지금? 지금 국민들은 자신의 노후를 지켜 줄 마지막 보루로 국민연금 생각하고 있고 그 국민연금 이사장이 지금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으면서 사퇴 의사가 전혀 없이 무급으로 휴가 내고 결근하고 있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복지부가 법률상 국민연금이사회의 당연직 이사인데 가져 가지고 이사장 해임건의안을 내지는 못할망정 그것을 반대한다는데 이 인식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것은 저희 복지부 내에서 다시 한번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숙 위원 아니, 도대체가 여태까지 조율 안 하고 오시고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저께 오늘 생긴 문제입니까?

지금 보시면 이사 3명 이상의 요구로 이사회 소집할 수 있고요. 2월 28일 날 이사회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정춘숙 위원 그러면 아까 기동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일 답변을 갖고 오실 때 2월 28일 날 해임건의안 낼 수 있도록 복지부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복지부에 계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소비자연맹 이런 분들이랑 하면 해임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은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국장님의 저런 안이한 인식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굉장히 전화 많이 왔습니다. 어떻게 정부에서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것 장관님 책임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우선 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복합적인 여러 상황들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정춘숙 위원 장관님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설명을 듣고 변명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요. 문제에 해결적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문형표 이사장은 감옥에 있으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요. 지금 대행 체제가 작동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사회를 통해서 해임건의안이 올라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걸맞게 복지부 안에서 의논해서 내일 답변 주십시오. 가능하시지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좀 의견을 구해 보고 법률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숙 위원 아니, 검토 여태까지 안 하셨습니까?

오늘 의논하셔서 내일 답변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검토했던 것하고 위원님이 다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춘숙 위원 그럼 내일 답변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어떻게……

○정춘숙 위원 내일 답변 주세요. 어떤 방식으로든 주십시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질의했잖아요. 사람들 다 기가 막혀합니다, 어떻게 연차를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심평원장 선임 준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금 심평원 내에서 임추위를 해서 지금 신임 원장 추천 절차를 진행을 했고요.

○정춘숙 위원 올라왔지요, 지금?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 두 사람이 추천되어 있습니다.

○정춘숙 위원 그래서 지금 제청해서 임명만 남아 있는 것인데 지금 굳이 심평원장 서둘러서 선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권한대행도 인사할 수 있지만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심평원장으로 가장 유력한 내정자가 장관님하고 매우 잘 아시는 분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대학 선배라는 것은 아는데 일면식도 없고……

○정춘숙 위원 대학 선배인데 전혀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하고 2년 선배인데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난 적 없고요.

○정춘숙 위원 그래서 장관님께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기존의 심평원장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지금 심평원 원장을 선임할 것인지 그것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심평원장 선임은 복지부장관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춘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제가 개입도 하고 있지도 않고 있습니다.

○정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공단 이사회에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이 비상임 자격으로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임기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숙 위원 끝났다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1월 22일자로 임기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춘숙 위원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정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비상임 이사들 또 특히나 전경련이 이제 해체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전경련은 넣지 않으실 예정이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전경련은 뭐 해체됐는데요.

○정춘숙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무튼 내일 답변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조 정춘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재혁 국장님 잠깐만 일어나 보실래요?

지금 당연직 이사시지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예.

○위원장 양승조 장재혁 국장님이 외부위원이 아니고 당연직으로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형표 이사장이 검찰에 기소가 됐단 말이지요. 장관님도 여러 차례, 수차례 나름대로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장재혁 국장이 당연직 이사이신 신분에서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안이 올라오면 반대하겠다', 그러면 장관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고 장 국장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관을 대표해서 하는 거예요. 검찰이 기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기관장이 결석계 내고서 업무를 못 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그것은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서 지금 결근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양승조 결근 처리하는 것 그 자체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장관께서 수차례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름대로 사퇴했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완곡하게 거절한다, 법적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데 만약 안건으로 올라오면 장재혁 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 있냐 말이에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저는 공단 이사회 11명 중에서 제가 행사할 수 있는 표가 한 표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위원님 질의에 제 개인 의견을 여쭤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위원장 양승조 장 국장이 개인 의견을 낼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 개인 의사가 아니라 저는 당연직 이사이기 때문에 제가 행사하는 표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기관의 결정을 제가 대표하는데, 그래서 이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위원장 양승조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기관 간에 논의해 가지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장관님 앞에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부적절한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제가……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예, 앉으시고요.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승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2차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대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혁 위원 장관님, 저희 방으로 문형표 이

사장의 거취 관련 법률 검토자료를 제가 요청드렸었고요, 제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당연퇴직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이 있네요. 거기 의견은 뭐냐 하면 아직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퇴직 요건인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실형과 관련된 부분만을 보신 것인데요. 제가 아까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법 35조, 36조 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생기게 할 때는 당연퇴임이나 해임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연금공단 정관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당연퇴임이나 해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전혀 고려치 않고 오로지 실형선고 부분만 법률 검토를 딱 받고 이것을 자료로 지금 내신 것인데요.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편향되게 지금 법률 검토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률 검토이기 때문에 실형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적어도 당연퇴직과 관계된 조항들은 다 찾아봐야 됐던 것 아닌가 싶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또 아까 제가 결근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방 차관께서 공가에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 공단 인사규정에 보면 50조 공가에 공무와 관련해서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에 공가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장관님께서 해임을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문형표 이사장이 공단 이사장으로서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고 장관 시절에 이것을 한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해임하라고 하는 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결근 이 공가도 장관 시절 문제로 처리를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결근 공가의 근거는 현재 공단 이사장의 인사규정을 들이미시고, 그다음 정작 '해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하면 '그것은 장관 시절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공단 이사장으로서 불법행위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모순된 주장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당연퇴직 문제 법률 검토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떤 느낌이 드는 것이냐 하면 공무원으로서 이 문제의 사안을 불편부당하게 처리하는 게 아니고 문형표 이사장을 해임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는 문형표 이사장님 면회 관련 자료도 있었어요. 그런데 비서실에서 자료를 작성하셔서 저한테 주셨는데 거기 보면 17년 1월 19일과 2월 7일에 각각 두 분 두 분께서 면회를 하셨네요. 그런데 거기 중요 표시를 해 놓고 '제한된 시간 5분과 장소의 제약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는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까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분이 안 한다고 합니다'라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게 실제로 이사들이 적극적으로 가서 짧은 시간 내에 과연 안부를 묻는 정도에 그쳤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해임을 요구하고 사퇴를 요구했는지가 매우 참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 부분 이야기를 해 주시고.

저는 이사장님께서 이왕이면…… 한번은 직무대행과 연금이사가, 2월 7일에는 기획조정실장과 인재경영실장이 면회를 가셨는데요. 직접 가셔서 아까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퇴를 요구하실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우선 면회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가서 분명히 의회와 언론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사퇴 의사를 물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법안 문제는 지금 저희가 해석한바 자문을 얻은 내용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것하고 지금 내용이, 다른 내용까지 말씀을 주셔 가지고 그것은 한번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면회를 가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미혁 위원 장관님 본인이 직접 면회를 가실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제가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미혁 위원 이왕이면 본인이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아까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복지부에서 이렇게 해임 불가의 근거하고 결근의 근거를 상호 모순적으로 제시하고 이런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검토해서 결과와 방 차관님께서 해명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권미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필 위원 장관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작년 2월 3일 제정되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윤종필 위원 올 8월부터는 호스피스 관련법이, 내년 6월부터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될 예정이고 현재 준비 중인 것으로 압니다.

초고령사회 앞두고 있는 만큼 죽음에 대한 선택과 준비는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님께서 작년 11월에 '함께 죽음을 이야기하고 준비하자'는 주제로 글을 기고하신 것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의료인들 사이에 논란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윤종필 위원 요양병원을 포함한 일부 병원에는 의식이 거의 없고 음식을 삼키지 못해 튜브로 영양 공급하는 환자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가 국내에는 한 얼마쯤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제가 자료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필 위원 일본의 경우는 40만~50만 명이 있는데 국내는 저도 아직 자료를 못 찾아봤는데요.

대표적인 말기환자들인데 이 법이 임종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정말 필요한 이런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 즉 말기환자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말기환자가 이 법에 의해서 연명의료 중단 대상이 되는지, 연명의료 중단을 어떻게 결정할지 등에 대해서 현장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어떤 보완 대책 마련하고 계시는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연명의료를 할 수 있는 환자는 딱 규정을 해 놨는데요. 우선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 이런 몇 가지가 있고, 급속도로 악화돼서 사망할 환자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연명의료의 범위를 잡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식물인간 상태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단 먼저 계획했던 부분을 좀 시행해 보면서, 지금도 저희가 준비해야 될 사항도 많고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아서 이것을 먼저 시행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다 검토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점차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필 위원 연명의료 결정 후의 서비스 유형이 호스피스 전용 병동에서 서비스받는 입원형 외에도 일반 병동의 자문형, 가정에서의 가정형으로 다양화되는데 가정형 경우도 지금 시범사업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윤종필 위원 어느 정도 참여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가정형도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종필 위원 제가 2월 4일 자 동아일보에 보니까 가정형에 대한 일본의 사례를 직접 기획 취재해 가지고 방문의, 방문간호사, 케어플래너 등 집에서 임종 맞으려는 사람들에 대해 상태 체크하고 간병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정형은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가 하루 1시간 내외로 돌봐 주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결국은 가족이나 고용된 간병인이 담당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나 고통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별도 지원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시범사업을 거쳐서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고 이것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종필 위원 환자가 집에 있음으로써 절감되

는 비용을 가족 부담 경감에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지 추후 우려되는 임종 난민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11월에 내한한 하버드 의대 안젤로 교수가 사전의료 결정은 동영상을 활용한 교육이 어떤 말로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상황에 맞는 동영상 제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준비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종필 위원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을 존엄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과정의 하나라는 장관님의 글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한테 많이 와 닿았습니다.

8월 제도 시행 앞두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잘 시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저희가 지금 다른 장기요양보험이나 가사·간병도우미 등 가정돌봄 사업하고도 연계를 하려고 그러고요.

지금 질문 주셨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조 윤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 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숙 위원 송파갑 박인숙 위원입니다.

장관님, 다른 분들이 혹시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신보건법에 대해서 아침에 누가 질의를 하셨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안 하셨습니다.

○박인숙 위원 안 하셨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박인숙 위원 그것 진짜 좀, 제가 많이 만나 보는데 만나 보는 사람마다 다 심각하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19대 때에는 이 위원회에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인권침해 이런 문제로 배경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5월부터 시행이 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박인숙 위원 금방 시행되는데 현장에서 난리를 하더라고요. 정신과 의사들이 자기네 환자도 보기도……

지금 정신과 의사가 굉장히 많이 모자라서 사실 정신과 의사가 저는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의대 정원을 한없이 늘릴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 제가 생각이 있기는 있는데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기네 환자도 보기 어려운데 다른 의사가 두 명이 와서 이 사람이 정말 입원해 있어야 되는지를 판정을 내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사들을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A라는 병원에 있는 환자를 판정을 하려면 B라는 병원의 의사가 오고 또 B는 C가 오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정말 심하게 일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뉴스에서 보면, 데이터가 맞는지 모르지만, SBS에서 얼마 전에 그런 뉴스를 해 가지고 이것은 정말 심각하구나, 숫자가 너무나 쇼킹해서…… 8만 명 중에 4만 명이 강제 퇴원을 해야 되고 그중의 50%가 조현병이고 30%가 알코올 중독이고 그런 사람이 다, 4만 명 중의 80%면 3만 2000명이 집에 가서 가족들이 갑자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5월 달에 이게 빨리 시행이 된다는데 난리가 나지 않을까,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부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2월 11일에 인터뷰 했더라고요, '절대로 재개정은 불가하다. 시작도 하기 전에 어떻게 고치냐'. 그러니까 시행령이라든가 디테일을 좀 보셔서, 법을 또다시 써서 통과시킬 수는 없지만 시행하는 데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이 문제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지금 저희가 다각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별로 민간 병원도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국립정신병원, 대학병원 단위로 정신과 의사들이 TF를 형성을 해서 이게 공공, 국가에서 해야 될 것을 민간 병원에 넘기는 것 아니냐 이런 아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국립정신병원의 정신과 의사 티오를 지금 더 확보를 하고 또 지역과 연계를 하고 이래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아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숙 위원 정신과 학회나 개원의들, 하여간 의사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시행방법이라도, 시행

규칙이라도 조금이라도 손을 보셔야지 그대로 하면……

이것도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뉴스에서 남양주의 의료진 6명이 750명의 정신장애인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한 인권침해를 받는 정신과 환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것 아닌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반이 퇴원해야 된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히 대책을 세울 거고요.

지금 저희가 계산한 것으로 보면 일인당 한 32명 정도의 환자를 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맞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숙 위원 제가 내일모레 토론회를 하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토론회를 하니까 거기에서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거라도 나오면 제가 건의를 할 테니까요. 잘 토론을 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위원님……

○박인숙 위원 차관님.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정신과 전문의들이 걱정하는 사안이 민간 쪽에 계시는 분이 공적 영역에 들어가 가지고 개입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물론 민간의 정신과 전문의들이 재판정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수가로 그것을 당연히 보상을 해 드리는 조치를 전제로 해서 민간 전문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요.

○박인숙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공적에서도 지금 할 수 있는 인원은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의는 이미 협의를 마쳐서 배정되는 공보의 정신과 전문의들은 전부 다 재판정에 투입을 하고 또 저희가 국립병원에 확보할 수 있는 추가 인력들을 지금 더 확보……

○박인숙 위원 잠깐, 다른 질의도 있어서, 내가 여러 가지 생각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충격적으로 한꺼번에 땡 해 가지고 이때 난리가 나지 않게 완충방법은 생각을 하시고, 제 토론회에서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숙 위원 그리고 짧게 한 말씀 드리는 게, 아까 보니까 공공의과대학을 만든다고, 계속 제가 이럴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계획에 또 있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있는 의과대학을, 제가 만날 얘기하지만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무 자르듯이 잘라지는 것은 아닌데 이게 복지부의 목적에 하나 들어가 있어서,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이것 그렇게 의과대학 하나 철커덕 만드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의대 중에 부실 의대 하나도 20년째 못 없애고 있는데 하나를 또 털커덕 만들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만날 답은 똑같으시니까……

그리고 재활병원 이것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거든요. 지금 어차피 법안 심사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장관님은 안 오시니까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재활 난민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고 그런 것은 이해는 하는데 재활이 중요하지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재활병원을 만들면 소아병원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종별을 자꾸 추가를 하다 보면 소아병원도 특이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러다 보면 자꾸 병원에 종별을 추가하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재활환자들이 갈 데 없어서 왔다 갔다 하면 뭐라 그럴까, 수가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병원에 재활 환자를 도와주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지 병원을 만드는 게, 이것 하나를 하면 다른…… 또 그러면 심장병원도 특이하거든요. 그러면 심장병원 만들어 달라, 저출산이니까 산부인과 없으니까 산부인과병원 만들어 달라, 종별로 자꾸 늘리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의사 그것도 그래요. 저는 한의사를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전 19대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정부에서도 규제와 면허가 항상 헷갈려서,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 되지만 면허라는 것은, 라이선스 이것은 자기 책임이 따르는 거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단은 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사는 병원, 한의사는 한의사 병원 그렇게 하면 되지 이것을 막 교차를 해 놓으면 감독권이랑 책임

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문제가 따르거든요.

제가 추가질의를 이것으로 하는 것으로, 답을 조금만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재활 난민 양산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또 다른 대책을 같이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좀……

○박인숙 위원 글쎄, 그런 것을 하면 되지 병원을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게 해결은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일단 재활 난민 양산 대책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기능에 따른 급성기, 회복기, 유지기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떻게 기능적으로 재배치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먼저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강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위원 자유한국당의 강석진입니다.

오전에 하려다가 못 했는데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방향이나 또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 마련을 위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고 해서 저도 아주 동의하고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다수 의견이 빠른 시행, 빨리 해야 된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많았고 민원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기는 한데 그 부분도 제대로 된 안이 나와서 제대로 한다면 빨리 하는 것도 아마 빨리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행을 했을 때 또 작은 문제더라도 정책을 시행해서 나타나게 될 때는 저항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작은 것들이라도 꼼꼼히 아주 제대로 된 검토를 하면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소득 쪽에 부과를 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되니까 새롭게 소득이 파악이 되는 어려운 계층, 일용직들 있지 않습니까? 건설일용직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분들에 대해서 현재는 어떻게 부과되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개편이 돼서 새롭게 소득이 파악될 때는 부과되는 대상의 숫자가 얼마나 되며 또 그게 어떻게, 불이익이 가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일용노동직에 대해서는, 일용노동직이 대개 한 80%가 아주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일용노동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아직은 부과를 안 하는 게 저희 원칙이고요.

이것에 대해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하는 문제 이런 게 우선 더 선행이 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소득 파악하는 게 어려운 문제이고 또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이 들어오는 시기하고 저희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시기가 또 달라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한 소득 파악이 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런 일용노동자들은 거의 면세점 이하의 소득층이거든요. 그런데 세금도 안 내는 사람들한테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석진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다 면세점 이하기 때문에 지금은 부과가 안 되고 있고 개편안이 되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 말씀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현재로서는 고려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석진 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는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강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133만 세대에 2조 1351억 원이거든요. 앞으로 개편됐을 때 적게 내는 분들은 고마워할 겁니다, 그렇지요? 적게 내게 되는 분들은 좋아하고 또 많이 내게 되는 분들은 아마 상당히 저항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럴 텐데, 많이 내게 되는 분들이 아무래도 체납을 한다든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렇게 할 텐데……

지금도 133만 세대에 2조 1351억 원이 체납되는 상황인데 혹시나 그럴 경우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여건이 안 된다든지 지역보험 가입자가 변경이 됐을 때 본인이 불이익을 본다고 생각하고 저항이 있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책들도 마련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지금 장기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하는 것을 적

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아동이나 임산부, 취약계층 이런 데에서 체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급여제한을 하지 않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실태는 대부분 이런 분들이 저소득, 아까 아주 고소득 중에서 말씀하신 악질 체납자도 있지만 대부분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납 보험료를 결손처리를 해 줄 건지, 또 있더라도 급여제한을 안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진 위원 지금도 체납액이 2조 1351억 원이나 되는데, 결손처리를 이렇게 적절하게 해도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거 제가 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체납액은 여태까지 결손으로 떨지 않고 누적한 체납액의 총액입니다. 그래서 연간 발생하는 체납액 숫자는 아니고요. 그게 훨씬 더 작은 규모가 누적해서 쌓이다 보니까 2조까지 쌓인 그런 내용이 되겠고.

체납으로 인해서, 물론 체납이 없이 운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저희가 무리하게 그런 징수를 통해서 저소득층에 부담이 부과되지 않도록 운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석진 위원 저소득층 체납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계층도 체납하는 경우 많잖아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강석진 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리 하는 그 기준은 제대로 정해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앞으로 그 기준을 정해서 결손처분을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강석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장관님, 오전 질의에서 제가 답변을 못 들어서 다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가 상위법 위배, 포괄적 위임 등에 위법, 위헌이라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 문제는 아까 한의약정책관이, 다시 한번……

○김순례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의약정책관이 말씀 안 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아니요, 양해를 해 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김순례 위원 아니요, 장관님이 답변하세요.

이걸 모르시면 안 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상위법 위반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순례 위원 예.

위반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거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검토를 하시겠다라는 답변을 주셨다면 현행 보건복지부 관련 법을 위반한 국민이 '나는 죄가 없다'고 법률적인 저항을 해도 복지부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류로 좀 보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이 53%에서 81%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 위원 그래서 제가 또 따져 봤지요.

그 대상이 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이 1274곳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건보료의 납부 기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500인 이상 사업장은 무려 2371곳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수치로 환산을 했을 때

는 81%가 아닌 50%밖에 되지 않는 실정으로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락된 1000여 곳은 결국 복지부의 판단으로 면제를 해 준 폭이 되고 있습니다. 각 기업별 면제 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왜 이 답변을 거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관님 설명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 답변을……

자료제출을 거부한 적이 없었는데……

○김순례 위원 저희 방에서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표적인 게 500인 이상의 사업장인데, 실제로 어린이들이, 영유아가 없는 경우 이런 등등입니다. 그런 경우를 판단을 해서……

○김순례 위원 좋습니다.

차관님,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지만 법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 제외를 허용하는 사례는 딱 세 가지입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시간상 저걸 다 읊지는 않겠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아닌 이유에 대한 제출을 구체적으로…… 지금 차관님께서는 일부를 말씀하신 거예요, 저 해당되는 사항 중에서.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3호에 해당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김순례 위원 그 외에 1호와 2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떳떳하게 저희 의원실로 그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직장맘들의 불만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있어도 그림의 떡이라는 말입니다. 시설이 좋다고 정평이 나 있는 국회 내에 있는 어린이집조차도 대기시간이 길게는 1년 정도 상회되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현행 직장어린이집의 유무만 따질 뿐 사업장 규모에 비해서 직장어린이집 수용 인원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질도 문제입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 1명당 1.3평 이상의 규모가 확보되어야만 하는 것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발표되어 있는 전문입니다. 그런데 의원실에서 조사를 해 보니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651곳 중에서 이것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51군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육이 아니라 사육입니다.

장관님,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게 워킹맘과 보육이 연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김순례 위원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가급적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그리고 어린이집이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직장 규모에 맞고 질 좋은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작은 데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보통 다른 어린이집의 수용 인원보다는 많습니다. 보통 한 70명 정도 이상 수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그런 어린이집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순례 위원 아까 차관님께서 답변 중에 3호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고요. 1호와 2호에 해당되는, 지금 저희 방에서 요청을 했지만 답변 거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로 검토 보고된 문건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 자료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승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위원 장관님, 창원SK병원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기동민 위원 어떤 병원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메르스 손실보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동민 위원 예.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도 전에 보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지금 문 닫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왜 문 닫았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제가 보고받기로는 창원SK병원이 다른 병원을 인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그 병원 자체가 메르스 때 저희가 손실보상을 한 병원입니다. 한 병원인데, 그 위치가 접근성도 떨어지고 이런 여러 문제가 있어서 아마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동민 위원 메르스 손실보상을 하셨다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손실을 일부 보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거 파악해 보세요.

실무자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5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그 당시 손실보상을 했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러면 권준욱 국장 나와 보세요.

그러면 거기 왜 망했어요?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입니다.

저희가 엄중한 국회 자리에서 확정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보건소를 통해서 간접 파악하기로는, 원장이 통화가 안 되기 때문에, 워낙 이 병원의 입지나 여러 상황상 메르스 이전부터 병상 가동률이 낮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얘기를 전언으로 들었습니다.

○기동민 위원 거기 잠깐 계세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메르스 발생 사태 당시에 거기에 삼성병원을 경유한 환자가 있었는데 얘기하지 않아서 '5층부터 7층까지 코호트 격리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갔는데, 그렇게 해서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안심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전체 병동을 다 폐쇄를 했어요.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예, 자진 전체 폐쇄했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렇지요? 자진해서 했지요?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예.

○기동민 위원 그때 창원 시민들 같은 경우도 벽에 대자보를 써서 '정말 고맙다. 최선을 다하자'라는 지지 대자보를 붙일 정도로 지역사회의 반응도 뜨거웠고요.

물론 폐업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저는 메르스 때문에 그렇다라고 단정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 필요해서 한 5억 정도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 받아 본 건 4개 병원 중에 1개 정도밖에 지원 안 했다 그러는데 그 자료는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사실관계는 나중에 확인을 하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정부를 믿고 그리고 지역사회의 어떤 공포 이런 부분들을 온당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몸을 던진 거잖아요. 그런데 병원은 폐업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 병원이 생긴 지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사실상. 경영에 어려움에 있었겠지요. 당연히 처음 하는 병원이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따뜻한 심정을 가진 정부라고 하면 이렇게 뛰어들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린, 그리고 뭔가 감동과 인간미를 느끼게 한 이런 병원 같은 경우에 정책적인 지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다, 폐업을 그냥 눈뜨고 보고만 있었어야 되는 거냐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저희가 사전에 폐업을 인지하지는 못했으며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자진 폐쇄한 4군데 중에서는 창원SK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메르스 손실보상 의료기관만 176개소를 저희가 손실보상 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인 의료기관의 폐업률이 1% 이상으로 일단 판단은 되는데, 그래서 그 폐업이 메르스로 인한 직접적인 것인지는 저희가 더 파악을 해 보겠고,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 인지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메르스로 인한 직접적인 폐업이라고는……

○기동민 위원 제가 재단해서 막 몰아붙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806만 원 때렸잖

아요?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예.

○기동민 위원 시행령의 한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메르스 사태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온몸을 다 던지고 병원의 운명을 건 병원은 망했습니다. 메르스의 진앙지고 전파자였던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과징금은 806만 원이에요. 의사들이 느끼는 박탈감들이나 이걸 보도를 통해서 본 시민들의 박탈감은 어떠하겠어요?

장관님 어떻겠어요?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삼성병원에는 지금 현재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은 시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병원의 규모가 클수록 역진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이건 법하고 시행령을 고쳐서 조만간 합리적인 과징금을 물도록 고쳐 나갈 거고요.

이번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병원에는 607억인가 손실보상은 저희가 안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607억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동민 위원 장관님, 제가 아까 오전에 필요 이상으로 목소리를 높였던 것도 어떤 이유냐면 저는 정부가 시민의 상식과 합리적인 기준 그리고 일관성 이런 부분들을 잘 유지하면서 정부가 내리는 정책이 그리고 방침이 대다수 시민들을 좌절시키는 게 아니라 대다수 시민들에게 '아, 그래도 정부가 시민 편에서 일하는구나'…… '잘못된 공직자의 처신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를 앞세워서 보호막을 치고 있구나, 제 식구를 감싸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과감한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구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은 서로 지혜를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런 접근법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병원이 폐업하게 되는 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대단히 상징적이게도 관계 당국에서는 '5층에서 7층까지만 폐쇄하면 좋겠다', 그런데 지역사회와 전 국민의 메르스에 대한 공포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줄여 내기 위해서 병원 전체를 격리했다고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병원이 지금 폐업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삼성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메르스의 진앙지에 대한 과징금은 806만 원이에요. 몸을 던져서 온몸으로 메르스를 방어한,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망했어요. 삼성, 806만 원 받고 끝나는 문제예요. 물론 그 이후에 연쇄적인 파생 효과가 있겠지요. 이런 걸 시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금은 신청한 것, 아마 800억 이상을 신청한 걸로 봤지만…… 손실보상금이 저희가 계산한 건 607억이지만 이번에는 한 푼도 지급을 안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복지부에서도 국민의 편에 서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런 자세로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저는 장관님을 보좌하는 실국장님들도,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에 대한 이런 어떤 지적사항이 나가면 그냥 깨끗하게 현 시행령의 문제, 법령의 문제, 시민 상식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러이러한 후속조치들이 있다. 그리고 국회와 잘 상의해서 대폭 보강하겠다. 좀 시간을 갖고 기다려 달라' 이런 식으로 내보내면 국민들이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읽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진 폐쇄했다는 이런 병원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애정이 있다면 사정이 무엇일까, 지역 보건소에만 맡겨 두는 게 아니라 관계자가 직접 만나서…… 아, 사람을 왜 못 찾습니까? 보건복지부 국장, 과장, 이런 분들이 직접 만나고 싶다고 원장한테 연락한다면, 여러 요로를 통해서 연락한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문제이지요. 그래서 실제 어려웠던 부분들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도는 무엇인지, 이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인지 이런 사례들을 진지하게 가슴을 열고 다가서면 그분들도 '정부가 우리를 그냥 버려두고, 힘들 때 이용하고 그 일 끝나면 방치하고 이런 게 아니구나'라고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일 좀 하자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알겠습니다.

창원SK는 저도 늦게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가 인지를 못 했던 병원이고요. 사실 여기는 저희가 손실보상 할 때도 원래 진료수입 감소분보다도, 자진 전체 폐쇄를 했기 때문에, 우리 권고보다도 더 확대해서 폐쇄를 했기 때문에 보상금을 그것보다 더 올려 갖고 지급한 병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예, 장관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 장관님, 문형표 이사장 거취와 관련해서 지금 권미혁 위원께 준 자료를 보면 장관이 직접 해임건의를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아까 왜 장관이 직접 해임건의를 안 하느냐고 제가 여쭤 보니 '이사회가 요청을 해야 된다'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장관이 직접 해임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안 하시는 거지요? 잘 모르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검토했던 법리에서는 그게 직접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김상희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자료에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복지부에서 준 자료예요. 저희 방에서도 이 자료 비슷한 걸 받았습니다.

직접 해임건의 하지 않는 이유가 법상으로는 '이사장으로서의 의무와 책임,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해임건의 할 수 있으므로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이것 황당한 얘기예요. 이게 법률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형표 이사장의 경우에는 이사장으로서 의무와 책임,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를 넘어서서? 이런 상황인데도 왜 장관이 해임건의를 안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해임건의 하십시오. 해임건의 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법률 검토……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장관이 하시라고요, 자꾸 이사회에다 떠넘기지 마시고. 이사회는 이사회대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써 놨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묻지 않겠습니다.

장관이 직접 해임건의를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안 하신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장관이 하세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히 사퇴해야 될 사안인데 촉구를 해도 안 한다'. 그러면 해임건의를 해야지요. 해임건의 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저희가 법을 다시 한번……

○김상희 위원 어쩌면 그렇게 염치 없고 무책임합니까?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김상희 위원 무책임한 거지요. 어떻게 무책임한 게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인사 사항인데 그건 정확하게 법적인 걸 따져 보고……

○김상희 위원 아니, 정확하게 법적으로 지금 장관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시는 겁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공운법을 운영하는 부처하고……

○김상희 위원 장관이 직접 해임건의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확인해 보고……

○김상희 위원 그러면 하는 거지요?

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리고 기동민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부가 이렇게 정말 국민들 의식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삼성병원에 과징금 800만 원 부과한 것, 이 부분은 지금 계속적으로 현행 의료법에 정해진 기준 자체가 잘못돼서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과징금 규정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 과징금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게……

○김상희 위원 당장 이것 바꾸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작년에 이것을 저희가 법 고치려고 법제처하고……

○김상희 위원 아니, 고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법제처하고 개선 권고안을 만들어서 같이 상의를 해서 거의 진행되다가 법제처에서 다시 그걸 위드드로(withdraw)하는 바람에……

○김상희 위원 아니, 더 변명하지 마시고요. 이것 바꾸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변명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김상희 위원 바꾸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고칠 겁니다, 이건.

○김상희 위원 바꾸시고, 차병원 제대혈 불법 시술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지금 복지부가 그냥 미온적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제대혈 불법 시술과 관련해서도 보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차병원에 대해서 2014년에 부여한 국가지정 기증제대혈은행 지위를 박탈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건 취소시켰습니다.

○김상희 위원 지원한 예산을 환수할 방침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김상희 위원 추가적인 징계나 행정조치는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금 경찰 수사 중이고요, 저희가 행정제재는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해서 자격정지 1개월을 했고요. 지금 제대혈법이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분당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양승조 위원장, 인재근 간사와 사회교대)

○김상희 위원 그런데 현재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혈위원회에 그 관리업무, 심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강제성이 없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금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말하자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지요. 사실 강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건데, 복지부가 지금 이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지적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이 문제는 제대혈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심사나 평가 계획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리고 지금 의료인만 처벌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제대혈을 불법 투여받은 차 회장 일가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려운 상태지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금 오히려 그것은 더 벌이 큽니다. 그래서 제대혈 매매행위 교사·알선·방조 혐의는……

○김상희 위원 아니아니, 이것 투여받은 환자의 경우에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래서 지금 차광렬 회장 가택 수색도 경찰에서 했고요. 그래서 차광렬 회장 일가에 대해서는 제대혈 매매행위 교사·알선·방조 혐의로 지금 수사 중에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큽니다. 5년 이하 징역 내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여기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실질적인 원장이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런 처벌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시술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처벌 자체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맞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 부분도 사실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것도 저희가 이번에 제대혈종합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불법 이용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전반적인 관련 법령 재정비를 국회와 함께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

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인재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 위원 장관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께서 제대혈 관련해서 질문했는데요, 저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제대혈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 갖고 평가계획을 강화하겠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보건복지부가 관리감독기관인데 관리감독기관이 실태조사를 해 갖고 전면적으로 처분을 하고, 처분뿐만이 아닙니다. 다음에 어떻게 고쳐야 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즉각적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제대혈 관련해 갖고 오늘 뭐가 나올 줄 알았어요. 질병관리본부의 업무보고 6쪽에 의하면,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 인프라 구축한다고 그러면서 줄기세포 자원을 확대한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대혈과 관련해서만 제가 좀 더 짚겠는데요.

지금 줄기세포가 가장 많이 들어 있는 게 제대혈이에요. 그래서 공공적인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 민간 영역에 들어 있는 제대혈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하신 차그 사태가 일어난 거거든요.

2013년도하고 2015년도에 경찰청에서 이미 불법 제대혈 유통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것을 복지부는 미리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6년 3월 달에는 줄기세포를 갖다가 제대혈은행에서 허가도 받지 않았으면서도 불법 제조까지 했어요. 제조해 갖고 그 제조한 대표를 입건까지 해 갖고 복지부에 이미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병원 오너가 제대혈은행을 운영하면서 연구목적이 아닌 일가의 보신으로 사용한 것이 지금 사회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강력하게 뭐 하겠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조사가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자료화면 좀 봐 주세요.

제대혈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공여 제대혈이라는 그런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대혈법 도입하고 난 다음에 가족 제대혈 안으로 들어갔는데, 가족 제대혈은 가족이 맡겨 갖고 유지 관리하는 비용을 가족이 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이 필요할 때 그것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증 제대혈은 무료로 보관하기 때문에 사용 권한이 은행에 있어요. 그런데 공여 제대혈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굉장히 낮게 지불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이용권은 있지만 폐기하거나 이런 관리의 권한, 처분권한은 은행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여 제대혈 이것을 맡아서 하는 기관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여 제대혈과 관련된 전수조사, 점검 빨리 하시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PPT를 보시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신규 제대혈을 자꾸 확보를 해야지 거기에서 돈을 받아 갖고 은행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데, 제대혈은행에 신규 제대혈 등록이 지금 없어요.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다섯 군데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신규 제대혈을 한 건도 받지 못한 업체예요. 그리고 약간 베이지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2016년도에 제대혈을 확보하지 못한 곳으로 벌써 두 곳이나 있어요. 확보를 못 하면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유지 관리가 안 되고, 안 되면 재정압박이 일어나고 재정압박이 일어나면 폐기되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 폐기시키지 않고 그다음에 그것을 불법 유통시켜서 돈을 벌고 싶은 유혹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대혈은행이 이렇게 재정압박으로 운영을 포기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회적 이슈화가 될 텐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뭔지 그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 것 있으시면 지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원래 가족 제대혈 은행이 운영을 포기할 경우에는 다른 가족 제대혈 은행으로 이관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저는 가족 제대혈이 가족 제대혈로 가는 것보다는 이게 만료가 되면 기증 제대혈로 관리 전환을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그 회사에서 이쪽 주고 그리고 내가 폐기했다 이렇게 되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이것을 기증 제대혈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요.

이것 말고도 제대혈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자꾸 지적을 하면 지금 민간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대혈에 대한 이 부분이 위축될까 봐 제가 지적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나는 그런 의미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서 민간도 활성화되고 그리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관리감독을 했어야 돼요. 그것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고 그냥 수사 의뢰해 놓고 '나는 내 책임 다 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무슨 처분을 강화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시스템이 안 돼 갖고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만들어 갖고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하고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또 질문할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종합관리대책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아니, 사건이 몇 번씩, 몇 년 전부터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대책을 마련한다 마련한다 하면서도 지금 전수조사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대답하시는 게 무슨 전문가 의견…… 전문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 알아요. 그 평가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안 되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설명을 해 달라고요. 만들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디테일하게 다음에 또 지적할 거니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인재근 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 장재혁 국장님, 일어나 주세요.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작년 8월 달에 연금정책국장으로 당연직 이사가 된 후에 회의 참석을 얼마나 했냐고 물어봤더니 한 번 참석했다고 그랬지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예.

○남인순 위원 사실입니까? 언제 하셨어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제가 날짜는 잘……

○남인순 위원 하시기는 하셨어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인순 위원 제가 들은 얘기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회의에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 못 해요? 지금 연금공단이 얼마나 사회적 이슈가 되고 그런데 기억이 안 납니까?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아니, 회의를 여러 번 했었는데……

○남인순 위원 여섯 번 있었거든요, 국장이 오시고 난 다음에. 여섯 번 중에 서면으로 두 번 했고 나머지 불참했어요. 그 이전에 복지부를 대신해서 나가는 이사 중에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회의에 참석한 적 없습니다, 제가 다 조사를 해 봤는데.

그러면서 아까 답변이 그게 뭡니까? 얼마나 연금공단에 대해서 알기에 지금 문형표 이사장 해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떳떳하게 합니까, 제대로 회의에 참석도 안 하신 분이?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아니, 그것은 아까……

○남인순 위원 더구나 장관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퇴하라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으면 보건복지부 간부가 보건복지부 수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자진사퇴하는 것이 가장 순리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남인순 위원 됐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시고요.

도대체 국장님이 어떻게 장관님한테 보고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제가 이사 중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소비자단체 소속 이사들이 이사장 해임을 제시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잘 모르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1월 24일 날 이사회에서 3개 단체가 직접 발언

을 통해서 해임을 얘기했습니다. 보니까 연금국장이 제대로 보고도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본인이 회의를 몇 번 참여했는지 기억도 못 하고, 장관님한테 사실 여부도 제대로 알려 주지도 못하고, 도대체 제대로 일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공단 이사회 멤버 중에서 노동계 두 명하고 그다음에 소비자연맹 그 말씀은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사회 때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남인순 위원 아니, 그 보고를 아까부터 왜…… 위원들이 질문하면 그 질문에 답을 하라고요. 3개의 단체가 다 직접 참여해서 발언했어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참여해서 발언을 했는데, 그 후에 발의를 한 게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남인순 위원 아까 얘기한 취지가 뭡니까? 그런 의사를 갖고 있다, 해임에 대한 의사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예.

○남인순 위원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파견된 사람이 하면 4명이 충족이 되어서 상정할 수 있다 그걸 물어본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그것을 서면으로……

○남인순 위원 무슨 뜻인지 모릅니까?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서면으로 발의를 해야 됩니다.

○남인순 위원 서면으로 해임되냐고……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서면으로 해임 목적을 명시를 해서 발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남인순 위원 아니요, 제가 서면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사가 있으니까 복지부에서 파견된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갖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본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그러니까 그 발의는 저도 할 수 있고 노동계 위원이든 누구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남인순 위원 됐습니다.

4명이 동의해야 상정이 되는 것에 대해 물어본 겁니다. 무슨 맥락인지 알고 좀 답변을 하세요.

장관님, 심평원장 임명, 언제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심평원장 임명은 제가 하는 것 아닙니다.

○남인순 위원 언제 그러면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심평원장은 이번주 임추위에서 면접을 해 가지고 두 명을 저희 복지부에 올려 보냈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올려 보냈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요. 지금 현재 한 분으로 거론되고 있는 전 충북대학병원 김승택 원장 같은 경우는 장관님하고 서울고하고 서울의대 동문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잘 모르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고등학교는 서울고등학교 아닐 겁니다.

○남인순 위원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고등학교 선후배면 제가 알지요.

○남인순 위원 어쨌든 지금 장관님, 질병관리본부장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 심평원장, 사실 이게 보건행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저기인데요. 사실은 다 의사 출신이고 서울대 의사 출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알고는 계시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어쨌든 이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공공기관장들을 서울대 의대가 독식을 하게 되면 의료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보건의료 정책 수립이나 여러 가지 집행에 있어서 어떤 한쪽으로 쏠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여론도 잘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다 서울대 의대 출신이거든요. 6개 단위가 다 서울대 의대 출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전달해 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인순 위원 그리고 지금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릴 텐데, 이 부분은 지금 하면 안 되고요. 복지부가 계속 고집을 피우고 계신데 이게 되면, 최하 원칙이 무너지게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조제약 택배배송이라든지 의약품 인터넷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단체, 단위들이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약사회, 대한약사회, 의사협회 등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화상판매기 도입을 법안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것은 백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법안 심의나 의결은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결정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인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인재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의당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소하 위원 질문드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야기 나와서요.

삼성병원 문제의 과징금 807만 원 사건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대단히 증폭시키고 연계시킨 사건이에요. 1년 매출이 1조 원이 넘는 메이저 중의 메이저 병원에 807만 원, 메르스 전파의 진원지가 되었던 그 부분에 이러한 과징금을 내린, 물론 현행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그러한 뜻을 전해야 할 삼성이 행정소송 한다고 그러대요, 800억인가 1000억 손해봤다고. 이것이 지금까지의 삼성의 모습입니다. 정확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처벌 강화 조항 만들겠다고 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윤소하 위원 분명히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소송하겠다는 얘기는 아직은 저희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윤소하 위원 그렇게 나왔습니다.

동료 위원님이시고 그런데 자리를 떠서 말씀드립니다. 박인숙 위원님과 약간 견해가 저는 다릅니다. 국립대 종합병원의 중요성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문제를 질의합니다.

작년 9월 말 발생했던 민건이 사건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윤소하 위원 두 살짜리 아이가 병원을 방문했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열두 곳의 병원을 전전하다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었는데, 그때 아이가 전북대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이기도 하지요—여기에 처음 방문했다가 전원 의뢰를 받은 전남대병원, 여기는 또 권역외상센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윤소하 위원 모든 병원이 문제겠지만 지역거점병원, 그것도 국립대병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가장 황당한 것이 이 사건 발생하고 보건복지부가 지정 취소, 보조금 중단 결정했지요?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렇습니다.

○윤소하 위원 그리고 6개월 이후에 잘하면 재지정 여부 결정한다……

국립대병원에서 두 살짜리 아이가 병원을 전전하다가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벌이 지정 취소, 보조금 중단입니다. 이것만이 능사입니까? 이게 말이 되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차움병원, 김영재의원 그다음에 제일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는 데가 어디 병원이에요, 장관님께서 계셨던 곳?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서울대병원이요?

○윤소하 위원 예.

서울대병원뿐만 아니라 경북대병원도 가관입니다. 지역거점병원인데 대구·경북지역 종합병원 중 하위권 기록했고요. 심지어 정치활동 금지와 집단행위 금지라는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의 규정 변경까지 했던 부분이 경북대병원이었어요. 비정규직 문제로, 해고 문제로 해 가지고 지역을 아주 들끓게 만들었고 그러면서도 무조건적 확장에만 혈안이 되어 가지고 제3병원 건립을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현 병원장이 연임을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국립대학교의 병원을 교육부에 맡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각지대예요. 물론 교육, 수련병원이라는 이유로 교육부의 소관 부처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점병원이고 가장 중요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국립대병원이 왜 교육부에 가 있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행정 관리감독에 아무런 것을 미치지 못하는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야 돼요?

저는 이것이 부처 간의 직제 편제를 떠나서 지금 이 시기에 업무를 이관해야 된다, 이것을 전 작업을 지금부터 해야 되고 공론화를 할 때가 이미 됐다, 그래야만 지역거점병원이고 그리고 취약지구인 각 지역마다 골고루 지역의 국민들을 향한 공공의료 확보가 된다……

그 부분에 같이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몇 번 논의가 됐던 내용인데도 그때마다 결국 국립대병원 자체에서 아마 반대를 해 가지고 일이 성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에도 분명히 타당한 분야가 있고, 의료라는 측면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지적해 주신 대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교육부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소하 위원 한 가지 조금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대학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대학병원에서 반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병원에서도 반대합니다.

○윤소하 위원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실 사태와 불행한 사태가 국립대병원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부분으로 이관하는 것을, 그들 병원 스스로가 잘하면 몰라도 잘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많이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우리가 노력을 해서…… 국민을 생각해야 되는 대학병원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교육부에 있을 때보다 복지부로 갔을 때 뭔가 대학병원에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있거나 이런 것을 위원님이 같이 좀 도와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윤소하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드립시다.

○위원장대리 인재근 윤소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위원 장관님께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산 수요가 많은 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출산율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산후조리원이라는 게 처음부터 공공으로 시작을 했으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지금 대부분 민간산후조리원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거기가 실제 입실률도 한 65%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더 확대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지금도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을 저희가 오히려 권장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최도자 위원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약 46%이며, 이용료는 신생아 한 명과 산모가 2주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은 평균적으로 한 300만 원, 지방은 2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출산을 하면 그렇지 않아도 이래저래 돈 드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비 200만~300만 원은 산모로서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기 마련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방의 경우에는 인근에 산후조리원이 없으면 원정 산후조리를 떠나야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모자보건법은 자치단체장이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설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고 싶어도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에서 설치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실제 설치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는 23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지난 2일에 제가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기준을 법률로 상향조정하고 설치 기준을 낮추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 개정안에는 민간산후조리원의 경영 안정

을 위해서 공급이 수요의 40% 이하인 지역으로만 제한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리고 분만취약지 지원 대책을 강화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이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법안 심사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 주수에 비해 작게 태어난 저신장 소아를 부당경량아라고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장이 더딘 것으로 부모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걱정과 근심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인재근 간사, 양승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태어난 뒤에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통한 치료를 하는데 호르몬제 비용은 연간 수백만 원이 필요하고, 부당경량아 가정에는 이 많은 비용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다행히 요양급여의 적용대상이지만 기준에 문제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체중과 신장이 기준인데 만 4세 이후에는 체중 기준만 있고 신장 기준은 없습니다. 아무리 작게 성장한 아이라도 조금이라도 기준 체중보다 더 나가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 문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답변을……

○최도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답해 주시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도 이 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체중에 대한 통계는 있는데 신장에 대한 통계가 없어 가지고 3% 미만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지금 이거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해외 사례나 관계 학회 또 협회들하고 이것을 좀 다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무슨 방법이 있는지 이것을 확인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장관님, 그래서 출생 당시의 신장 기록을 기록·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의료법에 따른 출생증명서 양식을 변경하고 부당경량아의 기준표를 만들면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출생증명서 양식 개정하는 거야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 통계자료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것부터 시작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회하고 협의를 해서 체중을 구하는 방법, 통계자료를 확보하는 것, 이것을 먼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체중 초과로 급여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모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분들의 고통을 좀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승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간사이신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복지부가 발표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어떤 불합리성과 불공정성을 일부 개선하는 그런 개편안에 그쳤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계속 국회에서 제기했던 것은 지역과 직장으로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요구도 전혀 비껴갔고, 어쨌든 최악수만을 피한 최약수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여러 가지 일원화하기에는 모든 여건상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놔뒀고, 소득파악률이 충분하다면 일원화로 갈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 또 여러 계층 또 국민 수용성 이런 것들을 같이 감안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만든 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쨌든 지금 불공정성 문제도 일부 개선됐지만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직장가입자로 있다가 퇴직 후에 지역가입자로 전

환됐을 때 여전히 보험료가 인상되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고 또 고소득·재산 가진 사람들이 지역가입자로 해서 피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그냥 직장가입자 뒤에 숨어 있다가 이제 저소득 직장가입자 자격을 가짜로, 위장으로 취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농촌에 사는 부모가 자식이 직장에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이런 것에 따라서 보험료를 내거나 내지 않게 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여전히 상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답변은 그렇고요.

이번 부과체계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재원이 매년 얼마 정도나 더 추정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1단계에서는 한 98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김광수 위원 완료됐을 때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다 완료됐을 때는 한 2조 3000억 정도 더 드는 것으로……

○김광수 위원 2조 3000억, 그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재원조달은 1단계는 지금 재원을 이용해서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2단계, 3단계로 가면서 소득파악률을 더 높이고 또 지출은 효율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건보공단 산하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고서를 봤어요. 보고서에 뜬금없는 주장이 나와 있어요. 담배에 붙이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술과 주식투자 배당금에 붙여서 수익구조를 넓혀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지금 담배로 인한 건강증진기금을 이용을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술에 대해서는 아직은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럴 계획이 없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김광수 위원 담배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이 지금 한 값당 한 841원 정도 되더라고요. 거의 20% 가까이 되는데, 사실 담배 같은 경우도 흡연율이 인상 전하고 인상 후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인상 전에 24.2%, 인상 후에 22.6%까지 다시 올라 버렸단 말이지요.

그리고 문제는 저소득층이 많이 피워요. 담배가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이 거의 한 47.5%가 흡연을 하고 있고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은—남성 기준으로—36.6%,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비판받는 것은 꼼수증세다, 결국 서민들한테 세금폭탄이 돌아왔다, 이런 국민적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건강증진부담금 걷어 가지고 금연 부분들에 거의 안 썼잖아요. 통계 보니까 5%도 못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지금 술까지 붙이겠다,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꼼수증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사실 저희 복지부에서는 연구한 자료 자체를 저희가 보지를 못했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술에 대한 과세 문제는 제기된 적이 없는데 왜 이게 언론에 나왔는지 그게 오히려 궁금할 정도입니다.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고려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건강보험의 기본은 돈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고부담을 지우고 서민들한테는 경감시켜 주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담뱃세에 붙이는 건강증진부담금도 같은 경우인데 이렇게 해서 실제 증세를 하겠다, 이게 서민증세란 말이지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근본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근 위원 장관님께 농어촌 응급실 간호사 파견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료선진국이라고 자처하면서 의료수출을 한다는 말은 하지만 정작 의료취약 지역인 농어촌에서는 응급의료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대안으로 대도시 거점병원에서 농어촌 응급실에 간호사를 파견하는 제도를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 응급의료기관 간호 인력 양극화 때문에 인력을 파견할 거점병원조차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급한 불을 끌 수는 있겠지만 정부의 대안도 근본대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료 현장의 비판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한다면 당장 급여 몇 푼 더 주는 일시적인 정책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도 저희가 일단 시작은 한 것이라서, 우선 파견이 가능하면서 참여를 요청한 병원을 우선적으로 해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저희가 16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16년에 8명이었던 게 올해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18명으로 일단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곧 파견을 할 예정이고요.

이것 외에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간호사 수급 문제 해결, 이런 근본적인 문제도 역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근 위원 그다음에는 특화된 보험자 병원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 하나 뿐인 보험자 병원인 일산병원은 그동안 적정 수가 자료 생산과 정부 정책의 시범사업 등의 모델병원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술의 발달과 급격한 인구고령화 등 건강보험을 둘러싼 의료환경 및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일산병원만으로는 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인 의료비 지출과 각종 노인성질환, 만성질환에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보험자 병원이 추가로 건립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주장도 많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에서 특히 재활이나 요양 기능을 갖춘 이런 특화된 보험병원 같은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제시한 적이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건보공단의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역할에 대한 것 또 사회적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그 결과가 이런 보험자 병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 실행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물론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고 기재부의 예타도 거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금방은 진행을 못 하더라도 필요성만 있다고 되면 다시 설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9일 '의료방사선 직업적 피폭량 통계연보'를 발간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방사선 관계 종사자들의 연평균 피폭량이 0.39mSv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1년 0.56mSv에 비해서 매년 조금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본 독일 영국 등의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에는 다소 높은 수준의 피폭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의료방사선의 직업적 피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당연히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2011년 대비 2015년에 감소는 했지만 유럽이나 선진국 수준에 비하면 아직도 높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의료기관의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도 시행하고 있고, 안전가이드라인을 개발해서 배포하고 있고, 또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서 피폭량을 낮추는 것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작업자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량도 같이 저희가 낮추는 작업을 올해 아마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재근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승조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셔서 3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차 질의 시간은 간사 간에 협의한 대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혁 위원 장관님, 제가 2월 10일 날 '송파세 모녀 3주기, 복지 사각지대 피해 당사자 증언대회'를 개최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당사자들로부터 뭐가 진짜 빈곤 문제인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면 50대의 어떤 사람은 당뇨병 환자인데 2000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급여를 받다가 2014년에 수급자에서 탈락했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왕래를 거의 하지 않고 있던 딸이 취업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해서 그런데요. 딸은 결혼 당시 보고 마지막…… 사실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탈락을 하게 된 거지요.

실제로 요즘 부모의 노후를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사람들이 보통 어떤 대답을 많이 할까요? 가족 책임이라는 응답이 2002년에는 70.7%에서 2013년에는 32.7%로 절반 이상 감소하고, 노후 대비가 가족·정부·사회 공동 책임이라는 응답이 거의 18.2%에서 40.3%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양의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변하고 있는데, 특히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 폐지나 완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부양의무자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던 것이고, 저희가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일부 부양의무제를 폐지했고, 그다음에 기준도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제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에는 들어가는 재정 규모가 거의 7조가 넘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점진적인 보완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올해 저희가 맞춤형 급여 개편 2주년을 맞아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하고, 중장기 개선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7월까지 수립할 텐데, 수립할 때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제도개선 할 수 있는지, 기준을 어떻게 더 완화할 수 있는지 또 급여별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할지를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7조 원 얘기하셨는데, 15년 7월에 맞춤형 급여 도입하면서 교육급여에 한해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했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권미혁 위원 그때 복지부에서 교육급여 선정을 좀 완화하면 수급 대상자가 2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확대될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수급자가 40만 명 정도로 확대됐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권미혁 위원 그러니까 만약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할 경우에 94만 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신규로 유입돼서 7조 정도 든다는 건데 이 부분도 이렇게 많이 도입이 안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어려우면 수급자들이 탈수급 시 가장 필요로 하는 의료급여 먼저 폐지하고, 순차적으로 주거나 생계급여 순으로 폐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번에 제가 질문을, 이것 관련해서 수급자 선정 기준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차차 드리도록 하겠고요.

간단하게 제가 또 2월 2일 날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주 40시간 근무제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어요. 거기 보니까 생활지도원들이 근무표를 작성하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중증장애인 4.7명당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월 40시간 범위 내에서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준수하면서 지키게 되면 작성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생활지도원 근무시간이 줄어드니까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 수준이 저하되고 안전 문제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결국 인력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활지도원의 인력 배치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2교대를 3교대로 한다든지 시간외수당 40시간 확대하든지 이런 문제는 고민이 필요하고, 특히 시간외수당 신청서류 간소화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어요.

재미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근무표를 작성했더라고요. 스스로 연구해서 근무표를 쉽게 작성하는 법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시연하는 자리였는데 굉장히 큰 자리에서 2시간 만에 신청자가 다 마감이 될 정도로 스스로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근무표를 작성하기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개발해서 쓰고 있는데 이런 생활지도원 시간외수당 신청서류도 좀 간소화하게 해 주시고, 관련 지침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 부분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고, 복지부에서 해결해야 될 숙제들 중의 하나입니다. 종사자 업무 부담 완화 또 서비스 질 제고, 안전관리 강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중증이나 영유아 장애인이 4.7명당 2명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런 것의 어려움을 알아서 상향 조정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다만 시간외수당 현실화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의 문제가 있고 또 다른 시설들하고의 형평성 이런 것도 좀 보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 확인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지문인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신체적 특성상 쓰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서류로 대체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주신 의견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서류를 좀 간소화하고 표준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동민 위원 뒤에 앉아 계시는 실국장님들 5분의 4는 저하고 같이 일하신 분들이잖아요. 김근태 장관이 국민연금 지키려고 경제부처와 얼마나 모질게 싸우고 그런 것을 다 경험했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저는 공직사회가 국민들을 대하는 최소한의 염치와 예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형표 전 장관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공직 처음 들어섰을 때부터…… 말을 좀 참겠습니다.

하여튼 차관님, 정치권에서요 기소가 되면 당원권을 정지합니다. 그리고 1심 재판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제명을 하기도 하고 복권을 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정치권이 그렇게 합니다. 헌법과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 변화의 반영이고 산물인 것이지 않습니까? 화석화된 그런 조항, 문건이 아닌 거잖아요, 시민의 상식에 기반해야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화석화된 그런 법조문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법령을 고치든지 시행령을 고치든지 국회와 상의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상식인 거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필요한 규정 개정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 권미혁 위원님 요청자료에 이사장 거취 관련해서 법률검토 네 가지를 주셨는데 당연퇴직은 해당되지 않고, 자진사퇴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놔두고, 그다음에 이사회 요청 시 장관이 해임을 건의하는 게 가능하지만 이사회가 결정해야 될 사안이다, 이사들이 각자 판단해서 이사회에서 의결되어야 하므로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이것이 맞는 판단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어떤 복잡한 정치적 사건들이 연상되어서 그런 보수적인 해석 혹은 아주 경직된 해석을 내놓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가고 있고, 이사회가 책임 있는 판단들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사회가 판단해야 되는 문제라서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그러면 보건복지부는 상급 기관으로서 산하기관이 제대로 된 국민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할 때 그냥 방치하는 것이 능사입니까?

차관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이사회에서의 결정을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례를 한 번 만든다면, 물론 이 건의 경우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다른 또 여기 공단의 이사회라는 것이 많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당연히 그런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읽혀질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것 옳기 때문에 밀어붙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다만 관리·감독 기관이 이렇게 유체이탈 화법을 써서 '산하기관 이사회가 결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사장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사진들이 어떤 동력이 생겨서 회의 소집을 해 가지고 해임 건의를 하겠습니까? 복지부가 책임 있게 판단하셔야지요.

그래서 이사진들 어떤 식으로 접촉을 하시든지 간에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책임 있는 결정을 해 주시라고 요청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방관하시렵니까? 두 달 다 되어 갑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하여간 이사들하고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 상의는 해 보겠고요. 저희도 법률적인 자문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는데 사정변경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고, 그런 시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장관이 직접 해임건의 요건에 맞지 않다 하면 법상 이사장으로서의 의무와 책임,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해임건의를 할 수 있으므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국어를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것은 의무를 해태했을 경우에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동민 위원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런데 본인이 자의로 해태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런 관계가 좀 불분명해서…… 사실은 이것도 저희가 좀 자문을 받은 결과로는 여러 가지 또 쟁송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저는 전문가의 식견 그리고 법률 문제와 관련해서 법인에게 의뢰해서 해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무책임한 거예요. 가장 전문가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책임지고 판단하기보다 걸핏하면 용역 내려보내 주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여러분들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해당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여러분만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생소한 문제와 생경한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조언과 방침을 의뢰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 상식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산하기관이 제대로 된 국민에 대한 대국민 봉사를 하고 있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한 상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이사회하고도 접촉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제가 야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야유하면 되게 기분 나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는 어떻게 하고 이것은 또 규정 따르느냐, 이렇게 하면 되게 기분 나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제발 두 달이 다 되어 가는 사안들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동안 얘기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검토해 주십시오.

이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자신의 문제라도 이렇게 처리를 해 줬을까 하는 그런 회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중한 것은 좋지만 자칫 내 식구 감싸고 법령과 제도를 핑계 삼아서 공직사회가 더욱더 불신으로 국민들에게 몰려가는 그런 상황들을 저는 더 이상 연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장관님, 차관님, 뒤에 계신 실국장님들께서 책임 있게 결정하고 판단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내일 한 번 더 토론할 테니까 밤샘 토론을 하시든 아니면 국민연금공단 이사들과 어떻게 개별 접촉을 하시든지 간에 의견들을 갖고, 내일 두 번째와 세 번째에 관련된 책임 있는 장관님과 차관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기동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희 위원 장관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는 3단계로 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토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보면, 지금 개편안에 보면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가 1만 71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3단계가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3단계,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가입자들의 최저보험료가 얼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삼천……

○김상희 위원 3590원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김상희 위원 3590원입니다. 지역가입자 중에서 1만 7120원 미만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가 지금 현재 133만 세대입니다. 이들 중에서 6개월 이상 현재 체납하고 있는 세대가 25만 세대, 한 20%에 이릅니다. 그만큼 저소득층은 어렵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김상희 위원 지금 지역가입자들이 3590원인이 최저보험료도 못 내서 체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1만 7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이 매달 나가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이것을 한 것은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1만 7000원인데 이것을 그대로 적용한 거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그것은 조금만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저보험료 1만 7000원, 또는 1단계에서 1만 3000원 이것은 지금 3500원 내시고 있는 분을 올려서 1만 3000원, 1만 7000원을 적용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최저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은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지 않고, 다만 4만 8000원, 5만 원 이상 이렇게 내고 계신 분들을 깎아 줄 때 밑으로 내려가는 한계를 정한 것이 1만 7000원, 1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많이 내고 계시다가 더 내려갈 때 직장가입자의 평균보다 더 내려가게 깎아 주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상한을 정한 겁니다.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최저보험료가 359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오르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김상희 위원 다 감면이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100% 감면입니다.

○김상희 위원 100% 감면입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위에서 내려가는 경우에 더 못 내려가는 그 선을 1만 7000원, 1만 3000원으로 정한 겁니다.

○김상희 위원 현재 최저보험료를 내고 있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계속 적용됩니다, 그런 분들은.

○김상희 위원 그 사람들은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김상희 위원 그리고 지금 그……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위에 계신 분들이 내려갈 때……

○김상희 위원 위에 계신 분들이 내려갈 때 1만 7000원 이하로는 안 내려간다, 이런 겁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그렇게 정한 이유가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를 1만 7000원으로 정했는데 더 내시던 분들을 인하시켜 주는데 이것 이하로 인하시켜 주는 것은 너무 인하 폭이 크지 않느냐, 그런 고려에서 이렇게 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만 7000원 미만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아니면 내지 않는다 이런 겁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최저보험료 밑에 계시는 분들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김상희 위원 올라가지는 않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김상희 위원 다음에는 재산 부과와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재산 공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재산보험료를 축소하는 이 부분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단계에서 1200만 원, 3단계에서 5000만 원 공제안을 내놨습니다. 최종 단계 공제안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주거형 재산 보유자들은 여전히 재산보험료를 떠안게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선이 되지 않는 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결국은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에 얼마큼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가를 고려해 보면 재산 부분의 과세를 얼마큼 줄일 수 있는, 이것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최대 5000만 원이 되면 시가로는 1억 정도를……

○김상희 위원 보세요. 지금 현재 8000만 원짜리 아주 서민 아파트에 사는 노부부가 보험료를 9만 원 정도 냅니다. 그런데 정부안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6만 9000원,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5만 원, 3단계에서는 3만 원, 최종 단계에 가도 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저희가 그것을 완전히 다 없애지 못하는 것이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낮아도 총 외형에 대해서 100% 과세를 하는데 지역가입자는 총 외형에 대해서 비용을 다 공제를 하니까 소득 부분의 부과가 너무 적습니다.

○김상희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아주 서민층들의 부담은 좀 줄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들어간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그래서 같은 서민층들의 경우에는 비슷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역가입자가 또 너무 유리하게 되면 직장가입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형평에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균형을 맞추는 방안 중에 재산의 일정 부분을 남겨 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다음에 피부양자 소득 기준 2000만 원으로 지금 인하할 계획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김상희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2000만 원으로 인하하면 무임승차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피부양자 있다가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이분들도 생활인이니까 소득이 연금으로 2000만 원만, 예를 들어서 부과되는 대상으로 2000만 원인 경우에 그분들 생활하기 위해서 일정한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비용 공제가 없이 전체가 지금 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지역가입자로 사업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것들이 비용으로 공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제가 없는 네트로 2000만 원 부과를 받으셔야 되는 피부양자 탈락자 입장에서는 2000만 원이라는 그 기준도 굉장히 높은 잣대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건강보험기획단에서 많은, 일곱 가지 안을 1년 이상 논의를 했는데 그때도 대체적인 공감대가 소득 기준으로 갔을 때 한 2000만 원 미만까지 하기에는, 그분들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2000만 원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부분 기획단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개혁적인 성향이 계신 분들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대다수의 의견이 한 2000만 원 정도로 끊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저희가 따른 것입니다.

○김상희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김상희 위원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심의할 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법안소위 때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시면 또 저희들 논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나머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지만 그 부분은 따로 심의할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김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희 위원 장관님께 제가 확답 비슷한 것을 좀 듣고 싶은데요.

조류독감, 정말 이웃나라 일본도 확산이 너무 빨리 되어서 비상이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동물과 관련된 거고 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사람 독감, 지금 일본도 그것 때문에 비상이에요. 우리나라도 올 겨울에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거의 237%의 환자가 증가했고 그리고 재작년에 비해서는 292%나 증가했어요.

독감이 상당히 비상인데 이렇게 급증한 원인이 뭔지를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복지부는 원인 분석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 자료화면 좀 봐 주세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여 드리는 건데, 연령별 독감 의심환자 수를 보면, 지금 보면 날짜별로 되어 있어요. 맨 앞의 것은 11월 20~26일이고, 그다음 주고, 그다음, 이렇게 해서 쭉 날짜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연령이 빨간 막대로 표시한 건데 7~18세예요. 7~18세면 누구겠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예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김승희 위원 초중고지요.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자료 화면을 보면, 연령별로 예방접종을 받은 접종률 현황을 분석해 보면 지금 무료접종 대상인 1~5세는 접종률이 76.7%이고 65세 이상의 노인은 82%로 접종률이 이렇게 높아요. 나머지가 지금 접종률이 낮아요. 그러면 환자 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 나이 대의 예방접종 접종률이 이렇게 낮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집단생활 하기 때문에 빠르게 감염되고 또 감염되면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한테 퍼뜨리는 감염원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이 원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을 가지고…… 예산, 비용 이런 걸 따지는 면도 있지만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의원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니 '노약자나 아니면 임산부 또 더 위험군에 있는 그런 데 먼저 실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군에 있는 데는 이미 무료접종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발생률하고 접종률하고 검토를 해 보면 이렇게 확연하게 뭐가 문제라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비용, 우리 의원실에서 추산했어요. 했는데, 지금 이게 감염률이 30%로 됐을 경우에 독감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27조 6000억에 이른다 이렇게 연구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지금 초·중·고등학생들한테 무료접종을 했을 때의 비용은 그것보다 훨씬 적어요. 666억 정도인데, 단계적으로라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옛날하고 달라요, 조류독감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도대체 백서네이션(vaccination)을 해도, 백신을 맞은 사람도 지금 독감에 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변이종이 빠르게 바뀌고 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인체 감염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잖아요.

이것 도대체 보건당국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무료접종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확신을 주세요. 지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할 건지.

이건 제가 토론회 하면서 복지부 국장인지 과장인지, 복지부도 참가시켰어요. 그랬는데 너무나 상투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건강이 생명이에요, 건강이 생명. 건강 잃으면 뭘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장관님이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독감이 급격히 유행한 게 예년에 비해서 독감인플루엔자의 유행이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2월 달이 피크였는데 일찍 시작하면서, 학교가 방학하기 전에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하면서 학생들 사이에 퍼지면서 이렇게 높아졌는데요.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18세는 지금 사실은 고위험군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상태인데, 먼저 접종 고위험군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고요.

잘 아시다시피 예산 확보 또 비용 대비 효과 이런 것을 분석해야 되는데, 저희도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승희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합니다.

○김승희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반영하실 거지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이것은 저희도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승희 위원 교육부는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의 예를 제가 한번 다 뒤졌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생후 6개월 이상, 민간보험

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보험에서 커버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정부가 지원을 해 줘요.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캐나다도 그렇고요, 폴란드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이렇게 정부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독감이란 게 지금 굉장히 독해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독감 예방백신을 안 맞아서, 이게 정말 사망률도 굉장히 높아요. 올해 저희가 질병관리본부한테 받은 거로는 직접적으로 독감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망한 사망자가 237명인가 그렇게 되고, 그것 말고 기저질환이 있는 상황에서 독감 걸려 갖고 병원에 내원하고 입원한 환자들이 사망한 경우가 2000명이 넘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장관님, 이거에 대한 무료접종 확실히 의식을 가지고 하세요. 예산 확보라면 국회에서…… 나중에 걸렸을 때의 사망률이라든지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이 예방접종이 비용 대비 효과로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것을 검토하시고 그 결론을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다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560억에서 한 66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선 교육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진행……

○김승희 위원 교육부는 간절히 원한다니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러면 더……

○김승희 위원 자꾸 협의한다 협의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복지부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게 차이가 누구 돈으로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교육부의 교부금으로 하느냐 국고로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위원장 양승조 김승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김상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아까 차관님께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잘못하신 것 같아서…… 이게 지금 국민들께서도 보고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저보험료가 1만 712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 이하를 내고 있는 국민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도 다 경감을 받는다, 안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김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진행될 때는 경감이 되지만 3단계가 다 끝나 가지고 3단계로 정착이 될 때, 개편안이 완료되면 그때는 최저보험료 1만 7000원을 다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맞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께서 그렇게 잘못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러니까 1·2단계 할 때는 저희가 감면조치를 다 합니다.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1·2단계는 감면조치 하지만 3단계에 가면 다 1만 7000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3590원 내는 사람이 개편안이 끝날 때는 1만 7000원을 다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자그마치 몇 배로 올라가는 겁니까? 다섯 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래서 저희는 3단계 이후의 조치까지……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왜 차관님께서 이 부분의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모르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개편안이 3단계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3단계 이후에 그 감면을 계속 할지의 여부는……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3단계 다 끝난 이후를, 3단계 끝나면 1만 7000원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3000원 정도를 내시는 분들도 이게 어려워 가지고 장기적으로 체납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갑자기 다섯 배가 오르는데 이거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여쭤 본 겁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러니까 3단계 이후에, 3단계를 3년 해 보고……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은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답변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시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3단계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3단계 이후에 그런 감면 제도를 계속 갈지 여부는 그때 판단을 해서……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개편안 자체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완료되면 최저보험료 1만 7000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김상희 위원 그거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문제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단계 1만 7000원이어서, 지금 3590원 내는 정말 어려운 우리 서민층의 국민들이 갑자기 1만 7000원으로 오르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심의할 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그것은 법안소위 때 논의를……

○김상희 위원 이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해서 수정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했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인순 위원 장관님,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지금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서 정부가 정부안을 마련해서 2월 달에 입법예고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남인순 위원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남인순 위원 그러면 그 입법예고된 안은 국회로 언제 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원래 국회 발의는 5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빨리 이걸 진행을 하자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런 과정 거쳐서는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입법발의한 안을 먼저 위원님이 원하시면 논의 때……

○남인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쨌든 정부가 입법예고하면 다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의 거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거치면 5월 달 돼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남인순 위원 5월 달 돼야 된다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래서 그건 너무 늦기 때문에,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빨리 이것을 결정하는 것을 당론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법안 심사할 때 정부안을 가지고 같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러면 2월 달에 정부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한 것 갖고 하는 게 아니라 2월 달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법안에 대해서 정부가 의견을 내서 논의하시겠다 이런 뜻인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그러니까 결국 심의할 때 그렇게 수정한 대안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인순 위원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에서 2월 입법예고해서 이후에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변동될 사안이 있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그렇게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남인순 위원 아까 그렇게 보고를 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말씀드렸고요.

현재 어쨌든 정부 개편안의 기본 방향이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이라고 주장은 하고 계시지만 그날 공청회에서도 그렇고 위원들이 보기에도 이것이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체계다라고 딱 보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물론 이건 법안소위에서 더 논의를 할 부분이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3단계 개편 방안이 마무리되는 앞으로 9년 후, 9년 후지요. 9년 후라고 하는 기간은 너무 멀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미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 3단계 개편안으로는 사실 그 사이에 계속 혼란만 더 부추길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청회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줄인다고 한다면, 지금 장관님은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그 9년이라는 것을…… 사실은 저희가 1단계 하고 2단계 하면 그다음에 6년 경과한 다음에는 3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3단계 들어가니까 9년이라고 보시기보다는 사실은 6년이 지나면 저희가 원래 목표했던 파이널 단계로 가는 거고요.

○남인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료되어지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건 그때 가서 또 다른 개편이 필요하다 이러면 또 바뀌겠지만 3단계로 들어가면 저희가 계획했던 안으로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아까 지적해 주신 최저보험료 같은 것, 이런 것을 어떻게 감액해 줄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소소한 것은 필요하겠지만……

○남인순 위원 저는 최저보험료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부가 설계한 대로 감액을 하다가 점차

점차 해서 3단계에 가서, 그러면 앞으로 6년 후 내지는 7년 후 그때 1만 7120원이 적용되는 것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경감은 9년까지 계속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9년까지 되고, 그 이후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 이후입니다.

○남인순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개편안이 완료되어진 시점까지 얘기해서 9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길다라고 하는 의견, 3단계라고 하는 걸 좀 더 줄여야 되지 않느냐, 실제로 어떤 체감을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그것 하나 얘기해 주시고요. 그걸 좀 더 압축적으로 줄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그날 공청회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평가소득을 폐지하기로 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여전히 사실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 보험료, 사실은 여기에 재산에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실제적으로 소득 중심으로 가려면 이게 제일 관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도 지금 보면 결국은 3단계까지 가서도 점차적으로 고가 차에 대해서만 부과하겠다,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3단계 지나서도 고가 차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4000만 원 이상 고가 차는 그렇습니다.

○남인순 위원 예, 남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OECD 회원국 중에서 어쨌든 자동차에다 보험료를 매기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1단계를 3년으로 잡은 이유가 2년 시행해서 그걸 평가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3년 차에 보완을 하고 2단계로 넘어가겠다라는 생각을 한 건데요. 저는 1단계는 3년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2단계와 3단계에 대해서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 재산 문제…… 자동차 문제도 지금, 자동차는 다 전면 폐지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자동차 문제도 소위에서 논의하실 때 그 논의 결정에 저희가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고 지역가입자의 소득이라는 것은 실제 수입의 한 10%뿐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 또 지역가입자도 무슨 부동산업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요식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전부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을 전부 폐지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고, 점점 재산에 대한 평가 비중은 낮춰 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양승조 남인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소하 위원 장관님, 각종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인권은 제대로 보호되어야 되고, 또 복지 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이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윤소하 위원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업무가 과중하다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윤소하 위원 신분보장, 차별금지, 안전조치 등 실효성 있는 지원 규정을 마련해서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그래야 국민들의 복지체감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사회복지현장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신체적·정신적·언어적·성적 폭력의 위험에 상당히 많이 노출돼 있지요. 그것도 잘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윤소하 위원 그런데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나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등이 폭행 등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사회복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절실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폭력 방지 매뉴얼 같은 걸 작성해 보급하는 조치가 신속히 이

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건 적극 동의합니다.

○윤소하 위원 그리고 폭력상담센터를 설치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상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현장을 가 보면 그렇습니다.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이건 감정노동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피로도가 누적된 경우에는 치유를 지원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치유를 지원하는 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이 부분도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치유를 할 기관이 당연히 필요한데, 이런 분야는 지금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유지원센터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윤소하 위원 결국은 수고롭고, 어떻게 보면 존귀한 노동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행복해야, 그리고 안전해야 복지서비스 대상자들도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윤소하 위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재정중립 원칙이 깨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정부가 제시한 방안에 의하면 1단계에서만 9089억 원의 적자, 3단계에서는 2조 3108억, 이렇게 지금 추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계된 이유가 뭐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확대해 나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과다하게 증가하는 분들을 좀, 우선 지역가입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과다하게 부과되는 것을 단계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윤소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전에 토론회에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제안한 개편안대로 하면요,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봤어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러면 대략 9조 원 정도의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고액의 금융자산·부동산을 소유한 고소득자의 반발을 우려해 가지고 지금 광범위한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정부가 본 위원을 비롯한 야당에서 내놓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하고 다르게 정부 자체 안을 내놓으면서 재정적자를 유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대책이 없어요.

장관님, 현재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건강보험에 정부 지원 12월로 종료됐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건 다시 논의를 해서……

○윤소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종료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겠어요? 적자가 불가피하고 그 부담은 보험료 인상으로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건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조기 대선이 예정되어 있어요. 아예 정부의 재정지원을 일몰제가 아니라 항구제로 하자, 그것은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까지 이루어지도록 하자, 이것은 보건복지부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같이 결의를 좀 해 냅시다, 결의를.

그리고 제가 아까 대학병원과 관련한 소관 부처 이관, 이런 관련 법안도 이런 타이밍에 같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정부에서 건보료 재정지원하는 것은 올해 만료되는데 일단 그것은 당연히 연장이 되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윤소하 위원 당연히 연장됩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연장을 하도록 해야지요.

○윤소하 위원 항구적으로 합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건 법안 심사 논의하실 때 논의가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윤소하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보건복지부가 기본적으로 건보체계 개편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득 중심으로 방향은 잡았잖아요. 그런데 3-3-3 전법만 고집하지 마시고, 국민들은요 지금 곧바로 3단계가 다 된 줄 알아요. 그리고 내용도 아직 엉망이에요. 우리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같이 심도 있게 하고요.

우리 보건복지부가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정

책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자, 상호 협력해서 같이 하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위원장 양승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3차 질의 마지막 질의하실 분,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위원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소득 중심 개편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료와 재산 보험료를 여전히 건강보험료 부과 지표로 삼는 것에 대해 개편 방안과 정면 배치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에는 필수 소비재에 가깝다는 측면에서 시대적인 여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많이 있고요.

이번 개편안의 특이사항 중 하나는 3단계 이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총 9년의 실행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실행 방안에 대해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고통보다는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지나치게 고려한 대책이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2년간 건강보험료 개편 논의가 중단되었던 것은 정치적 부담에 따른 결과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 황교안 총리대행 체제에서 민감한 정치 현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장관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정부 임기 말기에 발표되고 장기간의 실행 기간은 차기 정부와 차차기 정부에까지 이르고 있어서 실현 가능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 정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느라고 시간도 많이 걸렸고 저희가 어쩌다 보니까 이런 시기에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저희가 처음부터 원래 목표했던 3단계로 직접 갈 수 없는 이런 사정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역가입자, 어려운 분들은 1단계만으로도 한 583만 분이 보험료가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3단계 가면 한 606만 명 정도가 감소를 하는데, 1단계에서 저희가 아주 많은 부분의 보험료를 낮췄거든요. 그런데 3단계까지 한꺼번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 정부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1년 전에 했더라도 저희 안은 아마 같은 안을 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도자 위원 지금 발표에 따르면, 다음 정부뿐만 아니라 차차기 정부까지 가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5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가입자 수는 직장가입자 수와 지역가입자 포함해서 30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 건수가 6700만 건이 넘어서 가입자 한 명당 2건 이상은 민원을 제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이후에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민원접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답변은 마지막에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송파 세 모녀의 아픔뿐만 아니라 17년간 떨어져 지내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아버지 때문에 급여통장이 압류되어서 정규직 합격이 취소된 청년의 사연은 우리를 너무너무도 가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은 국민의 민원 본질을 파악하고 해소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아울러 청년의 슬픔에 공감하고 저소득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개선안인가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이후에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민원접수가—방금 제가 말씀드렸지요—줄어들 것인지, 장관님께서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지금 기대하기로는, 그때 민원 중에 많은 것이 그동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너무 복잡해 가지고 이런 것에 따른 민원도 굉장히 많았고, 본인의 보험료가 올라갔을 때도 민원이 많았는데, 이번에 저희가 평가소득제를 폐지하고 지역가입자분들 또 어려운 분들의 보험료가 많이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옮겨가면서 그동안에 보험료가 확 올라갔던 부분 이런 게 없어지면서 저희는 민원은 아주 많은 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17년 헤어졌던……

○최도자 위원 송파 세 모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 문제는 저희가 08년도에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을 하면서 소득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부모의 보험료 연대납부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08년도 이전에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안 되면서 발생한 문제라서 저희는 이것을 관련 법령을 고쳐서 소급 적용을 하도록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최도자 위원 소급 적용을 해서 개정을 하고 나면 이렇게 아픔이 있는 송파 세 모녀의 구출 방법을 장관님께서 모색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송파 세 모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시뮬레이션 한 것을 보면 그전에 5만 원 내던 게 지금은 1만 3000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저희 개편안에 의하면.

○최도자 위원 부모 때문에 이런 피해를 받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체납 청년, 미성년자 그 문제는 저희가 법을 개정해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최도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승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장관님께 간단히 몇 가지만 요청드릴게요.

맞춤형 보육평가는 지금 하고 있나요, 하셨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지금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평가보고서가 나오시면 저와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고말씀을 주시고요.

인구아동정책관님이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16년이지요, 출산율과 출산아 수 예측 자체가 엄청 차이 나게 틀렸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원인이 뭔지 그것도 한번 분석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형표 이사장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여러 분들하고 상의해서 정확하게 상임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 중의 현안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야말로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소위에서 2월 달에 집중적으로 심의하고 월과 일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아주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를 매듭짓자 그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위원장 양승조 그렇게 보고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위원장님!

○위원장 양승조 예, 차관님.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아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할 때 제가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위해서 좀 정정을 할 사항이 있어서요.

○위원장 양승조 그러시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보험료가 올라가시는 분들이 최저보험료 1만 3000원, 1만 7000원 되는데 1단계와 2단계 할 때 올라가시는 분들에 대한 100% 감면제도를 운용을 합니다. 그런데 3단계의 경우에는 그 감면율을 50%로 줄여서 일부 3500원의 경우에는 한 7000원 정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도 3500원 내시는 분들, 최저보험료 내시는 분들은 대부분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 감면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다 혜택을 받게 되실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다만 한 7000~8000원 내시는 분들이 올라갈 가능성은, 3단계에서는 올라가는 증가분의 50%만 경감된다는 점을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경감제도를 어떻게 운용할지, 어떤 율로 운용할지 그런 것들은 다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김상희 위원님 되셨지요?

○김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최도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양승조 최도자 위원님.

○최도자 위원 점심 때 장관님과 차관님께 제가 간단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일 전에 보육진흥원에서 원장님과 담당 직원이 오셨습니다. 장관님과 차관님, 실무진에서 염려 끝에 어린이집 서류 줄이는 것에 대한 TF팀을 구성을 해서 복지부에서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줘서 거기에 따른 성과를 보고차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감 때 지적한 것을 명심하시고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그것을 보니 서류가 127개예요. 어린이집이 사무원 한 명도 없는데 127개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줄이겠다고 해도 80~90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30개 안으로 줄이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전산화를 해라, 앱 개발을 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CCTV 보면 6개 조항이 있습니다. 6개의 서류를 철해 놔야 돼요. 그러면 그 앱 개발을 하면 어때요? 하나가 되잖아요. 보편적으로 10개씩 5, 6, 7개씩 묶여 있습니다, 영역별로. 그러면 영역별로 나누면 이 서류는 30개 이내로 떨어진다……

예산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차관님과 장관님께서 '5억이나 10억 정도 안 들까요?' 하셨는데, 이것은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어린이집의 서류를 줄이고 아이들을 잘 보고 잘 키워 주고 잘 가르쳐 주는데 반대를 할 국회의원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앱을 개발해 가지고 그 방법으로 해서 전산화를 대폭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우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승조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제 기억으로 저희가 그동안 사실 128개 항목을 한 팔십 몇 개로 줄이고 또 전산화 작업도 한 11개 정도를 한 것으로, 그래서 줄이느라고 많이 노력은 했는데 말씀을 들어 보면 아직도 미비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추가로 더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 비용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 시행할 것 먼저 시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승조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김상희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맞춤형 보육 관련해서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행된 지가 꽤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떤지, 이 진행과 관련해서 현황 파악하고 평가하는 것을 복지부에서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김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행한 지가 몇 개월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평가 결과하고 현황, 지금 하고 있는 것의 진행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대체토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 기관들은 각별히 유념하시고 향후 업무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정춘숙 위원님, 강석진 위원, 김명연 위원, 김순례 위원, 성일종 위원, 천정배 위원, 박인숙 위원, 윤종필 위원, 권미혁 위원, 송석준 위원, 남인순 위원, 김승희 위원, 김상희 위원, 김상훈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을 작성하여 2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출석 위원(21인)

강석진	권미혁	기동민	김광수
김명연	김상훈	김상희	김순례
김승희	남인순	박인숙	성일종
송석준	양승조	오제세	윤소하
윤종필	인재근	정춘숙	천정배
최도자			

○청가 위원(1인)

전혜숙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채이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전문위원	홍형선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차관	방문규
기획조정실장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김강립
사회복지정책실장	김원득
대변인	이기일
감사관	김혜진
정책기획관	류근혁
국제협력관	박영식
비상안전기획관	최태붕
보건의료정책관	강도태
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한의약정책관	이형훈
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건강정책국장	김현준
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복지정책관	배병준
복지행정지원관	최성락
사회서비스정책관	윤현덕
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보육정책관	고득영
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강완구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정기석
국립보건연구원장	박도준
긴급상황센터장	정은경
감염병관리센터장	곽숙영
질병예방센터장	고운영
감염병센터장	성원근
면역병리센터장	지영미
생명의과학센터장	허영주
유전체센터장	한복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이사	전종갑

【보고사항】

○의안 회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 1. 20. 정부 제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2017. 1. 20. 제윤경·박정·박홍근·안규백·민병두·황주홍·김정우·박찬대·박재호·박영선·윤관석·소병훈·윤종오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23일 회부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17. 1. 23. 김명연·신보라·김성원·이양수·홍철호·박덕흠·박완수·김기선·정갑윤·김정재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17. 1. 23. 박주민·김영호·박남춘·김정우·신창현·정성호·민병두·황희·안규백·전해철·윤관석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7. 1. 23. 인재근·소병훈·권미혁·김영진·김상희·유은혜·기동민·우원식·문미옥·이인영·남인순·강창일·설훈 의원 발의)

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7. 1. 23. 인재근·소병훈·권미혁·박남춘·전혜숙·김영진·김상희·유은혜·기동민·오영훈·우원식·윤관석·문미옥·이인영·설훈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7. 1. 23. 인재근·소병훈·권미혁·박남춘·전혜숙·김영진·김상희·유은혜·기동민·오영훈·우원식·윤관석·문미옥·이인영·남인순·강창일·설훈 의원 발의)

이상 5건 1월 24일 회부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17. 1. 24. 송석준·이현재·황주홍·소병훈·엄용수·송희경·이은권·배덕광·최교일·추경호·박명재·金成泰·민경욱 의원 발의)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7. 1. 24. 양승조·김정우·윤소하·전혜숙·김상희·김영진·설훈·강훈식·이찬열·이개호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2017. 1. 24. 김해영·박광온·윤호중·박재호·박용진·권칠승·신경민·최인호·백혜련·전재수·이찬열 의원 발의)

이상 3건 1월 25일 회부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7. 1. 25. 양승조·윤소하·안규백·조정식·전혜숙·박주민·김정우·박남춘·김부겸·김병욱·김경협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7. 1. 25. 양승조·윤소하·안규백·조정식·전혜숙·박주민·김정우·박남춘·김부겸·김경협·김병욱 의원 발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7. 1. 25. 김철민·소병훈·강창일·박남춘·김정우·김종민·이학영·김영춘·박주민·임종성·박재호·김상희 의원 발의)

이상 3건 1월 26일 회부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7. 1. 26. 양승조·전혜숙·박주민·김정우·박남춘·김부겸·김경협·이찬열·임종성·강훈식·김병욱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7. 1. 26. 양승조·윤소하·전혜숙·김정우·박남춘·김부겸·김경협·임동성·이찬열·강훈식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7. 1. 26. 양승조·윤소하·안규백·조정식·전혜숙·박주민·김정우·박남춘·김부겸·임종성·남인순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2017. 1. 26. 권미혁·인재근·노웅래·박찬대·신창현·안규백·박정·김성수·박선숙·윤후덕·유은혜·김한정·김영춘·조정식·홍영표·최운열·제윤경·최인호·이용득·김영주·유동수·김상희·남인순·문미옥·박주민·송기헌·이철희·김철민·정재호·강훈식·이원욱·백혜련·박재호·김현권·김영호·위성곤·조승래·김현미 의원 발의)

이상 4건 1월 31일 회부됨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7. 1. 31. 양승조·윤소하·안규백·조정식·전혜숙·김정우·박남춘·김부겸·김경협·임종성 의원 발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7. 1. 31. 양승조·윤소하·안규백·조정식·전혜숙·박주민·김정우·박남춘·김부겸·김경협·김병욱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7. 1. 31. 박인숙·황주홍·여상규·서영교·장제원·강길부·윤종필·유승민·이명수·김성원·노웅래 의원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7. 1. 31. 양승조·권미혁·김정우·김상희·윤소하·김종민·최인호·전혜숙·김해영·김부겸 의원 발의)

청년기본소득법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2017. 1. 31. 김부겸·추혜선·김종민·민병두·소병훈·윤후덕·서영교·박정·황주홍·김경진·박재호·윤관석·임종성·유은혜·박영선·김해영·김병욱·양승조·권칠승·이철희·전재수 의원 발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2017. 1. 31. 조배숙·김관영·김삼화·김종회·김중로·오세정·이동섭·장병완·장정숙·최도자·황주홍 의원 발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7. 1. 31. 박정·윤후덕·어기구·안규백·

이찬열·박찬대·박광온·이개호·정인화·도종환·신경민·심재권 의원 발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7. 1. 31. 남인순·장정숙·유은혜·정성호·윤관석·이재정·인재근·김삼화·강창일·윤소하·이학영·박남춘 의원 발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7. 1. 31. 남인순·강창일·김삼화·김종훈·박남춘·박정·박주민·유은혜·윤소하·이재정·이학영·장정숙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7. 1. 31. 박정·이찬열·노웅래·윤후덕·박광온·김병관·이개호·정인화·도종환·신경민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7. 1. 31. 남인순·장정숙·임종성·유은혜·정성호·윤관석·이재정·인재근·김삼화·강창일·이학영·윤소하·박남춘 의원 발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7. 1. 31. 남인순·장정숙·김종훈·유은혜·이재정·김삼화·강창일·윤소하·박주민·이학영·박남춘·박정 의원 발의)

이상 12건 2월 1일 회부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

(2017. 2. 1. 송기석·정인화·이동섭·김관영·박주선·유성엽·장병완·윤영일·김경진·최경환(국)·이용주·이종배·신용현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2017. 2. 1. 김기선·이현재·김진태·김종석·송희경·함진규·심재철·한선교·김명연·조원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일 회부됨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7. 2. 2. 강창일·정재호·이종걸·박남춘·소병훈·윤관석·김철민·인재근·박정·최도자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7. 2. 2. 최도자·황주홍·김종대·전혜숙·권석창·서영교·신용현·김정우·신경민·박주현·이용주·김삼화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17. 2. 2. 이학영·박찬대·황희·박남춘·전해철·최인호·김영주·남인순·정인화·윤영일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7. 2. 2. 함진규·이헌승·박덕흠·이우현·성일종·강석진·김승희·최연혜·김종석·이명수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3일 회부됨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7. 2. 3. 김철민·이개호·소병훈·임종성·박남춘·강창일·송기헌·박정·황희·김경협 의원 발의)

2월 6일 회부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7. 2. 6. 민경욱·홍문종·이종배·김도읍·성일종·김현아·김정재·이은권·정갑윤·문진국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7. 2. 6. 정춘숙·신동근·김종민·기동민·박남춘·권미혁·박정·양승조·김상희·이해찬·박광온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7. 2. 6. 김승희·권미혁·김규환·신보라·강효상·성일종·최연혜·송석준·함진규·유기준·조경태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7일 회부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7. 2. 7. 민경욱·김현아·김정재·金成泰·이은권·송석준·송희경·엄용수·이양수·문진국 의원 발의)

2월 8일 회부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7. 2. 8. 위성곤·이원욱·이개호·김현권·김철민·윤영일·윤후덕·진선미·김한정·이용득 의원 발의)

2월 9일 회부됨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7. 2. 9. 민경욱·문진국·김정재·金成泰·이은권·송석준·송희경·엄용수·이양수·정갑윤 의원 발의)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7. 2. 9. 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박인숙·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0일 회부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7. 2. 9. 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박인숙·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

2월 11일 회부됨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17. 2. 10. 김영진·강훈식·권미혁·기동민·백혜련·소병훈·윤관석·이원욱·인재근·최명길·황희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7. 2. 10. 김승희·김상훈·윤상직·한선교·윤종필·김순례·임이자·성일종·김광림·최연혜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7. 2. 10. 박인숙·한선교·유승민·유동수·장제원·김성원·조훈현·김학용·김석기·이진복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7. 2. 10. 김승희·김상훈·김순례·윤종필·임이자·성일종·유민봉·윤상직·엄용수·정갑윤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13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 1. 19. 정부 제출)

1월 2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2017. 2. 2. 정태옥·김도읍·이현재·유기준·지상욱·이명수·박덕흠·경대수·박명재·조원진 의원 발의)

2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17. 2. 6. 민홍철·강훈식·이원욱·이우현·양승조·정동영·박덕흠·조정식·박찬우·김태흠 의원 발의

2월 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17. 2. 7. 전해철·홍익표·황희·박정·소병훈·박찬대·오제세·윤관석·박홍근·민홍철·정성호·김정우 의원 발의)

2월 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